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책임자 : 이 연 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발 간 사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복지는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부터 시작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비로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이어져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전반적인 실태 조사도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제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근거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중증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본 연구원은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욕구를 반영한 제주형 지원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 경제생활, 건강 및 의료실태, 안전실태, 일상생활/여가·문화생활/교육실태, 복지욕구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원으로 협조해 주신 장애인 관련 단체와 관련 기관 담당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문에 응해주신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관련 자료수집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관련 단체장님, 시설 기관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 지난 7개월 동안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연구를 수행한 이연화 박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귀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외부 평가위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 8.

현 혜 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주지역 등록장애인 및 여성 중증장애인(1,2급) 비율이 전국보다 높음(보건복지부, 2014).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조례」에 근거해 4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제주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2012)에서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루어짐. 그러나 임신과 출산 경험에 국한되어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음
- 2013년 '제주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여성 중증장애인의 유형별 실태조사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실임(제주의 소리, 2015.01.03)
-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여성 중증장애인의 전반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성별분리 통계도 최근에 와서야 부록에 제시되고 있는 실정임(최은희, 2014: 11)
-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장애인 1급, 2급, 중복3급 여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경제생활, 건강 및 의료, 안전, 일상생활, 여가·문화·교육실태, 복지욕구 등을 조사하여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토대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주형 여성 중증장애인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고, 이를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여성장애인 관련 통계, 법령 및 조례, 정책 현황 파악
 -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현황 및 정책, 제도 분석
 - 기존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관련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문문항 개발
 -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 여성 중증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제주형 정책제언 제시

3. 연구방법

- 주요 연구방법으로 여성장애인 관련 선행 연구 및 정책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여성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문헌연구

- 통계, 관계법령, 타 지자체 사례 등 문헌 연구
- 중앙, 국외, 제주 관련 정책 및 관련 서비스 현황 분석

나. 전문가 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관련 부서 의견수렴
 - 내용: 연구범위 및 설문지(안) 검토
 - 일사: 2015. 6.4(1차), 6.5(2차), 6.10(3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지(안) 의견 수렴

- 내용: 연구방향,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 자문
- 일시: 자문회의 (2015. 3.19 & 6.3)(2회), 설문지(안) 의견수렴(2015. 6.4~6.11)

다. 설문조사

- 조사대상: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중증장애인이며, 조사대상자 수는 300명임
- 조사 방법 : 장애유형을 고려한 할당 및 유의표집 후 면대면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6.18 ~ 7.14

라. 정책토론회

-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 학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여성장애인 당사자 및 도민 일반 등의 의견수렴. 조사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함
- 내용: 주요 연구결과 설명 및 정책 의견 수렴
- 일시: 2015. 8.11(화)

4. 연구절차

- 연구의 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연구절차 >

1단계	▷ 연구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 연구 착수 보고
	▷ 자문회의 (1차)		▷ 선행연구 검토 ▷ 중앙, 국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중증장애인 관련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 수집 검토
			▷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연구방법 점검
2단계	▷ 자문회의 (2차)	⇨	▷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논의
	▷ 설문지(안) 의견 수렴		▷ 담당부서 의견수렴(2015. 6.7~6.11) ▷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수렴(2015. 6.7~6.11)
3단계	▷ 실태조사 (설문 조사)	⇨	▷ 「제주지역 여성중증 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실시」 (2015. 6.18~7.14)
4단계	▷ 정책토론회	⇨	▷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 정책적 제언 마련		▷ 의견수렴 반영한 정책제언

제2장 여성 중증장애인 선행연구

1. 여성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됨
- 반면, 김성미(2007)는 여성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을 강조하면서 여성 장애인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심리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여성 장애인이란 개인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함
-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2015년 5월 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 의해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될 수 있음
 - 신체적 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 등 신체외부장애와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신체내부장애로 나뉨
 -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나뉨
 - 현행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외부장애, 신체내부장애, 정신적 장애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15개 유형으로 나뉘어짐

2.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

- 연구 주제별로 성/폭력/차별, 경제활동, 결혼/보육/양육, 안전, 여가와 문화생활 등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성/폭력/차별 분야

- 주경미 외(2013)의 『부산지역 여성장애인 폭력의 장애유형별 지원방안 연구』가 있으며, 김성희(2008)의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연구는 왜 여성장애인들이 가정폭력의 주 피해대상인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

□ 경제활동 분야

- 김세연 외(2012)의 “여성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 유지를 위한 연구”와 한애경 외(2014)의 “1년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 장애인의 근로참여 경험 연구”, 김승완 외(2015)의 “여성 장애인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연구”, 이민정 외(2013)의 “여성 장애인취업과 관련해 노동공급자 측면의 취업욕구와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가 있음

- 여성장애인의 취업경험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성차별로 인한 여성의 저임금 구조,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인적자본의 취약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혼/보육/양육 분야

- 전민경 외(2014)는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실태를 분석했으며 박주희 외(2012)도 광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은 임신·출산·양육 관련 비용부담과 관련 정보의 부재, 병원까지의 이동 및 시설이용의 어려움, 출산 후 건강악화를 연구했음

□ 안전 분야

- 최은희(2014)는 「충청남도 장애여성 생활 및 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 범죄로 부터의 안전, 지역사회 내 안전으로 나누어 여성장애인의 안전위협요인을 분석했으며, 장미혜·윤덕경·이인선(2013)은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V): 여아 및 여성안전관련 정책점검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안전의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안전에 대한 성별인식과 여성과 아동의 안전실태와 정책대응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안전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여가·문화 분야

- 김정득 외(2013)는 여성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은 주로 TV시청이며, 건강문제 및 경제적 부담으로 여가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권재숙·김성진(2012)은 “여성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여성 중증장애인의 개념과 관련 연구

○ 여성 중증장애인의 개념

- 여성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중중이며, 장애등급이 1급, 2급, 중복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음

○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연구

-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중증장애인의 시간제일자리 실태(김승완 외, 2015)와 취업실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9), 사회관계망실태(이정희, 2006), 질적연구를 통한 여성중증장애인의 자녀양육경험(최길선, 2012), 사회통합경험(황보옥·박영준, 2011) 등 부분적인 연구만 있을 뿐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는 상태임

제3장 국내·외 여성장애인 정책동향

1. 국내·외 여성장애인 관련법 및 지원정책

가. 국내 관련 법 및 관련 정책

1) 여성장애인 관련법

-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명시된 장애인 관련 법은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임

- 「장애인인권헌장」 제11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더 중시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는 것을 금하고, 여성장애인 근로자 차별 금지를, 제34조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식개선과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여성장애인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및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

○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을 담당부처와 사업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담당부처	사업명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가사도우미 사업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교육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욕구 및 장애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출산비용지원 사업	○출산시 산모 1인당 1백만원 지원
여성가족부	어울림센터 운영	○맞춤형 상담을 통한 고충해결 ○역량강화교육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특화교육 지원	○이미지 편집교육, 텔레마케터 양성교육, 바리스타 양성과정 등 지원
	역량강화사업	○여성장애인을 위한 경제·사회·문화 역량강화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장애인상담소, 장애인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통합 장애인보호시설 설치운영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및 우선채용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활동지원	○여성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법무부	성폭력피해인 지원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출처: 「2013 장애인백서」 (2013:515)

나. 국외 관련 정책

1) 호주

- 호주의 장애인관련법은 1963년 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주거법」을 기점으로 1970년에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아동법」 제정, 1974년 직업훈련, 치료 및 재활센터에 보조금을 증대·확대하는 「장애인법」 제정, 1978년 「장애아동수당제도」와 1986년 장애인 분리수용보다는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서비스법」을 제정함(한국정책기획평가원, 2008)
-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 고용지원, 사회서비스 임

2) 스웨덴

- 스웨덴의 장애인정책은 평등주의 사회의 원칙에 근거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조건의 차이를 줄이는데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정책의 방향제시와 장애인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및 고용서비스와 같은 특정영역에 대해 정책의 발전과 실행을 담당함
- 지방의회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우선 책임을 지며,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독립과 생활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지적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제공, 주택개조보조금, 특별운송수단서비스, 차량을 지원함
- 주요 장애인정책은 소득보장, 장애인고용서비스,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서비스 임

3) 독일

- 독일의 장애인관련 법은 1919년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명령」과 1920년 「중증상해자고용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함. 1923년 20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한 2%의 고용할당을 의무화한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1969년 장애인을 위한 노동촉진 및 직업촉진의 조치가 반영된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됨

- 1980년대 장애인의 재활촉진을 위한 「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한 행동강령」이 제시 되었으며 2001년 20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한 최소 5%의 일자리를 중증장애인에게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평등법」을 통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함
- 독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크게 의료재활, 근로에 참여, 사회생활지원서비스 임

2.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및 지원정책

가.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200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20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20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20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2015)와 중증장애인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09),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촉진조례」(2012),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2014)등 이 있음

나. 여성 중증장애인 현황 및 지원정책

-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수는 3,388명이며 이중 1급은 1,534명, 2급은 1,854명 임(보건복지부, 2014)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지원정책은 크게 연금·수당·교통비지원, 의료지원, 출산양육교육비지원, 방문서비스, 주택개조, 고용장려금지원(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내부자료)과 제주특별자치도 시책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 복지과 내부자료)

제4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

-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 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중증장애인
-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자는 조사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등록장애인 명부를 표본추출틀로 설정하였지만,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2011.9.30)에 의해 등록장애인 명부를 확보하지 못함
 - 그 결과, 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에 등록된 여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급, 2급, 중복 3급을 포함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300명을 할당 및 유의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함

나. 표본설계

- 표집방법은 15개의 장애유형을 8개의 장애유형으로 재분류해 할당 및 유의표집을 이용하였음
 - 할당을 고려한 유의표집을 통한 최종 조사표본은 다음과 같음

〈조사표본〉

(단위:명)

번호	유형별	총계	등급별 표본할당		
		계	1급	2급	중복3급
	총계	300	146	115	39
1	지체	78	41	27	10
2	뇌병변	39	23	12	4
3	시각	38	30	4	4
4	청각·언어	34	16	13	5

번호	유형별	총계	등급별 표본할당		
		계	1급	2급	중복3급
	총계	300	146	115	39
5	지적	84	27	44	13
6	자폐	4	3	1	0
7	정신	13	5	5	3
8	내부기관장애	10	1	9	0

다. 조사방법

- 조사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여성중증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조사대상자를 발굴하였고, 1:1 면접조사를 위해 관련 단체 담당자, 기관 담당자, 활동보조인 등이 조사원이 되어 함께 직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라. 조사내용

-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일반사항	지역, 연령, 응답자유형, 거주지,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원인, 최종학교 종류, 학력, 혼인유형, 수급여부
경제생활	경제활동실태(취업여부, 취업특성, 미취업 사유 등)
	경제상태(월평균 소득, 위평균 가구소득)
	취업현황(일하면서 어려운 점)
	미취업현황(이유, 취업희망여부, 미취업 이유)
	직업훈련 의향 및 필요 욕구
	제주지역 여성중증 장애인을 위한 경제참여 지원정책
가족생활	가족구성원 현황(등록된 장애인 가족)
	미혼이유 및 결혼의향
	임신출산경험(임신출산경험, 어려움, 산후조리 경험, 만족도, 임신출산의향)
	임신출산을 위한 필요정책
	양육(자녀수, 다른 사람의 도움, 주 양육자, 어려움)
	양육 필요서비스 욕구
건강 및 의료	건강상태
	병원이용 시 어려운 점, 어려움을 느끼는 진료과
	의료실태(의료급여 수급형태, 월 진료비)

조사영역	조사내용
	강화되어야할 지원 정책
안전 및 인권	안전(일상생활의 위험영역, 시설이용의 불편함)
	시설이용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정책
	폭력피해경험(가정폭력·성폭력 피해경험 및 빈도, 주된 가해자)
	폭력피해대응 및 상담소인지와 필요성정도
여가·문화·교육	일상생활(도움여부 및 도와주는 사람, 외부인고용여부)
	여가(여가생활 및 활동 빈도)
	문화활동 만족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가·문화·교육관련 정책요구
복지욕구 및 복지증진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
	복지증진 정책 수요
	생활만족도

2. 조사대상자 특징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 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00	100.0	전체		300	100.0
지역	제주시	242	(80.7)	학력	무학	20	(6.7)
	서귀포시	58	(19.3)		초졸	39	(13.0)
연령	19~29세	65	(21.7)		중졸	33	(11.0)
	30~39세	46	(15.3)		고졸	146	(48.7)
	40~49세	86	(28.7)		전문대졸	19	(6.3)
	50~59세	71	(23.7)		4년제졸	30	(10.0)
	60~69세	19	(6.3)		대학원졸	4	(1.3)
	70세이상	13	(4.3)		기타	9	(3.0)
장애 유형	지체	78	(26.0)	혼인 상태	미혼	124	(41.3)
	뇌병변	39	(13.0)		기혼	121	(40.3)
	시각	38	(12.7)		이혼	26	(8.7)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00	100.0	전체	300	100.0		
장애 등급	청각언어	34	(11.3)	사별	19	(6.3)	
	내부기관	10	(3.3)		별거	1	(0.3)
	지적	84	(28.0)		기타	9	(3.0)
	자폐성	4	(1.3)	가구 소득	50만원 미만	47	(15.7)
	정신	13	(4.3)		50~99만원	58	(19.3)
장애 원인	1급	146	(48.7)		100~149만원	76	(25.3)
	2급	115	(38.3)		150~199만원	34	(11.3)
	3급	39	(13.0)		200~249만원	34	(11.3)
장애 원인	선천적	108	(36.0)		250~299만원	17	(5.7)
	질환	147	(49.0)		300만원이상	32	(10.7)
	사고	45	(15.0)	무응답	2	(0.7)	
수급자 여부	비수급자	176	(58.7)	응답 유형	본인응답	234	(78.0)
	수급자	124	(41.3)		대리응답	66	(22.0)

나. 응답자의 가족 특성

○ 조사 응답자의 가족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가족 특성 >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본인 외 등록 장애인 가족 수 (중복응답)	전체	323	(100.0)
	배우자	63	(19.5)
	자녀	24	(7.4)
	(시)부모	21	(6.5)
	(시)조부모	1	(0.3)
	형제·자매·친척 등	28	(8.7)
	기타	2	(0.6)
	없음	184	(57.0)
자녀유무	전체	300	(100.0)
	있음	159	(53.0)
	없음	141	(47.0)
자녀수	전체	158	(100.0)
	1명	36	(22.8)

구 분	사례수	(비율)
2명	81	(51.3)
3명	31	(19.6)
4명	6	(3.8)
5명	4	(2.5)

3. 가족생활

□ 혼인·임신·출산경험

-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59.7%는 결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40.3%)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 중증장애인들 중 기혼의 경우 94.2%가 자녀 임신·출산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임신기간 중 경험했던 가장 힘든 점은 '병원비 등 경제적 비용부담'(23.8%), '병원 다니기 어려움'(19.4%),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18.1%)순으로 나타남
- 출산 후 산후조력자도 46.3%가 친정식구이며 그 다음으로는 혼자 17.3%, 남편 16.0% 등 가족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원(4.3%)과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3.7%) 이용경험은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 후 산후조리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2.65점으로 낮게 나타남

□ 미성년 자녀양육의 어려움

- 응답자의 53.0%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으며, 1명, 3명 순임
- 이들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으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의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 '학습지도', '교사와 상담이나 의사소통', '자녀와의 의사소통'순으로 나타남
-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경우 청각언어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 장애인들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의 부담'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욕구

- 응답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의료기관내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산후조리 관련 비용지원확대'를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전문 의료기관지정',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 및 지원 정보제공', '산후도우미지원확대'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양육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 그 다음은 '육아지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 지원' 순으로 나타남

4. 경제생활

□ 취업현황

- 여성 중증장애인의 40.7%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원 졸업의 경우 75.0%, 4년제 졸업은 66.7%, 고졸은 44.5%, 전문대 졸업은 42.1%, 중졸은 36.4%, 초졸은 17.9%, 무학은 15.0%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력자본이 취업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 근무현황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도내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의 근무(27.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일반회사(2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0%), 자영업(15.6%)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고용이 낮은 일자리는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2.5%)과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2.5%)이었음

- 응답자의 직장 내 근무기간을 살펴 본 결과 평균 6년 4개월로 나타남. 특히, 정신장애인이 평균 9년 7개월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현황

- 조사결과 여성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00~149만원이 42.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만원 미만인 20.7%, 50~99만원 19.8%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40.5%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도 100~149만원이 25.3%, 50~99만원 19.3%, 50만원 미만 15.7%임.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35.0%로 나타났음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중증장애인의 72.4%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하기 부족한 임금'으로 나타남

□ 취업욕구 및 정책욕구

- 미취업자(174명) 중 53.4%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가 72.0%로 가장 많았음
-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자들(81명)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창업'과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전문직', '생산직', '관리직', '농림·어업직'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은 '창업'을, 내병변장애인은 '사무직'을,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서비스·판매직'을, 청각언어장애인은 '생산직'을, 내부기관장애인의 경우는 '사무직'과 '농림·어업직'을 가장 많이 원했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응답자들(300명)은 여성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해서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유형별로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았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았음

- 여성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장애유형별 취업지원정책이 만들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5. 건강 및 의료실태

□ 건강상태

- 생활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는 5점 척도기준 평균 2.79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제주도 거주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건강상태(2.70)가 평균보다 낮았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건강상태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을 제외한 신체적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음. 정신건강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신체장애인의 건강상태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병원이용의 어려움

-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뇌병변·시각·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각각 '의사소통'이 가장 많았음
- 병원이용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진료 과는 '산부인과'와 '치과' 13.8%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은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 장애인은 '어려움

없음'과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으며, 시각 장애인은 모두 힘들다가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 장애인은 어려움 없음과 모두가 많았음. 내부기관 장애인은 치과가 가장 많았음

- 혼인유형에서는 기혼이 '산부인과'로 가장 많았음

□ 건강 및 의료지원 욕구

- 여성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위해 가장 강화되어야할 정책으로 '의료비 지원확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등 병원 내 장애여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방문재활치료서비스제공', '재활치료, 퇴원 후 지역 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순으로 나타남

6. 안전 실태

□ 일상생활 수행 시 안전위험 분야

-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분야는 '외출'(대중교통 이용 불편이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에 대한 우려', '불규칙한 수입 등 경제적 불안정',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한 부담'순으로 나타남
-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이동권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시설이나 교통수단 이용경험

- 모든 시설이용에 있어 가장 불편함을 경험하는 장애인은 시각 여성 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시설 중 여성중증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시설은 도서관으로 나타남. 또한, 이용시설경험이 가장 없는 시설도 도서관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불편하지 않은 시설은 복지관이었음

□ 여성폭력피해경험

- 조사결과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가정 내 폭력피해경험(평생 경험)(16.7%)이 가정 외 폭력 피해경험(평생경험)(14.7%)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가해자는 주로 배우자가 많았으며,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50.3%가 상담소를 알고 는 있지만 대응방법은 '맞으면서 참는다'가 가장 많았음
- 제주지역에 장애인 대상 폭력관련 상담소가 필요한지 의향을 물어 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60.9%로 가장 많았음

7. 일상생활/여가·문화/교육실태

□ 일상생활

- 조사결과,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33.0%로 가장 많았지만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는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와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각각 50.0%로 나타났음
- 일상생활 중 도와주는 사람은 '활동보조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순으로 나타났음
-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횟수를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이 가장 많았지만 '월1~2회' 8.3%, '전혀 나간적 없음'도 2.7%로 나타남
- 응답자의 47.0%는 거의 매일 외출을 하고 있지만, 월 1~2회 또는 전혀 나간 적이 없는 경우도 11.0%로 나타났음. 이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필요함

□ 여가·문화활동

- 지난 1년간 여가·문화 활동을 연극, 영화, 공연 관람,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도내 여행, 타 지역 또는 해외여행, 친구나 친척모임 참여,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컴퓨터, 외국어, 미술치료, 인문학 강좌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타 지역 또는 해외여행'경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음

- 여가 및 문화활동 만족도는 2.86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가·문화·평생교육을 더 누리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하는지 조사한 결과 '여가 활동과 문화활동 지원바우처 제도의 현실화와 활성화'가 가장 많았으며,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 '이동 및 활동보조지원제도 개선(활동도우미시간 연장, 통역/자막지원 등)', '여가, 문화 관련 교육정보제공'순으로 나타남

□ 교육실태

-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 그 다음이 '취업지원교육',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교육', '컴퓨터 및 인터넷교육', '한글교육'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은 '문화예술교육'을, 뇌병변장애인은 '컴퓨터 및 인터넷교육'을, 시각·지적장애인은 '취업지원교육'을, 청각언어장애인은 '한글교육'을, 내부기관장애인은 '인문교양교육'을, 자폐성장애인은 '문화예술교육'을, 정신장애인은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서비스 욕구

-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서비스(연금, 수당, 할인 등)'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생활지원서비스(활동보조인, 주거지원 등)', '직업재활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 여성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평생교육센터건립,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장애인 콜택시 증차, 의료 및 생활비지원,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망구축, 활동보조인시간개선, 출산장려정책강화사업으로 나누어 '동의'를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 중 '의료비와 생활비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음

제5장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¹⁾

가. 가정생활분야

- 여성 중증장애인의 임신·출산 관련 비용지원확대 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은 임신기간 중 '병원비 등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장 어려워했으며, 출산 후 산후조력자도 가족이 많았으며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임신·출산 관련 비용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전문 의료기관지정 필요
 - 조사결과 여성 중증장애인 중 기혼의 경우 임신·출산 경험이 94.2%로 나타남. 이들이 편안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전문 의료기관지정확대가 필요함
- 장애유형을 고려한 양육지원정책 필요
 - 자폐성 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았음
 - 청각언어장애인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장애유형을 고려한 양육지원정책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제기됨

나. 경제생활 분야

-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참여에 학력자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조사결과 요약내용은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정책시사점 중심으로 요약함

-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력자본이 취업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인 이후에도 학력자본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지원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여성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필요

- 도내 여성중증장애인들의 가장 고용이 낮은 일자리는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으로 나타남. 공공기관의 여성 장애인고용 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장애유형을 고려한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해서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특히,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과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에 대한 지원이,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확대와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다. 건강 및 의료분야

○ 여성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은 자신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함. 여성 중증장애인의 건강은 생활만족도와 미취업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에 영향을 미침으로 여성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위해 이들의 건강을 관리할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여성 중증장애인을 위한 병원 내 서비스 강화 필요

- 청각언어·자폐성·정신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병원이용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산부인과'와 '치과' 진료 과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병원 내 장애인을 위한 시설확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등 여성장애인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라. 안전 분야

○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외출시 교통 사고 등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이 안전하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필요

- 제주지역 가정 내·외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가정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가정 외에서는 이웃에게서 폭력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음.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여성장애인 가정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대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마. 일상생활/여가·문화/교육 분야

○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개발 제공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원했으며 장애 유형별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특히,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의료비와 생활비지원 사업 확대 추진 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경제적 지원서비스(연금, 수당, 할인 등)'를 원했으며 여성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 사업'을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저소득이 많으며 이들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과 연결됨. 따라서 의료비와 생활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위한 도내 여행 활성화 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타 지역 또는 해외여행 경험이 많이 없지만 여가·문화

생활을 더 누리기 위한 개선점으로 '여가 활동과 문화활동지원 바우처 제도의 현실화와 활성화가 가장 많았음

- 타 지역여행 대신 도내 여행을 통해 여성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생활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도내 여행지원사업이 필요함

2. 정책 제언

○ 본 연구에 제시한 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분야별 정책제언 >

분야	정책과제
가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녀양육지원제도 실시 -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멘토링 서비스지원 - 「책읽어주기 사업」 재개 - 응급벨 설치 ▶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실시
경제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을 고려한 직업훈련프로그램실시 -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지적,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유지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 내부기관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지원 -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적응관련 프로그램 지원 ▶ '여성장애인 고용친화사업장 인증제도' 신설 ▶ 여성 중증장애인을 위한 창업지원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취업지원
건강 및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가정주치의' 제도 실시 ▶ 장애인지정병원 확대 및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내 여성장애인 도우미 상시배치 ▶ 종합병원 내 수화통역사 의무고용실시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콜택시 1차2인제 실시 ▶ 버스, 택시, 영화관, 도서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모니터링실시 ▶ 여성장애인 폭력관련 통합대응시스템마련
일상생활/여가·문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바우처 사업대상·참여기관 확대 및 수화 통역서비스 실시 ▶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거점'기관 지정 ▶ 의료비와 생활비지원 사업 확대 및 강화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4
4. 연구절차	6

제2장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선행연구

1. 여성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9
2.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	10
3. 여성 중증장애인의 개념과 관련 연구	14

제3장 국내·외 여성장애인 정책 동향

1. 국내·외 여성장애인 관련법 및 지원정책	19
2.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및 지원정책	28

제4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35
가. 조사대상	35
나. 표본설계	37
다. 조사방법	37
라. 조사내용	38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9
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9
나. 응답자의 가족 특성	41
3. 가족생활	42
가. 혼인	42
나. 임신·출산	45
다. 자녀양육	49
라. 혼인·출산·양육지원 정책욕구	54

4. 경제생활	56
가. 취업현황	57
나. 근무현황	58
다. 소득현황	64
라. 취업욕구 및 정책욕구	68
5. 건강 및 의료 실태	78
가. 건강상태	78
나. 의료비지출현황	79
다. 병원이용의 어려움	80
라. 건강 및 의료지원 욕구	82
6. 안전 실태	83
가. 일상생활 수행 시 안전위협 분야	83
나. 시설이나 교통수단 이용경험	84
다. 여성폭력피해 경험	98
라. 안전 관련 정책지원 욕구	104
7. 일상생활 /여가·문화 /교육 실태	106
가. 일상생활	106
나. 여가·문화 생활	109
다. 교육실태	111
라. 여가·문화·평생교육 관련 정책욕구	114
마. 복지서비스	115
바. 생활만족도	117

제5장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121
2. 정책 제언	132
참고문헌	138
부록.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설문지	141

표 목 차

<표 1-1> 연구절차	6
<표 3-1>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21
<표 3-2>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중증장애인(1,2급) 유형별 현황	31
<표 4-1>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중증장애인(1,2급) 유형별 현황	35
<표 4-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중증장애인 8개 유형별 현황	36
<표 4-3> 조사표본	37
<표 4-4>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38
<표 4-5>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9
<표 4-6> 응답자의 가족특성	41
<표 4-7> 장애유형별 혼인상태	42
<표 4-8> 결혼하지 않는 이유	43
<표 4-9> 향후 결혼 의향	44
<표 4-10> 임신 또는 출산 경험	45
<표 4-11> 임신기간 가정 힘든 점	46
<표 4-12> 출산 후 산후조리 조력자	47
<표 4-13> 출산 후 산후조리 충분정도	48
<표 4-14> 미성년 자녀 돌보는 사람	49
<표 4-15>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 부담 정도	51
<표 4-16>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 부담 정도	52
<표 4-17>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담 정도	53
<표 4-18> 교사와 상담이나 의사소통 부담 정도	53
<표 4-19> 학습지도 부담 정도	54
<표 4-20>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55
<표 4-21> 자녀양육 및 교육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56
<표 4-22> 장애유형과 등급별 취업여부	57
<표 4-23> 학력별 취업여부	58
<표 4-24> 장애유형과 등급별 일하는 곳(취업처)	59
<표 4-25> 학력별 일하는 곳(취업처)	60
<표 4-26> 장애 유형과 장애 등급별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61

<표 4-27> 학력별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62
<표 4-28> 장애유형과 등급별 현 직장에서의 근무일과 근무기간	63
<표 4-29> 학력별 현 직장에서의 근무일과 근무기간	63
<표 4-30> 장애유형과 등급별 월 개인 소득현황	64
<표 4-31> 학력별 월 개인 소득현황	65
<표 4-32> 장애유형과 등급별 월 가구 소득현황	66
<표 4-33> 학력별 월 가구 소득현황	67
<표 4-34> 장애유형과 등급별 일하면서느끼는 어려움	69
<표 4-35> 취업처별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70
<표 4-36> 미취업자의 장애유형과 등급별 미취업 이유	71
<표 4-37> 미취업자의 장애유형별 원하는 일자리	72
<표 4-38> 직업훈련 의향	73
<표 4-39> 가장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73
<표 4-40> 경제활동 참여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77
<표 4-41>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78
<표 4-42> 월평균 진료비	79
<표 4-43> 의료급여 수급형태	79
<표 4-43> 병원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80
<표 4-44> 병원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진료과목	81
<표 4-45>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위해 강화해야할 정책	82
<표 4-46>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분야	84
<표 4-47> 동네슈퍼 이용 시 불편정도	86
<표 4-48> 대형마트 이용 시 불편정도	87
<표 4-49> 병원 이용 시 불편정도	88
<표 4-50> 주민자체센터 이용 시 불편정도	89
<표 4-51> 학교 이용 시 불편정도	90
<표 4-52> 복지관 이용 시 불편정도	91
<표 4-53> 영화관 이용 시 불편정도	92
<표 4-54> 도서관 이용 시 불편정도	93
<표 4-55> 버스 이용 시 불편정도	95
<표 4-56> 택시 이용 시 불편정도	96
<표 4-57>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불편정도	98

<표 4-58> 가정 내 폭력 경험	99
<표 4-59> 가정 내 폭력 유형 (중복응답)	99
<표 4-60> 가정 외 폭력 경험	100
<표 4-61> 가정 외 폭력 유형 (중복응답)	101
<표 4-62> 가정 내 폭력 빈도	101
<표 4-63> 가정 외 폭력 빈도	102
<표 4-64> 폭력 가해자 (중복응답)	102
<표 4-65> 폭력상황 대응방식	103
<표 4-66>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인지도	104
<표 4-67> 각종 시설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할 점	105
<표 4-68> 장애인 대상 폭력관련 상담소 필요성	105
<표 4-69> 일상생활시 타인 도움 필요정도	106
<표 4-70> 일상생활시 조력자	107
<표 4-71> 일상생활시 외부조력자 이용 의향	108
<표 4-72>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109
<표 4-73> 여가 문화생활 빈도	110
<표 4-74> 여가 문화생활 만족도	111
<표 4-75> 최종학교종류	112
<표 4-76>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113
<표 4-77>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114
<표 4-78>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115
<표 4-79> 현재 생활만족도	117
<표 4-80> 직업유무, 건강상태, 폭력피해경험유무별 생활만족도	117

그림목차

<그림 4-1> 자녀양육 시 어려운 점	50
<그림 4-2> 시설이나 교통수단 이용경험	85
<그림 4-3> 복지증진 사업수요	116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제주지역 등록장애인 및 여성 중증장애인(1,2급) 비율이 전국보다 높음(보건복지부, 2014)
 - 전체 인구 중 등록장애인 비율이 전국 2,494,460명으로 4.9%인데 비해 제주는 32,989명으로 5.4%를 차지함
 - 전체 등록장애인 중 여성중증장애인 비율도 전국 223,111명으로 8.9%인데 비해 제주는 3,388명으로 10.3%임

- 제주지역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주도 장애인 실태 및 욕구 조사 보고서』(2000) 이후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조례」에 근거해 『제주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2012)가 진행된 바 있음
 - 『제주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2012)에서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임신과 출산 경험에 국한되어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2013년 ‘제주관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여성 중증장애인의 유형별 실태조사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실임(제주의 소리, 2015.01.03)

-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실태 조사를 실시해야함.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여성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성별분리 통계도 최근에 와서야 부록에 제시되고 있음(최은희, 2014: 11)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장애인 1급, 2급, 중복3급 여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경제생활, 건강 및 의료, 안전, 일상생활, 여가·문화·

교육실태, 복지욕구 등을 조사하여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토대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주형 여성 중증장애인 지원정책을 제한하고자함

2. 연구내용

- 국내·외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여성장애인 관련 통계, 법령 및 조례, 정책 현황 파악
 -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현황 및 정책, 제도 분석
 - 기존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관련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문문항 개발
 -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 여성 중증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제언 제시

3. 연구방법

- 주요 연구방법으로 여성장애인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여성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정책토론회 등을 실행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문헌연구

- 통계, 관계법령, 타지자체 사례 등 문헌 연구
- 중앙, 국외, 제주 관련정책 및 관련 서비스 현황 분석

나. 전문가 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관련 부서 의견수렴

- 내용: 연구범위 및 설문지(안) 검토
- 일시: 2015. 6.4(1차), 6.5(2차), 6.10 (3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지(안) 의견 수렴

- 내용: 연구방향,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 자문
- 일시: 자문회의 (2015. 3.19 & 6.3)(2회), 설문지(안) 의견수렴(2015. 6.4~6.11)

다. 설문조사

○ 설문조사

- 조사대상: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중증장애인이며, 조사 대상자 수는 300명임
- 조사 방법 : 장애유형을 고려한 유의표집 후 면대면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6.18 ~ 7.14

라. 정책토론회

○ 제주 여성중증장애인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 학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여성장애인 당사자 및 도민 일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였음

- 내용: 주요 연구결과 설명 및 정책 의견 수렴
- 일시: 2015. 8.11(화)

4. 연구절차

- 본 조사는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 회의를 통한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2차 자문회의에서는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음. 마지막으로 정책토론회를 거쳐 학계, 관계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도민 일반의 의견을 듣고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였음
- 본 연구의 연구절차를 제시하면 <표 1-1>과 같음.

<표 1-1> 연구절차

1단계	▷ 연구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 연구 착수 보고
	▷ 자문회의(1차)		▷ 선행연구 검토 ▷ 중앙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중증장애인 관련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 수집 검토
			▷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연구방법 점검
2단계	▷ 자문회의(2차)	⇨	▷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논의
	▷ 설문지(안) 의견 수렴		▷ 담당부서 의견수렴(2015. 6.7~6.11) ▷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수렴(2015. 6.7~6.11)
3단계	▷ 실태조사 (설문 조사)	⇨	▷ 「제주지역 여성중증 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실시」 (2015. 6.18~7.14)
4단계	▷ 정책토론회	⇨	▷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 정책적 제언 마련		▷ 의견수렴 반영한 정책제언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선행연구

1. 여성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2.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
3. 여성 중증장애인의 개념과 관련 연구

1. 여성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²⁾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인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인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함
- 반면, 김성미(2007)는 여성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을 강조하면서 여성 장애인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심리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이은혜(2006)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이란 개인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음
- 여성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시행 2015년 5월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음.
 - 신체적 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 등 신체외부장애와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신체 내부장애로 나뉨
 -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로 나뉨
 - 현행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외부장애, 신체내부장애, 정신적 장애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15개 유형으로 나누어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고려해 15개 유형을 상대적으로 출현율이 높은 장애 유형은 독립적으로 분류하고 출현율이 낮은 장애유형은 제외, 유사한 장애 유형은 같은 범주로 묶어 8개 유형 즉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신체 내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으로 나누어 분류하고자함

2. 여성 장애인 관련 연구

-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있어서 남성 장애인과 차이가 없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의해 권리와 사회적 참여를 상당부분 제한받아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다수임
 - 오혜경(2002)은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가정 속에서만 생활하게 되므로 교육과 결혼, 취업 등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며, 사회로부터 소외됨에 따라 인간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있음
 - 김성희(2010)도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은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도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면, 박주영(2012: 37)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성/폭력/차별 관련 연구임을 밝히고 있음. 또한, 경제활동, 결혼/보육/양육, 안전,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성/폭력/차별 분야

- 주경미 외(2013)는 『부산지역 여성장애인 폭력의 장애유형별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여성 장애인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함, 그러나

이들의 폭력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구축이 없음을 문제제기함, 피해자 통계자료구축과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강조함

- 김성희(2008)도 가정폭력의 경우 여성 장애인이 주 피해대상이며 그 이유를 여성 장애인의 주 활동 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이며, 또한 가정폭력 유형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이 성적 폭력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이렇듯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사회에서 남성 장애인 보다 더 가정폭력·성폭력에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경제활동 분야

- 김세연 외(2012)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유지를 위해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용이 열악하며 직무만족도도 낮지만, 직업유지를 위해 취업의 안정성, 건강, 임금수준, 직무조정을 통해 고용관련 정책을 수립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한애경 외(2014)는 1년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장애인의 근로 참여 경험연구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의 근로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로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근로동기를 잃게 함과 동시에 직장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김승완 외(2015)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29.3%에서 2005년 28.4%, 2011년 23.9%로 하락하는 원인을 육아부담과 업무환경의 제약으로 파악하고 있음. 또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간제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정도를 나누어 시간제일자리 활성화지원방안을 구축해야함을 제시하고 있음
- 이민정 외(2013)는 여성장애인 취업과 관련해 노동공급자 측면의 취업욕구와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노동수요자 측면에서의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직접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태도와 인식관련 연구를 통해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경험의 부족을 고용저해 원인으로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취업경험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성차별로 인한 여성의 저임금구조,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인적자본의 취약성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결혼/보육/양육 분야

- 전민경 외(2014)는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실태를 통해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더 많으며 임신기간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 봐였음.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는 친정식구 등 개인적 자원을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혼자의 90%가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서비스였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장애인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자녀양육의 큰 어려움을 차지하고 있었음
- 박주희 외(2012)도 광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여성 장애인들은 임신·출산·양육 관련 비용부담과 관련 정보의 부재, 병원까지의 이동 및 시설이용의 어려움, 출산 후 건강악화를 경험했으며, 특히, 아이가 아플 때나 사고가 났을 때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여성장애인들은 전통적 가부장제사회의 성별분업에 의해 가사와 양육노동을 남성장애인들보다 더욱 많이 요구받고 있지만, 병원·보육시설·주거 등 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사회적 편의시설부족은 여성장애인들의 모성역할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안전 분야

- 최은희(2014)는 「충청남도 장애여성 생활 및 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 범죄로 부터의 안전, 지역사회 내 안전으로 나누어 여성장애인의 안전위협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장애인들은 ‘가정 내 안전사고’를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피해와 지역사회 내 강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음
- 장미혜·윤덕경·이인선(2013)은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5)를 통해 안전의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안전에 대한 성별인식과 여성·여아의 안전실태와 정책대응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안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에 취약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안전실태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여가·문화 분야

- 김정득 외(2013)는 여성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이 주로 TV시청이며, 건강 문제 및 경제적 부담으로 여가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내 체육관 등의 편의시설 확충, 문화활동에 대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문화바우처사업과 여행이용권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음
- 반면, 권재숙·김성진(2012)은 “여성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에게 여가와 문화활동은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이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은 주로 가정 내 활동에 한정되어 있으며 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여가와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여성 중증장애인의 개념과 관련연구

□ 여성 중증장애인의 개념

- 먼저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분류됨. 『2013 장애인백서』에서는 장애등급이 1급과 2급인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중 3급에 해당하는 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밝히고 있음
- 여성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중중이며,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등록장애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중증 장애인의 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경증장애인의 증가율이 중증장애인보다 높기 때문임(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40)
- 경증장애인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특히, 여성중증장애인에 대한 관련 연구부족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연구

-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중증장애인의 시간제일자리 실태(김승완 외, 2015)와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성별분리통계로 제시되고 있을 뿐 임
- 여성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취업실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9), 사회관계망실태(이정희,2006) 뿐이며 질적연구를 통한 여성 중증장애인의 자녀양육경험(최길선, 2012), 사회통합경험(황보옥·박영춘, 2011) 등 부분적인 연구만 있을 뿐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는 상태임

- 본 연구에서는 여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분야를 결혼/보육/양육 생활, 경제생활, 안전실태, 가정폭력/성폭력실태, 여가/문화생활을 포함해 취업 활동과 여가·문화 활동의 가장 큰 요인인 건강 및 의료, 교육실태까지 확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국내·외 여성장애인 정책 동향

1. 국내·외 여성장애인 관련법 및 지원정책
2.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및 지원정책

1. 국내·외 여성장애인관련 법 및 지원정책

가. 국내 관련 법 및 관련 정책

1) 여성장애인 관련 법

- 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시작으로 1989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함. 이 법을 통해 장애영역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5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을 통해 장애인은 ‘존엄한 인간’임을 선언했으며,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200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영역을 추가함. 2003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통해 장애영역에 호흡기장애, 간장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을 추가해 15개 영역으로 확대함. 2007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했음
- 이후,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했으며, 2008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함. 2011년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적극적 개선을 위한 법이 제·개정됨.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명시된 장애인 관련 법은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임
 - 「장애인인권헌장」 제11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더 중시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는 것을 금하고, 여성장애인 근로자 차별 금지률, 제34조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식개선과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여성장애인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및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1981년 UN의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이후 국제적인 정책변화에 의해 장애인정책에 관한 제도적 틀이 1980년대 들어서 재정비됨
-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이후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 「편의증진법제정」 등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중심 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함(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행동계획을 통해 199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계획을 5년마다 수립, 1998년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했음(보건복지부, 2013)
-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말 전국 등록장애인 수는 총 2,511,159명으로 이 중 여성장애인은 41.8%인 1,050,669명으로 나타남. 2010년 1,048,979명, 2011년 1,052,781명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보건복지부, 2010-2013)
- 2012년도 장애인구의 출현율은 5.02%이며, 남성장애인은 5.83%, 여성장애인은

4.21%로 여성장애인의 출현율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또한,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 출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통계청, 2011)

-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을 담당부처와 사업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 <3-1>와 같음

<표 3-1>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담당부처	사업명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가사도우미 사업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교육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욕구 및 장애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출산비용지원 사업	○출산시 산모 1인당 1백만원 지원
여성가족부	어울림센터 운영	○맞춤형 상담을 통한 고충해결 ○역량강화교육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특화교육 지원	○이미지 편집교육, 텔레마케터 양성교육, 바리스타 양성 과 정 등 지원
	역량강화사업	○여성장애인을 위한 경제·사회·문화 역량강화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장애인상담소, 장애인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통합 장애인보호시설 설치운영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및 우선채용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활동지원	○여성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법무부	성폭력피해인 지원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출처: 「2013 장애인백서」(2013:515)

가) 보건복지부 사업

□ 가사도우미 사업

-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은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산후도우미지원 등에 관한 조항(제37조)을 신설하여 이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업수행기관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며 각 수행기관에서는 가사도우미 양성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음
-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여성 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등록여성 장애인,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자로 함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와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에 의거하여 2006년도부터 수행되고 있음
- 사업내용으로는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관련 교육(한글, 기초 영어, 기초수학, 검정고시, 정보화 능력 증대 등), 보건·복지 관련 교육(성교육, 건강, 보건 등), 여성장애인의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문 교육(문학, 글쓰기, 역사, 예술, 교양, 철학, 심리학 등), 기타 사회적응 및 참여, 취업 과정, 문화향유, 체험 등(지역사회이해, 자립교육, 장애수준별 단기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저소득 층이나 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예산의 80%를 지원하고 20%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음

□ 출산비용지원 사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2012년 1월 시작되었음.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임. 지원금액은 출산 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을 지원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여성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3급인 자로써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함

나) 여성가족부 사업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여성장애인 맞춤형 상담을 통한 고충해결,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직업훈련, 건강 및 의료, 취업알선, 법률 등), 사후관리 등의 종합서비스를 One-stop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여성복지증진)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서울지역 4개소, 경기지역 2개소, 전남 2개소, 인천 2개소 그 외 시·도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총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상담소와 장애인보호시설 지원을 지원함
- 2012년 말 기준 장애인 상담소의 경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2개,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통합상담소 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장애인보호시설의 경우는 장애인 보호시설 4개소(가정폭력 보호시설 1개소, 성폭력 보호시설 4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장애유형별로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과 분야로 특화된 「성폭력 피해자 응급처치 및 의료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음

다) 고용노동부 사업

□ 여성장애인 고용지원

- 장애인채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여성장애인 고용 시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함
- 2010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고용률을 기준으로, 이후부터는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경증, 중증장애에 상관없이 남성장애인 고용시보다 여성장애인 고용시 장려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요약하면 여성 중증장애인은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대상이며 여성 경증장애인과는 달리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출산비용지원사업과 가사도우미사업을 더 지원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국외 관련 정책

- 장애인복지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주요 선진국인 호주, 스웨덴, 독일을 중심으로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함³⁾

1) 호주

- 호주의 장애인관련법은 1963년 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주거법」 부터 시작하여, 1970년도에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아동법」 제정, 1974년 직업훈련, 치료및 재활센터에 보조금을 증대·확대하는 「장애인법」 제정, 1978년 「장애아동수당제도」와 1986년 장애인 분리수용보다는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서비스법」을 제정함(한국정책 기획평가원, 2008)
- 대표적인 장애인복지현황을 소득보장, 고용,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3)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분석연구」(2014)에서 요약 발췌함

□ 소득보장

-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자지원연금, 질병수당,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수급기준은 16세 이상,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미만자로 신체장애율이 20%이상이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하며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지원하고 있음

□ 고용서비스

- 장애인의 근로기회를 촉진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고용획득, 유지를 위한 장애실습생 급여지원프로그램, 구직 탐색기간 동안의 격려 및 지원, 직업준비를 위한 훈련 및 재훈련, 작업능력평가, 직업위기대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는 16세 이상 64세 이하로 주 15시간 이상, 34시간까지 사회활동을 하는 개별원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서비스임
- 서비스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지원, 사회적 지원, 간호, 연대 의료보호, 개인적 치료/도움, 식사 및 기타 음식서비스, 임시위탁보호, 사례관리, 주택관리와 개조, 교통/이동, 상담, 재활보조기구지원 등이 있음

2) 스웨덴

- 스웨덴의 장애인정책은 평등주의 사회의 원칙에 근거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조건의 차이를 줄이는데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정책의 방향제시와 장애인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및 고용서비스와 같은 특정영역에 대해 정책의 발전과 실행을 담당함

- 지방의회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우선 책임을 지며,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독립과 생활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지적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제공, 주택개조보조금, 특별운송수단서비스, 차량을 지원함
- 주요 장애인정책을 소득보장, 장애인고용서비스,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득보장

-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비례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동차수당을 제공함
- 자격조건은 19세 ~ 64세로 최소 근로 능력을 25% 이상 손상한 자이며, 급여 성격에 따라 나이와 근로능력 손상정도에 차이가 있음

□ 장애인고용서비스

- 보편적 고용서비스전달체계인 고용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유지를 지원함
-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생산성감소를 보전해 주는 임금보조제도를 운영, 정부가 장애인기업을 직접 운영해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서비스

-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법에 근거해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없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임
-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모든 장애유형에 관계 없이 계단제거, 경사로 설치, 자동문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주택개조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그 외 24시간 거주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홈이용과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독립거주를 보장하는 지원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독일

- 독일의 장애인관련 법은 1919년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명령」과 1920년 「중증상해자고용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함. 1923년 20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한 2%의 고용할당을 의무화한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1969년 장애인을 위한 노동촉진 및 직업촉진의 조치가 반영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됨
- 1980년대 장애인의 재활촉진을 위한 「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한 행동강령」이 제시되었으며 2001년 20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한 최소 5%의 일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평등법」을 통해 장애인차별을 금지함
- 독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크게 의료재활, 근로에 참여, 사회생활에 참여로 나누어짐

□ 의료재활

- 장애를 극복하고 완화,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에 의한 치료, 약물 및 도구 지급, 심리치료 등 관련서비스가 제공됨
-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비 지급까지 주어짐

□ 근로에 참여지원

- 장애인의 생업능력을 유지, 증진, 회복시키기 위해 근로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 직업훈련 및 재훈련, 직업훈련시 생활비 지원, 취업촉진(상담, 알선, 작업장비 및 이동 장비에 대한 보조 등), 보호고용 등을 지원함

□ 사회생활에 참여지원

- 타인에 의한 수발로부터 최대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에 적합한 거주지마련 지원, 비장애인과 의 만남 촉진하는 문화생활지원, 주변 환경과의 의사소통촉진(예 수화통역사 대동), 취학전 아동을 위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그 외 세금공제 혜택과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있음
- 국외 장애인관련 지원정책들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고용지원, 사회활동지원, 치료 및 재활 등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타인의 도움 없이도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소득보장과 사회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여성 중증장애인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및 지원정책

가. 여성 중증장애인 관련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200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20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20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20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2015)와 중증장애인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2009),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촉진조례」(2012),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2014)등 이 있음

□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는 2006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안정, 정신질환 예방과 의료 및 사회복귀 촉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비지급, 자녀교육비지급, 자립훈련비지급, 장애수당등의 지급,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시행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2010년 11월에 제정되었으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목적이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5월에 제정되었으며,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할 목적임.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2011년 6월에 제정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는 2015년 5월에 제정했으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 중증장애인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2009년 6월에 제정했으며, 중증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스스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는 2012년 11월에 제정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의무규정과 생산시설에 대한 제품개발, 기술지원등의 비용지원 등임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는 2014년 12월에 제정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시청권보장과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요약하면,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복지조례와 중증장애인 관련 조례를 통해 차별받지 않고 자립과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의료비/자녀교육비/자립훈련비/장애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도 받을 권리가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는 한계가 있음

나. 여성 중증장애인 현황 및 지원정책

1) 여성 중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 2014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등록장애인은 총 2,494,460명(남성장애인 1,448,878명, 여성장애인 1,045,582명)임. 제주지역 등록장애인은 총 32,989명임
- 전체 인구 51,327,916명 중 등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임. 제주의 경우는 전체 인구 607,346명 중 등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4%임. 전국과 비교할 때 제주가 높음

- 전체 장애인 중 여성 중증장애인(1,2급)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제주가 전국 보다 높음 (전국 223,111명 8.9% vs 제주 3,388명 10.3%)
- 2015년 7월말 기준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1,2급)의 수는 3,383명이며 이중 1급은 1,519명, 2급은 1,864명임. 장애유형별 여성 중증장애인 현황은 <표 3-2>와 같음

<표 3-2> 20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중증장애인(1,2급) 유형별 현황

(단위: 명)

번호	유형	총계	여성 1급	여성 2급
		3,383	1,519	1,864
1	지 체	514	177	337
2	뇌병변	771	504	267
3	시 각	410	344	66
4	청각	321	71	250
5	언어	23	1	22
6	지적	762	333	429
7	자폐	43	24	19
8	정신	169	21	148
9	신장	327	26	301
10	심장	8	2	6
11	호흡기	23	9	14
12	간	7	5	2
13	안면	1	0	1
14	장루·요루	0	0	0
15	간질	4	2	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5.07.31)

2) 여성 중증장애인 지원정책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지원정책은 크게 연금·수당·교통비 지원, 의료지원, 출산양육교육비지원, 방문서비스, 주택개조, 고용장려금지원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내부자료)과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구분됨(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 복지과 내부자료)

- 연금·수당·교통비지원의 경우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은 저소득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비지원은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의료지원의 경우 의료비지원은 의료급여 2종 장애인과 저소득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있음
- 출산양육교육비지원의 경우 출산비용지원은 여성장애인으로 당해연도에 출산 또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가족지원은 만18세미만 장애아동의 양육지원을, 교육비지원은 1~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초중고생자녀에게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함.
- 방문서비스의 경우는 만 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함. 주택개조의 경우는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있음
- 고용장려금의 경우는 장애인을 고용한 5~50인 미만 사업체에 성별 및 장애 등급에 따라 1인 월200~50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는 11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 중증장애인 상해보험가입,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감면, 1급 장애인 장애수당추가지원,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음

○ 요약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은 임신/출산/양육에 한정되어 있어 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조건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 조사대상자 특징
3. 가족생활
4. 경제생활
5. 건강 및 의료 실태
6. 안전 실태
7. 일상생활/여가·문화/교육 실태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

○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

- 모집단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중증장애인을 조사 모집단으로 함(<표 4-1> 참조)

<표4-1> 20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3급) 유형별 현황

(단위: 명)

번호	유형	총계	여성 1급	여성 2급	여성 중복3급
		3,517	1,519	1,864	134
1	지 체	543	177	337	29
2	뇌병변	782	504	267	11
3	시 각	419	344	66	9
4	청각	351	71	250	30
5	언어	30	1	22	7
6	지적	788	333	429	26
7	자폐	43	24	19	0
8	정신	183	21	148	14
9	신장	327	26	301	0
10	심장	11	2	6	3
11	호흡기	27	9	14	4
12	간	7	5	2	0
13	안면	1	0	1	0
14	장루·요루	0	0	0	0
15	간질	5	2	2	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5.07.31)

- 표본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15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범주화해 모집단을 재구성 하였음 (<표 4-2>참조)
- 신체외부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중 상대적으로 출현율이

높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는 독립적으로 분류하였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는 같은 범주로 묶어서 분류하였음. 안면장애의 경우 1명으로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간질장애)는 같은 범주로 묶어서 내부기관장애 즉 신체내부장애로 분류하였음
-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각각 독립적으로 분류하였음

〈표 4-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중증장애인 8개 유형별 현황

(단위:명)

번호	유형별	총계	등급별		
		계	1급	2급	중복3급
	총계	3,517	1,519	1,864	134
1	지 체	543	177	337	29
2	뇌병변	782	504	267	11
3	시 각	419	344	66	9
4	청각·언어	381	72	272	37
5	지적	788	333	429	26
6	자폐	43	24	19	0
7	정신	183	21	148	14
8	내부기관장애	378	44	326	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5.07.31)에서 재구성

○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자는 조사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등록장애인 명부를 표본추출틀로 설정하였지만,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2011.9.30)에 의해 등록장애인 명부를 확보하지 못함
- 그 결과, 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에 등록된 여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급, 2급, 중복 3급을 포함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300명을 할당 및 유의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함

나. 표본설계

- 표집방법은 먼저, 8개의 장애유형을 고려해 할당표집을 하였음
 - 할당을 통한 유형별 제주지역 등록여성 중증장애인의 수는 지체장애인 46명, 뇌병변장애인 69명, 시각장애인 37명, 청각·언어장애인 31명, 지적장애인 67명, 자폐장애인 3명, 정신장애인 15명, 내부기관장애인 32명 등 총 300명임
- 할당표집 후 임신·출산·양육경험을 위해 30대와 40대 그리고 근로실태와 취업 활동에서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기위해 취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를 유의표집했음. 그 결과 최종 조사표본은 다음과 같음(<표 4-3> 참조)

<표4-3> 조사표본

(단위:명)

번호	유형별	총계	등급별 표본할당		
		계	1급	2급	중복3급
	총계	300	146	115	39
1	지체	78	41	27	10
2	뇌병변	39	23	12	4
3	시각	38	30	4	4
4	청각·언어	34	16	13	5
5	지적	84	27	44	13
6	자폐	4	3	1	0
7	정신	13	5	5	3
8	내부기관장애	10	1	9	0

다. 조사방법

- 조사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여성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조사대상자를 발굴하였고, 1:1 면접조사를 위해 관련 단체 담당자, 기관 담당자, 활동보조인 등이 조사원이 되어 함께 직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라. 조사내용

○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은 <표 44>와 같음

<표4-4>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일반사항	지역, 연령, 응답자유형, 거주지,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원인, 최종학교 종류, 학력, 혼인유형, 수급여부
경제생활	경제활동실태(취업여부, 취업특성, 미취업 사유 등)
	경제상태(월평균 소득, 위평균 가구소득)
	취업현황(일하면서 어려운 점)
	미취업현황(이유, 취업희망여부, 미취업 이유)
	직업훈련 의향 및 필요 욕구
	제주지역 여성중증 장애인을 위한 경제참여 지원정책
가족생활	가족구성원 현황(등록된 장애인 가족)
	미혼이유 및 결혼의향
	임신출산경험(임신출산경험, 어려움, 산후조리 경험, 만족도, 임신출산의향)
	임신출산을 위한 필요정책
	양육(자녀수, 다른 사람의 도움, 주 양육자, 어려움)
	양육 필요서비스 욕구
건강 및 의료	건강상태
	병원이용 시 어려운 점, 어려움을 느끼는 진료과
	의료실태(의료급여 수급형태, 월 진료비)
	강화되어야할 지원 정책
안전 및 인권	안전(일상생활의 위험영역, 시설이용의 불편함)
	시설이용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정책
	폭력피해경험(가정폭력·성폭력 피해경험 및 빈도, 주된 가해자)
	폭력피해대응 및 상담소인지와 필요성정도
여가문화 교육	일상생활(도움여부 및 도와주는 사람, 외부인고용여부)
	여가(여가생활 및 활동 빈도)
	문화활동 만족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가문화 교육관련 정책욕구
복지욕구 및 복지증진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
	복지증진 정책 수요
	생활만족도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4-5>과 같음

<표4-5>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00	100.0	전체		300	100.0	
지역	제주시	242	(80.7)	학력	무학	20	(6.7)	
	서귀포시	58	(19.3)		초졸	39	(13.0)	
연령	19~29세	65	(21.7)		중졸	33	(11.0)	
	30~39세	46	(15.3)		고졸	146	(48.7)	
	40~49세	86	(28.7)		전문대졸	19	(6.3)	
	50~59세	71	(23.7)		4년제졸	30	(10.0)	
	60~69세	19	(6.3)		대학원졸	4	(1.3)	
	70세이상	13	(4.3)		기타	9	(3.0)	
장애 유형	지체	78	(26.0)		혼인 상태	미혼	124	(41.3)
	뇌병변	39	(13.0)			기혼	121	(40.3)
	시각	38	(12.7)	이혼		26	(8.7)	
	청각언어	34	(11.3)	사별		19	(6.3)	
	내부기관	10	(3.3)	별거		1	(0.3)	
	지적	84	(28.0)	기타		9	(3.0)	
	자폐성	4	(1.3)	가구 소득		50만원 미만	47	(15.7)
	정신	13	(4.3)		50~99만원	58	(19.3)	
장애 등급	1급	146	(48.7)		100~149만원	76	(25.3)	
	2급	115	(38.3)		150~199만원	34	(11.3)	
	3급	39	(13.0)		200~249만원	34	(11.3)	
장애 원인	선천적	108	(36.0)		250~299만원	17	(5.7)	
	질환	147	(49.0)		300만원이상	32	(10.7)	
	사고	45	(15.0)		무응답	2	(0.7)	
수급자 여부	비수급자	176	(58.7)	응답 유형	본인응답	234	(78.0)	
	수급자	124	(41.3)		대리응답	66	(22.0)	

- 지역별로 제주시가 80.7%, 서귀포시 19.3%. 제주시가 다소 과표집 되었음⁴⁾
- 연령별로는 40대(40~49세) 28.7%, 50대(50~59세) 23.7%, 20대(19~29세)가 21.7%, 30대(30~39세)가 15.3%, 60대(60~69세)가 6.3%, 70대 이상이 4.3% 순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여성중증장애인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대, 30대, 40대를 중심으로 표집하였음
-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가 28.0%, 지체장애 26.0%, 뇌병변장애 13.0%, 시각장애 12.7%, 청각언어장애 11.3%, 정신장애 4.3%, 내부기관장애 3.3%, 자폐성장애 1.3% 순임
- 장애등급은 1급 48.7%, 2급 38.3%, 중복3급 13.0% 순임
- 장애발생 원인으로는 후천적 원인이 64.0%, 선천적 원인 36.0%임. 후천적 원인은 사고(15.0%)보다 질환(49.0%)이 더 많음
- 학력별로 고졸이 48.7%, 초졸 13.0%, 중졸 11.0%, 대졸(4년제) 10.0%, 무학 6.7%, 전문대졸 6.3%, 기타 3.0%, 대학원 졸 1.3%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149만원이 25.3%, 50~99만원 19.3%, 50만원 미만 15.7%, 150~199만원과 200~249만원이 각각 11.3%, 300만원 이상 10.7%, 250~299만원 5.7% 순임
- 혼인유형별로 미혼이 41.3%, 기혼 40.3, 이혼 8.7%, 사별 6.3%, 기타 3.0%, 별거 0.3%순임. 결혼 유무별로는 결혼 한 응답자가 58.7%임
- 수급여부별로 비수급자 58.7%, 수급자 41.3%임. 수급자의 수급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수급자가 31.3%, 조건부수급자 6.7%, 의료·교육·특례수급자 3.3% 순임
- 본 조사에서는 본인응답이 78.0%이며, 대리응답이 22.0%임

4) 2013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제주지역 등록 중증장애인(1급과 2급)은 제주시 5,409명, 서귀포시 2,223명임(제주특별자치도, 2014)

나. 응답자의 가족 특성

- 본인 외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은 ‘없음’이 57.0%, ‘배우자’ 19.5%, ‘형제·자매·친척 등’ 8.7%, ‘자녀’ 7.4%, ‘(시)부모’ 6.5%, ‘기타’ 0.6%, ‘(시)조부모’ 0.3%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53.0%가 자녀가 있으며, 47.0%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수는 2명이 51.3%, 1명 22.8%, 3명 19.6%, 4명 3.8%, 5명 2.5% 순으로 나타남

〈표 4-6〉 응답자의 가족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본인 외 등록 장애인 가족 수 (중복응답)	전체	323	(100.0)
	배우자	63	(19.5)
	자녀	24	(7.4)
	(시)부모	21	(6.5)
	(시)조부모	1	(0.3)
	형제·자매·친척 등	28	(8.7)
	기타	2	(0.6)
	없음	184	(57.0)
자녀유무	전체	300	(100.0)
	있음	159	(53.0)
	없음	141	(47.0)
자녀수	전체	158	(100.0)
	1명	36	(22.8)
	2명	81	(51.3)
	3명	31	(19.6)
	4명	6	(3.8)
	5명	4	(2.5)

3. 가족생활

가. 혼인

1) 장애유형별 혼인상태

- 여성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장애유형별로 <표 4-7>에서 살펴본 결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자의 경우 미혼이 각각 76.2%, 100.0%,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내부기관장애자의 경우는 기혼이 각각 60.3%, 48.7%, 52.6%, 44.1%,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응답자들 중 신체장애인(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내부기관)들은 기혼이 많았으며,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들은 미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 장애유형별 혼인상태

구분	미혼	기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계	χ ²
전체	124(41.3)	121(40.3)	26(8.7)	19(6.3)	1(0.3)	9(3.0)	300(100.0)	
장애 유형	지체	13(16.7)	47(60.3)	9(11.5)	5(6.4)	0(0.0)	4(5.1)	109.04***
	뇌병변	16(41.0)	19(48.7)	3(7.7)	1(2.6)	0(0.0)	0(0.0)	
	시각	6(15.8)	20(52.6)	6(15.8)	5(13.2)	0(0.0)	1(2.6)	
	청각언어	9(26.5)	15(44.1)	4(11.8)	5(14.7)	0(0.0)	1(2.9)	
	내부기관	2(20.0)	4(40.0)	2(20.0)	2(20.0)	0(0.0)	0(0.0)	
	지적	64(76.2)	14(16.7)	1(1.2)	1(1.2)	1(1.2)	3(3.6)	
	자폐성	4(100.0)	0(0.0)	0(0.0)	0(0.0)	0(0.0)	0(0.0)	
	정신	10(76.9)	2(15.4)	1(7.7)	0(0.0)	0(0.0)	0(0.0)	

***p<.001

2) 장애 결혼 계획

□ 결혼하지 않은 이유

- 미혼자의 32.8%는 ‘건강 또는 장애로 인해 결혼하지 않았다’가 가장 많았음. ‘결혼생각이 없다’ 25.9%,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19.0%,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2.1%,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여’와 ‘기타’가 각각 3.4%, ‘가족 등 주위의 반대’ 2.6%,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없어서’ 0.9% 순임
-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38.5%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 뇌병변·시각·내부기관·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는 각각 35.7%, 40.0%, 50.0%, 31.7%, 66.7%, 50.0%가 ‘건강 또는 장애로 인해’, 청각언어장애인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가 44.4%로 가장 많았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표 4-8> 결혼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음	결혼 생각이 없음	가족 등 주위의 반대	건강 또는 장애로 인해	직장생활 병행할 수 없어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경제적 여유롭지 못하여	기타	계	χ ²
전체	14(12.1)	30(25.9)	3(2.6)	38(32.8)	1(0.9)	22(19.0)	4(3.4)	4(3.4)	116(100.0)	
장애 유형	지체	2(15.4)	5(38.5)	1(7.7)	3(23.1)	0(0)	1(7.7)	0(0)	1(7.7)	47.70
	뇌병변	4(28.6)	4(28.6)	0(0)	5(35.7)	0(0)	1(7.1)	0(0)	0(0)	
	시각	0(0)	1(20.0)	0(0)	2(40.0)	0(0)	1(20.0)	1(20.0)	0(0)	
	청각언어	0(0)	1(11.1)	0(0)	1(11.1)	1(11.1)	4(44.4)	1(11.1)	1(11.1)	
	내부기관	0(0)	1(50.0)	0(0)	1(50.0)	0(0)	0(0)	0(0)	0(0)	
	지적	6(10.0)	16(26.7)	2(3.3)	19(31.7)	0(0)	14(23.3)	2(3.3)	1(1.7)	
	자폐성	0(0)	0(0)	0(0)	2(66.7)	0(0)	1(33.3)	0(0)	0(0)	
	정신	2(20.0)	2(20.0)	0(0)	5(50.0)	0(0)	0(0)	0(0)	1(10.0)	

□ 장래 결혼할 의사

- 분석결과 64.0%는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 36.0%는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연령이 낮을수록 '장래에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유형별로는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미혼이 가장 많음
- 여성중증장애인 중 미혼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9〉 향후 결혼 의향

(단위: 명, %)

구분		의향이 있다	의향이 없다	계	χ ²
전체		59(36.0)	105(64.0)	164(100.0)	
연령	19~29세	31(50.8)	30(49.2)	61(100.0)	17.07**
	30~39세	13(43.3)	17(56.7)	30(100.0)	
	40~49세	9(26.5)	25(73.5)	34(100.0)	
	50~59세	4(16.0)	21(84.0)	25(100.0)	
	60~69세	1(14.3)	6(85.7)	7(100.0)	
	70세이상	1(14.3)	6(85.7)	7(100.0)	
학력	무학	1(10.0)	9(90.0)	10(100.0)	15.29
	초졸	2(12.5)	14(87.5)	16(100.0)	
	중졸	6(30.0)	14(70.0)	20(100.0)	
	고졸	35(39.8)	53(60.2)	88(100.0)	
	전문대졸	7(63.6)	4(36.4)	11(100.0)	
	4년제졸	6(46.2)	7(53.8)	13(100.0)	
	대학원졸	2(66.7)	1(33.3)	3(100.0)	
	기타	0(0)	3(100.0)	3(100.0)	
혼인 유형	미혼	51(42.5)	69(57.5)	120(100.0)	13.03**
	기혼	0(0)	0(0)	0(0)	
	이혼	6(31.6)	13(68.4)	19(100.0)	
	사별	1(5.6)	17(94.4)	18(100.0)	
	별거	0(0)	0(0)	0(0)	
	기타	0(0)	6(100.0)	6(100.0)	

**p<.01

나. 임신·출산

□ 임신 또는 출산 경험

- 54.7%가 임신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 80.8%가 임신·출산경험이 있었으며, 내부기관장애인도 80.0%, 시각장애인 78.9%, 청각언어장애인 64.7%, 뇌병변장애인 51.3%, 정신장애인 23.1%, 지적장애인 21.4%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자폐성 장애인은 미혼으로 임신·출산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유형별로 기혼의 94.2%가 임신·출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 임신 또는 출산 경험

(단위: 명, %)

구분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계	χ ²
전체		164(54.7)	136(45.3)	300(100.0)	
장애 유형	지체	63(80.8)	15(19.2)	78(100.0)	82.14***
	뇌병변	20(51.3)	19(48.7)	39(100.0)	
	시각	30(78.9)	8(21.1)	38(100.0)	
	청각언어	22(64.7)	12(35.3)	34(100.0)	
	내부기관	8(80.0)	2(20.0)	10(100.0)	
	지적	18(21.4)	66(78.6)	84(100.0)	
	자폐성	0(0)	4(100.0)	4(100.0)	
	정신	3(23.1)	10(76.9)	13(100.0)	
혼인 유형	미혼	3(2.4)	121(97.6)	124(100.0)	237.2***
	기혼	114(94.2)	7(5.8)	121(100.0)	
	이혼	21(80.8)	5(19.2)	26(100.0)	
	사별	19(100.0)	0(0)	19(100.0)	
	별거	1(100.0)	0(0)	1(100.0)	
	기타	6(66.7)	3(33.3)	9(100.0)	

***p<.001

□ 임신기간 가장 힘든 점

○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응답자 164명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한 160명을 분석한 결과, '병원비 등 경제적 비용부담'이 23.8%, '병원 다니기 어려움' 19.4%,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 18.1%, '특별히 힘든 점 없었음' 17.5%,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미비' 7.5%, '본인의 건강악화에 대한 두려움' 5.6%, '유산/낙태 경험'과 '임신·출산 관련 정보부족'이 각각 2.5%, '기타' 1.9%, '의료진의 차별'과 '가족들의 출산반대'가 각각 0.6%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 지체·뇌병변장애인은 '병원 다니기 어려움'이 각각 29.0%, 31.6%로 가장 많았음
- 시각장애인은 '병원비 등 경제적 비용부담'과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28.6%로 가장 많음
- 청각언어장애인은 '병원비 등 경제적 비용부담'이 40.9%로 가장 많음
- 내부기관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병원비 등 경제적 비용부담'과 '특별히 힘든 점 없었음'이 각각 37.5%와 22.2%임
-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병원 다니기 어려움',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미비', '임신·출산 관련 정보부족'이 각각 33.3%로 나타남

〈표 4-11〉 임신기간 가장 힘든 점

(단위: 명, %)

구분	병원비 등 경제적 비용 부담	병원 다니기 어려움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미비	의료진의 차별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본인의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유산/낙태 경험	가족들의 출산 반대	임신, 출산 관련 정보 부족	특별히 힘든점 없었음	기타	계	χ ²	
전체	38(23.8)	31(19.4)	12(7.5)	1(0.6)	29(18.1)	9(5.6)	4(2.5)	1(0.6)	4(2.5)	28(17.5)	3(1.9)	160(100.0)		
장애 유형	지체	10(16.1)	18(29.0)	7(11.3)	0(0)	14(22.6)	5(8.1)	1(1.6)	0(0)	1(1.6)	5(8.1)	1(1.6)	62(100.0)	74.30
	뇌병변	4(2.1)	6(3.6)	1(5.3)	0(0)	1(5.3)	1(5.3)	1(5.3)	0(0)	4(21.1)	0(0)	19(100.0)		
	시각	8(28.6)	4(14.3)	0(0)	0(0)	8(28.6)	1(3.6)	1(3.6)	0(0)	5(17.9)	1(3.6)	28(100.0)		
	청각언어	9(40.9)	0(0)	2(9.1)	1(4.5)	1(4.5)	1(4.5)	0(0)	0(0)	1(4.5)	7(31.8)	0(0)	22(100.0)	

구분	병원비 등 경제적 비용 부담	병원 다니기 어려움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미비	의료진의 차별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본인의 건강 약화에 대한 두려움	유산/낙태 경험	가족들의 출산 반대	임신, 출산 관련 정보 부족	특별히 힘든점 없었음	기타	계	χ ²
내부기관	3(37.5)	0(0)	0(0)	0(0)	2(25.0)	0(0)	0(0)	0(0)	0(0)	3(37.5)	0(0)	8(100.0)	
지적	4(22.2)	2(11.1)	1(5.6)	0(0)	3(16.7)	1(5.6)	1(5.6)	0(0)	1(5.6)	4(22.2)	1(5.6)	18(100.0)	
정신	0(0)	1(33.3)	1(33.3)	0(0)	0(0)	0(0)	0(0)	0(0)	1(33.3)	0(0)	0(0)	3(100.0)	

□ 출산 후 산후 조력자

-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응답자 164명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162명을 분석한 결과, 출산 후 산후조력자로 46.3%가 친정식구라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혼자 17.3%, 남편 16.0%, 시댁식구 10.5%, 산후조리원 4.3%, 산모·신생아 산후 도우미 3.7%, 활동보조인 1.2%, 기타 0.6%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장애인은 친정식구가 49.2%, 55.0%, 41.4%, 50.0%, 29.4%, 66.7%로 가장 많고,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는 친정식구와 혼자도 각각 37.5%로 가장 많았음
- 조사 결과 가족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2> 출산 후 산후조리 조력자

(단위: 명, %)

구분	남편	친정 식구	시댁 식구	산후 조리원	산모·신생아 산후 도우미	활동 보조인	혼자	기타	계	χ ²	
전체	26(16.0)	75(46.3)	17(10.5)	7(4.3)	6(3.7)	2(1.2)	28(17.3)	1(6)	162(100.0)		
장애 유형	지체	10(15.9)	31(49.2)	5(7.9)	6(9.5)	2(3.2)	0(0)	9(14.3)	0(0)	63(100.0)	60.53*
	뇌병변	4(20.0)	11(55.0)	2(10.0)	0(0)	0(0)	0(0)	3(15.0)	0(0)	20(100.0)	
	시각	4(13.8)	12(41.4)	4(13.8)	0(0)	1(3.4)	0(0)	8(27.6)	0(0)	29(100.0)	
	청각언어	2(9.1)	11(50.0)	3(13.6)	1(4.5)	1(4.5)	1(4.5)	3(13.6)	0(0)	22(100.0)	
	내부기관	1(12.5)	3(37.5)	1(12.5)	0(0)	0(0)	0(0)	3(37.5)	0(0)	8(100.0)	
	지적	5(29.4)	5(29.4)	2(11.8)	0(0)	2(11.8)	0(0)	2(11.8)	1(5.9)	17(100.0)	
정신	0(0)	2(66.7)	0(0)	0(0)	0(0)	1(33.3)	0(0)	0(0)	3(100.0)		

*p<.05

□ 출산 후 산후조리 만족도

○ 출산 후 산후조리기간에 대한 충분여부를 살펴본 결과 충분했다가 29.0%, 충분하지 못했다가 46.9%임

- 조사척도는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그렇다)를 사용함(<표 4-13>).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2.65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정신장애인이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부기관장애인이 2.38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4-13> 출산 후 산후조리 충분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전체	37(22.8)	39(24.1)	39(24.1)	37(22.8)	10(6.2)	162(100.0)	2.65	
장애 유형	지체	16(25.4)	17(27.0)	14(22.2)	12(19.0)	63(100.0)	2.54	1.72
	뇌병변	3(15.0)	1(5.0)	7(35.0)	5(25.0)	20(100.0)	3.30	
	시각	8(27.6)	9(31.0)	6(20.7)	4(13.8)	29(100.0)	2.41	
	청각언어	4(18.2)	8(36.4)	4(18.2)	6(27.3)	22(100.0)	2.55	
	내부기관	3(37.5)	1(12.5)	2(25.0)	2(25.0)	8(100.0)	2.38	
	지적	3(17.6)	3(17.6)	5(29.4)	6(35.3)	17(100.0)	2.82	
	정신	0(0)	0(0)	1(33.3)	2(66.7)	3(100.0)	3.67	

- 2012년 「제주 중증장애인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여성들의 산후조리충분여부가 5점 기준으로 2.5점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2.65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제주 여성 중증장애인의 산후조리기간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 자녀양육

□ 미성년 자녀양육실태

-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 100명에게 주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63.0%가 본인이라고 응답함. 그 다음이 자녀의 조부모 12.0%, 활동보조인 9.0%, 배우자 8.0%, 기타 친인척과 기타가 각각 4.0% 순임
-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경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본인이 가장 많이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본인이 돌보는 경우가 65.9%로 나타남. 그 다음이 자녀의 조부모와 활동보조인으로 각각 12.2%, 배우자는 2.4%로 나타남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미흡함을 알 수 있음

〈표 4-14〉 미성년 자녀 돌보는 사람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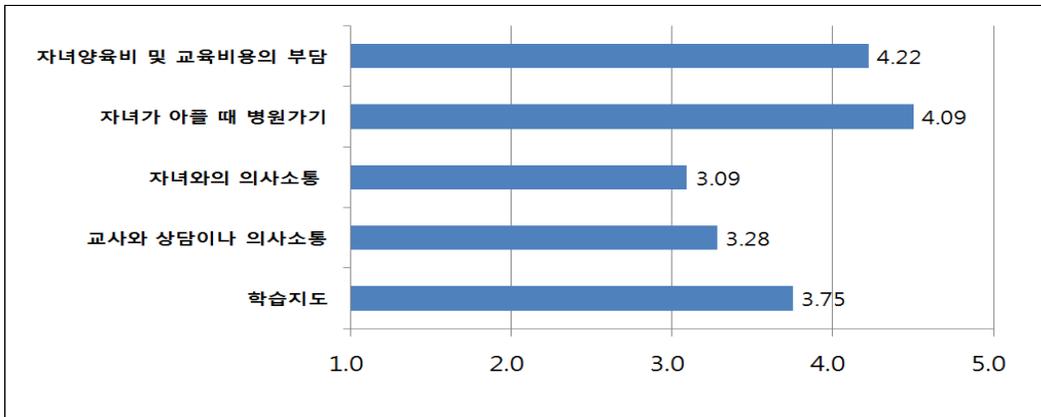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의 조부모	기타 친인척	활동 보조인	기타	계	χ ²	
전체	63(63.0)	8(8.0)	12(12.0)	4(4.0)	9(9.0)	4(4.0)	100(100.0)		
장애 유형	지체	29(67.4)	2(4.7)	4(9.3)	3(7.0)	3(7.0)	43(100.0)	29.15	
	뇌병변	7(63.6)	2(18.2)	1(9.1)	0(0)	1(9.1)	11(100.0)		
	시각	7(63.6)	0(0)	1(9.1)	0(0)	3(27.3)	11(100.0)		
	청각언어	10(76.9)	0(0)	3(23.1)	0(0)	0(0)	13(100.0)		
	내부기관	2(50.0)	1(25.0)	0(0)	0(0)	0(0)	1(25.0)		4(100.0)
	지적	6(40.0)	3(20.0)	2(13.3)	1(6.7)	2(13.3)	1(6.7)		15(100.0)
	정신	2(66.7)	0(0)	1(33.3)	0(0)	0(0)	0(0)		3(100.0)
취업 여부	취업	27(65.9)	1(2.4)	5(12.2)	1(2.4)	5(12.2)	2(4.9)	41(100.0)	4.12
	미취업	36(61.0)	7(11.9)	7(11.9)	3(5.1)	4(6.8)	2(3.4)	59(100.0)	

□ 자녀양육 시 어려움 점

- 만 18세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100명)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98명에게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의 부담’,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교사와 상담이나 의사소통’, ‘학습지도’로 나누어 자녀양육 시 어려움을 살펴보았음
- 조사척도는 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다 ~ 5 매우 어렵다)를 사용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어려움을 살펴볼 때 응답자들이 자녀양육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의 부담’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 4.09, ‘학습지도’ 3.75, ‘교사와 상담이나 의사소통’ 3.28, ‘자녀와의 의사소통’ 3.09순으로 나타남

<그림 41> 자녀양육 시 어려운 점

(단위: 점)



- 각 문항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의 부담

- 조사결과,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4.22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자녀수를 비교한 결과 장애유형, 장애등급, 월평균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표 4-15> 참조)

-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의 부담’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청각언어 장애인이 4.38, 지체 장애인 4.36, 지적 장애인 4.33으로 평균 4.22보다 높게 나타남
- 장애등급에서는 2급(4.39)이 1급(4.27)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월평균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50만원 미만(4.42)보다 150~199만원인 경우가 4.53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4-15>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렵다	매우 어렵다	계	평균	F
전체		1(1.0)	1(1.0)	21(21.4)	27(27.6)	48(49.0)	98(100.0)	4.22	
장애 유형	지체	0(0)	0(0)	8(19.0)	11(26.2)	23(54.8)	42(100.0)	4.36	1.36
	뇌병변	0(0)	0(0)	3(27.3)	3(27.3)	5(45.5)	11(100.0)	4.18	
	시각	1(10.0)	0(0)	4(40.0)	2(20.0)	3(30.0)	10(100.0)	3.60	
	청각언어	0(0)	0(0)	1(7.7)	6(46.2)	6(46.2)	13(100.0)	4.38	
	내부기관	0(0)	0(0)	2(50.0)	0(0)	2(50.0)	4(100.0)	4.00	
	지적	0(0)	1(6.7)	2(13.3)	3(20.0)	9(60.0)	15(100.0)	4.33	
	정신	0(0)	0(0)	1(33.3)	2(66.7)	0(0)	3(100.0)	3.67	
장애 등급	1급	0(0)	0(0)	9(22.0)	12(29.3)	20(48.8)	41(100.0)	4.27	5.00**
	2급	0(0)	0(0)	9(20.5)	9(20.5)	26(59.1)	44(100.0)	4.39	
	3급	1(7.7)	1(7.7)	3(23.1)	6(46.2)	2(15.4)	13(100.0)	3.54	
월평균 가구 소득	50만원 미만	0(0)	0(0)	2(16.7)	3(25.0)	7(58.3)	12(100.0)	4.42	2.83*
	50~99만원	0(0)	0(0)	3(13.0)	5(21.7)	15(65.2)	23(100.0)	4.52	
	100~149만원	0(0)	1(3.7)	6(22.2)	9(33.3)	11(40.7)	27(100.0)	4.11	
	150~199만원	0(0)	0(0)	2(13.3)	3(20.0)	10(66.7)	15(100.0)	4.53	
	200~249만원	0(0)	0(0)	3(50.0)	1(16.7)	2(33.3)	6(100.0)	3.83	
	250~299만원	0(0)	0(0)	1(25.0)	2(50.0)	1(25.0)	4(100.0)	4.00	
	300만원이상	1(10.0)	0(0)	4(40.0)	4(40.0)	1(10.0)	10(100.0)	3.40	

*p<.05, **p<.01

□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의 어려움

-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의 장애유형별 어려움정도는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 장애인이 4.45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장애등급에서는 1급이 4.34로 2급(4.07)과 3급(3.38)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표 4-16〉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렵다	매우 어렵다	계	평균	F	
전체	0(0)	6(6.2)	18(18.6)	34(35.1)	39(40.2)	97(100.0)	4.09		
장애 유형	지체	0(0)	1(2.4)	6(14.6)	16(39.0)	18(43.9)	41(100.0)	4.24	1.21
	뇌병변	0(0)	0(0)	0(0)	6(54.5)	5(45.5)	11(100.0)	4.45	
	시각	0(0)	1(10.0)	3(30.0)	2(20.0)	4(40.0)	10(100.0)	3.90	
	청각언어	0(0)	0(0)	3(23.1)	6(46.2)	4(30.8)	13(100.0)	4.08	
	내부기관	0(0)	1(25.0)	1(25.0)	1(25.0)	1(25.0)	4(100.0)	3.50	
	지적	0(0)	3(20.0)	3(20.0)	3(20.0)	6(40.0)	15(100.0)	3.80	
	정신	0(0)	0(0)	2(66.7)	0(0)	1(33.3)	3(100.0)	3.67	
장애 등급	1급	0(0)	1(2.4)	6(14.6)	12(29.3)	22(53.7)	41(100.0)	4.34	6.00**
	2급	0(0)	1(2.3)	10(23.3)	17(39.5)	15(34.9)	43(100.0)	4.07	
	3급	0(0)	4(30.8)	2(15.4)	5(38.5)	2(15.4)	13(100.0)	3.38	

**p<.01

□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청각언어장애인이 3.54로 다른 장애 유형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7〉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렵다	매우 어렵다	계	평균	F	
전체	13(13.4)	16(16.5)	29(29.9)	27(27.8)	12(12.4)	97(100.0)	3.09		
장애 유형	지체	8(19.5)	3(7.3)	14(34.1)	12(29.3)	4(9.8)	41(100.0)	3.02	0.95
	뇌병변	1(9.1)	2(18.2)	3(27.3)	3(27.3)	2(18.2)	11(100.0)	3.27	
	시각	2(20.0)	2(20.0)	2(20.0)	3(30.0)	1(10.0)	10(100.0)	2.90	
	청각언어	0(0)	3(23.1)	3(23.1)	4(30.8)	3(23.1)	13(100.0)	3.54	
	내부기관	1(25.0)	2(50.0)	1(25.0)	0(0)	0(0)	4(100.0)	2.00	
	지적	1(6.7)	4(26.7)	4(26.7)	4(26.7)	2(13.3)	15(100.0)	3.13	
	정신	0(0)	0(0)	2(66.7)	1(33.3)	0(0)	3(100.0)	3.33	

□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 ‘교사와 상담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정도도 청각언어장애인이 3.77로 다른 장애 유형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8〉 교사와 상담이나 의사소통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렵다	매우 어렵다	계	평균	F	
전체	8(8.2)	13(13.4)	36(37.1)	24(24.7)	16(16.5)	97(100.0)	3.28		
장애 유형	지체	5(12.2)	4(9.8)	17(41.5)	11(26.8)	4(9.8)	41(100.0)	3.12	1.04
	뇌병변	0(0)	2(18.2)	4(36.4)	2(18.2)	3(27.3)	11(100.0)	3.55	
	시각	1(10.0)	1(10.0)	5(50.0)	2(20.0)	1(10.0)	10(100.0)	3.10	
	청각언어	0(0)	1(7.7)	4(30.8)	5(38.5)	3(23.1)	13(100.0)	3.77	
	내부기관	1(25.0)	2(50.0)	0(0)	0(0)	1(25.0)	4(100.0)	2.50	
	지적	1(6.7)	3(20.0)	5(33.3)	2(13.3)	4(26.7)	15(100.0)	3.33	
	정신	0(0)	0(0)	1(33.3)	2(66.7)	0(0)	3(100.0)	3.67	

□ 학습지도의 어려움

- ‘학습지도’어려움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지적 장애인이 4.13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9〉 학습지도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렵다	매우 어렵다	계	평균	F	
전체	4(4.1)	12(12.4)	20(20.6)	29(29.9)	32(33.0)	97(100.0)	3.75		
장애 유형	지체	3(7.3)	7(17.1)	9(22.0)	13(31.7)	9(22.0)	41(100.0)	3.44	0.99
	뇌병변	0(0)	1(9.1)	3(27.3)	3(27.3)	4(36.4)	11(100.0)	3.91	
	시각	0(0)	1(10.0)	3(30.0)	2(20.0)	4(40.0)	10(100.0)	3.90	
	청각언어	0(0)	1(7.7)	3(23.1)	5(38.5)	4(30.8)	13(100.0)	3.92	
	내부기관	1(25.0)	0(0)	0(0)	1(25.0)	2(50.0)	4(100.0)	3.75	
	지적	0(0)	2(13.3)	2(13.3)	3(20.0)	8(53.3)	15(100.0)	4.13	
	정신	0(0)	0(0)	0(0)	2(66.7)	1(33.3)	3(100.0)	4.33	

라. 혼인 · 출산 · 양육 지원정책욕구

1) 임신·출산지원 정책욕구

- 전체 응답자(300명)중 무응답 8명을 제외한 292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 중증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의료기관내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산후조리 관련 비용지원확대’가 각각 1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전문 의료기관지정’ 16.4%,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 및 지원 정보제공’ 13.4%, ‘산후도우미지원확대’ 12.3%, ‘산전비용지원’ 8.9%, ‘장애인 출산장려금 확대’ 6.5%, ‘기타’ 4.1%, ‘산후조리원내 장애인 편의시설확충’과 ‘산후도우미 교육 강화’ 각각 2.4% 순으로 나타남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임신·출산지원 정책욕구를 비교한 결과 수급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표 4-20> 참조)

- 수급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비수급자는 '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전문 의료기관지정'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19.9%), 수급자는 '산후조리 관련 비용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원했음(15.7%)

<표 4-20>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단위: 명, %)

구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 및 지원 정보 제공	의료기관내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 전문 의료기관 지정	산전 비용 지원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내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산후도우미 교육 강화	장애인 출산 장려금 확대	기타	계	χ ²
전체	39(13.4)	49(16.8)	48(16.4)	26(8.9)	49(16.8)	7(2.4)	36(12.3)	7(2.4)	19(6.5)	12(4.1)	292(100.0)	
수급자 여부	비수급자	21(12.3)	31(18.1)	34(19.9)	10(5.8)	30(17.5)	2(1.2)	26(15.2)	4(2.3)	8(4.7)	5(2.9)	171(100.0)
	수급자	18(14.9)	18(14.9)	14(11.6)	16(13.2)	19(15.7)	5(4.1)	10(8.3)	3(2.5)	11(9.1)	7(5.8)	121(100.0)

*p<.05

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정책욕구

○ 전체 응답자(300명)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298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 중증 장애인이 양육 및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43.0%)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육아지원' 24.8%,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 지원' 8.4%, '학습지원' 7.7%, '장애인에 대한 학교나 보육시설의 인식개선' 6.0, '자녀양육 및 교육상담 서비스' 4.4%,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확충' 3.4%, '장애 부모 자녀들의 모임활성화' 1.0%, '이동보조기구 제공'과 '기타'가 각각 0.7%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자폐성 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경우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육아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대리응답이 100%로 응답자의 관계도 모두 부모임. 부모들은 자폐아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지원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1〉 자녀양육 및 교육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육아 지원	학습 지원	이동 보조 기구 제공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 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학교나 보육 시설의 인식 개선	장애 부모 자녀들의 모임 활성화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기타	계	χ ²	
전체	128(43.0)	74(24.8)	23(7.7)	2(7)	25(8.4)	13(4.4)	18(6.0)	3(1.0)	10(3.4)	2(7)	298(100.0)		
장애 유형	지체	40(51.9)	21(27.3)	6(7.8)	1(1.3)	3(3.9)	2(2.6)	4(5.2)	0(0)	0(0)	77(100.0)	80.45	
	뇌병변	18(46.2)	12(30.8)	1(2.6)	0(0)	6(15.4)	1(2.6)	1(2.6)	0(0)	0(0)	39(100.0)		
	시각	14(37.8)	7(18.9)	8(21.6)	0(0)	4(10.8)	1(2.7)	2(5.4)	0(0)	1(2.7)	0(0)		37(100.0)
	청각언어	16(47.1)	5(14.7)	1(2.9)	1(2.9)	4(11.8)	2(5.9)	4(11.8)	1(2.9)	0(0)	0(0)		34(100.0)
	내부기관	5(50.0)	2(20.0)	1(10.0)	0(0)	1(10.0)	0(0)	1(10.0)	0(0)	0(0)	0(0)		10(100.0)
	지적	28(33.3)	23(27.4)	6(7.1)	0(0)	4(4.8)	6(7.1)	5(6.0)	1(1.2)	9(10.7)	2(2.4)		84(100.0)
	자폐성	0(0)	3(75.0)	0(0)	0(0)	1(25.0)	0(0)	0(0)	0(0)	0(0)	0(0)		4(100.0)
	정신	7(53.8)	1(7.7)	0(0)	0(0)	2(15.4)	1(7.7)	1(7.7)	1(7.7)	0(0)	0(0)		13(100.0)

4. 경제생활

- 제주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생활을 취업현황, 근무현황, 소득현황, 취업육구 및 정책육구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가. 취업현황

1) 장애유형과 등급별 취업현황

- 제주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여부를 살펴본 결과,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59.3%,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40.7%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취업여부를 살펴본 결과 청각장애인들이 50.0%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지체장애인 44.9%, 시각장애인 44.7%, 지적장애인 41.7%, 정신장애인 38.5%, 뇌병변장애인 28.2%, 내부기관장애인 20.0% 순임. 그러나 장애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장애등급별로는 3급이 64.1%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급 47.0%, 1급 29.5%로 등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등급이 높을수록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22〉 장애유형과 등급별 취업여부

(단위: 명, %)

구분		일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다	계	χ^2
전체		122(40.7)	178(59.3)	300(100.0)	
장애 유형	지체	35(44.9)	43(55.1)	78(100.0)	9.14
	뇌병변	11(28.2)	28(71.8)	39(100.0)	
	시각	17(44.7)	21(55.3)	38(100.0)	
	청각언어	17(50.0)	17(50.0)	3(100.0)	
	내부기관	2(20.0)	8(80.0)	10(100.0)	
	지적	35(41.7)	49(58.3)	84(100.0)	
장애 등급	차폐성	0(0)	4(100.0)	4(100.0)	18.37***
	정신	5(38.5)	8(61.5)	13(100.0)	
	1급	43(29.5)	103(70.5)	146(100.0)	
	2급	54(47.0)	61(53.0)	115(100.0)	
	3급	25(64.1)	14(35.9)	39(100.0)	

***p<.001

2) 학력별 취업현황

- 학력별로 취업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졸의 경우 75.0%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4년제 졸 66.7%, 고졸 44.5%, 전문대 졸 42.1%, 중졸 36.4%, 초졸 17.9%, 무학 15.0% 순임
- 이를 통해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력자본이 취업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표 4-23> 학력별 취업여부

(단위: 명, %)

구분		일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다	계	χ^2
전체		122(40.7)	178(59.3)	300(100.0)	
학력	무학	3(15.0)	17(85.0)	20(100.0)	25.38***
	초졸	7(17.9)	32(82.1)	39(100.0)	
	중졸	12(36.4)	21(63.6)	33(100.0)	
	고졸	65(44.5)	81(55.5)	146(100.0)	
	전문대졸	8(42.1)	11(57.9)	19(100.0)	
	4년제졸	20(66.7)	10(33.3)	30(100.0)	
	대학원졸	3(75.0)	1(25.0)	4(100.0)	
	기타	4(44.4)	5(55.6)	9(100.0)	

***p<.001

나. 근무현황

1) 장애유형과 등급별 일하는 곳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도내 여성 중증장애인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7.9%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

그 다음이 24.6%로 일반회사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0%, 자영업 15.6%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가장 고용이 낮은 일자리는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의 경우 2.5%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더불어 가장 응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관련 단체(34.3%)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인은 일반회사(45.5%), 시각장애인은 자영업(29.4%), 청각언어장애인은 장애인관련단체(41.2%), 내부기관장애인은 자영업(50.0%)과 기타(50.0%), 지적장애인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42.9%),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40.0%)과 장애인관련단체(40.0%)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유형별로 일하는 곳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애등급별 일하는 곳을 살펴본 결과, 1급의 경우 자영업(25.6%)과 일반회사(25.6%)가 가장 많았으며, 2급의 경우는 장애인관련단체가 24.1%로 가장 많았음. 3급도 장애인관련단체가 52.0%로 가장 많았음. 조사결과 장애등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장애유형과 등급별 일하는 곳(취업처)

(단위: 명, %)

구분	자영업 (본인이 자영업자)	일반 회사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관련 단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공공 근로	기타	계	χ^2	
전체	19(15.6)	30(24.6)	3(2.5)	22(18.0)	34(27.9)	3(2.5)	4(3.3)	7(5.7)	122(100.0)		
장애 유형	지체	10(28.6)	8(22.9)	2(5.7)	2(5.7)	12(34.3)	1(2.9)	0(0)	35(100.0)	73.63**	
	뇌병변	1(9.1)	5(45.5)	0(0)	1(9.1)	3(27.3)	0(0)	1(9.1)	11(100.0)		
	시각	5(29.4)	3(17.6)	1(5.9)	1(5.9)	3(17.6)	2(11.8)	2(11.8)	17(100.0)		
	청각언어	2(11.8)	4(23.5)	0(0)	1(5.9)	7(41.2)	0(0)	0(0)	3(17.6)		17(100.0)
	내부기관	1(50.0)	0(0)	0(0)	0(0)	0(0)	0(0)	0(0)	1(50.0)		2(100.0)
	지적	0(0)	9(25.7)	0(0)	15(42.9)	7(20.0)	0(0)	2(5.7)	2(5.7)		35(100.0)
	정신	0(0)	1(20.0)	0(0)	2(40.0)	2(40.0)	0(0)	0(0)	0(0)		5(100.0)

구분		자영업 (본인이 자영업자)	일반 회사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관련 단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공공 근로	기타	계	χ ²
장애 등급	1급	11(25.6)	11(25.6)	1(2.3)	6(14.0)	8(18.6)	3(7.0)	2(4.7)	1(2.3)	43(100.0)	25.96*
	2급	7(13.0)	17(31.5)	1(1.9)	11(20.4)	13(24.1)	0(0)	2(3.7)	3(5.6)	54(100.0)	
	3급	1(4.0)	2(8.0)	1(4.0)	5(20.0)	13(52.0)	0(0)	0(0)	3(12.0)	25(100.0)	

*p<.05, **p<.01

2) 학력별 근무 처

-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대학원졸의 경우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 정부 또는 정부 관련 기관에서 66.7%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년제졸과 전문대졸의 경우는 장애인관련단체에서 각각 65.0%와 50.0%로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졸과 중졸의 경우 일반회사가 각각 30.8%와 41.7%로 나타났으며, 초졸과 무학은 자영업과 장애인관련단체에서 각각 28.6%와 33.3%로 나타났음
- 조사결과 여성 중증장애인의 일하는 곳은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5> 학력별 일하는 곳(취업처)

(단위: 명, %)

구분		자영업 (본인이 자영업자)	일반 회사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관련 단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공공 근로	기타	계	χ ²
전체		19(15.6)	30(24.6)	3(2.5)	22(18.0)	34(27.9)	3(2.5)	4(3.3)	7(5.7)	122(100.0)	
학력	무학	1(33.3)	1(33.3)	0(0)	0(0)	1(33.3)	0(0)	0(0)	0(0)	3(100.0)	95.08***
	초졸	2(28.6)	0(0)	0(0)	1(14.3)	2(28.6)	0(0)	1(14.3)	1(14.3)	7(100.0)	
	중졸	1(8.3)	5(41.7)	0(0)	2(16.7)	2(16.7)	0(0)	1(8.3)	1(8.3)	12(100.0)	
	고졸	10(15.4)	20(30.8)	1(1.5)	16(24.6)	11(16.9)	3(4.6)	2(3.1)	2(3.1)	65(100.0)	
	전문대졸	1(12.5)	1(12.5)	0(0)	1(12.5)	4(50.0)	0(0)	0(0)	1(12.5)	8(100.0)	
	4년제졸	3(15.0)	2(10.0)	0(0)	1(5.0)	13(65.0)	0(0)	0(0)	1(5.0)	20(100.0)	
	대학원졸	0(0)	1(33.3)	2(66.7)	0(0)	0(0)	0(0)	0(0)	0(0)	3(100.0)	
	기타	1(25.0)	0(0)	0(0)	1(25.0)	1(25.0)	0(0)	0(0)	1(25.0)	4(100.0)	

***p<.001

3) 장애유형과 등급별 근무기간

- 응답자의 직장 내 근무기간을 살펴 본 결과 평균 6년 4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6〉 장애 유형과 장애 등급별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단위: 년)

구분		평균
전체		6.4
장애 유형	지체	9.4
	뇌병변	2.4
	시각	8.0
	청각언어	4.1
	내부기관	5.0
	지적	4.3
	정신	9.7
장애 등급	1급	7.5
	2급	5.3
	3급	6.6

- 장애유형별로 정신장애인이 평균 9년 7개월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인이 평균 2년 4개월로 가장 짧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평균 7년 5개월로 2급(5.3)과 3급(6.6)보다 더 오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결과 등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학력별 근무기간

- 학력별 근무기간을 살펴본 결과 초졸의 경우 평균 14년 3개월로 가장 오랜 근무하고 있으며, 무학의 경우는 평균 2년으로 가장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전체 평균(6.4) 보다 더 오래 근무하고 있는 학력은 4년제졸과 대학원졸이 각각 7.5와 7.7로 나타남

〈표 4-27〉 학력별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단위: 년)

구분		평균
전체		64
학력	무학	2.0
	초졸	14.3
	중졸	3.6
	고졸	6.0
	전문대졸	6.1
	4년제졸	7.5
	대학원졸	7.7
	기타	4.3

- 조사결과 초졸을 제외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음. 앞에서 제시한 <표 4-25>를 통해 초졸의 경우 다른 학력에 비해 일하는 곳이 자영업과 장애인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5) 장애유형과 등급별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일 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1.5시간으로 나타남, 주당 5일을 근무한다고 할 때, 하루 평균 4.3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장애유형별로,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내부기관장애인이 6일로 가장 길었으며, 비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주당 5일을 근무한다고 볼 때, 주당 평균 5일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장애인으로 정신장애인도 5.3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평균근무시간을 살펴볼 때, 시각장애인이 33.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정신장애인이 6.5시간으로 가장 낮았음
-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3급(4.5)보다 2급이 4.8일로 가장 높았음. 그러나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1급이 23.5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표 4-28〉 장애유형과 등급별 현 직장에서의 근무일과 근무기간

(단위: 일,시간)

구분		평균 근무일수	평균 근무시간
전체		4.6	21.5
장애 유형	지체	4.6	19.6
	뇌병변	4.1	22.0
	시각	4.5	33.1
	청각언어	4.4	21.2
	내부기관	6.0	12.0
	지적	4.7	19.5
	정신	5.3	6.5
장애 등급	1급	4.4	23.5
	2급	4.8	23.4
	3급	4.5	14.7

6) 학력별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

-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대학원졸'이 5일로 가장 길었으며, 무학이 4일로 가장 짧았음. 평균근무시간의 경우도 '대학원졸'이 40.0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이 무학 23.7시간으로 나타남. 중졸이 18.6시간으로 가장 짧았음

〈표 4-29〉 학력별 현 직장에서의 근무일과 근무기간

(단위: 일,시간)

구분		평균 근무일수	평균 근무시간
전체		4.6	21.5
학력	무학	4.0	23.7
	초졸	4.3	19.8
	중졸	4.7	18.6
	고졸	4.8	20.6
	전문대졸	4.0	21.6
	4년제졸	4.2	23.5
	대학원졸	5.0	40.0
	기타	5.0	22.0

다. 소득현황

1) 장애유형과 등급별 월 개인 소득현황

- 취업자 122명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한 116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00~149만원이 42.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만원 미만이 20.7%, 50~99만원 19.8%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40.5%로 나타남
- 월별 개인소득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우 56.3%가 100-149만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도 100-149만원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도 100-149만원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는 150-199만원이 41.2%로 가장 많았음. 내부기관 장애인은 50-99만원이 100.0%였으며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100-149만원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장애인은 50-99만원이 75.0%로 가장 많았음
- 등급별로 월 개인소득을 살펴본 결과 1급은 100-149만원이 41.0%로 가장 많았으며, 2급도 100-149만원이 42.3%로 가장 많았음. 3급의 경우는 100-149만원이 44.0%로 가장 많았음

<표 4-30> 장애유형과 등급별 월 개인 소득현황

(단위: 명, %)

구분	50만원 미만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만원이상	계	χ ²
전체	24(20.7)	23(19.8)	49(42.2)	11(9.5)	5(4.3)	2(1.7)	2(1.7)	116(100.0)	
장애유형	지체	4(12.5)	8(25.0)	18(56.3)	0(0)	2(6.3)	0(0)	0(0)	32(100.0)
	뇌병변	3(30.0)	0(0)	6(60.0)	0(0)	1(10.0)	0(0)	0(0)	10(100.0)
	시각	2(11.8)	1(5.9)	6(35.3)	3(17.6)	1(5.9)	2(11.8)	2(11.8)	17(100.0)
	청각언어	3(17.6)	2(11.8)	5(29.4)	7(41.2)	0(0)	0(0)	0(0)	17(100.0)
	내부기관	0(0)	2(100.0)	0(0)	0(0)	0(0)	0(0)	0(0)	2(100.0)
	지적	11(32.4)	7(20.6)	14(41.2)	1(2.9)	1(2.9)	0(0)	0(0)	34(100.0)
	정신	1(25.0)	3(75.0)	0(0)	0(0)	0(0)	0(0)	0(0)	4(100.0)

78.62***

구분		50만원 미만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만원이상	계	χ^2
장애 등급	1급	8(20.5)	5(12.8)	16(41.0)	5(12.8)	3(7.7)	1(2.6)	1(2.6)	39(100.0)	9.64
	2급	13(25.0)	10(19.2)	22(42.3)	5(9.6)	1(1.9)	0(0)	1(1.9)	52(100.0)	
	3급	3(12.0)	8(32.0)	11(44.0)	1(4.0)	1(4.0)	1(4.0)	0(0)	25(100.0)	

***p<.001

2) 학력별 월 개인 소득현황

○ 학력별 월 개인 소득현황을 살펴본 결과 무학의 경우 50만원 미만, 100-149만원, 150-199만원이 각각 33.3%로 나타났으며, 초졸은 50만원미만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은 100-149만원이 50.0%로 가장 많았고, 고졸은 100-149만원이 42.6%로 가장 많았음. 전문대졸은 100-149만원과 150-199만원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대졸은 100-149만원이 40.0%로 가장 많았음. 대학원졸은 100-149만원과 200-249만원, 250-299만원이 33.3%로 나타남

〈표 4-31〉 학력별 월 개인 소득현황

(단위: 명, %)

구분		50만원 미만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만원이상	계	χ^2
전체		24(20.7)	23(19.8)	49(42.2)	11(9.5)	5(4.3)	2(1.7)	2(1.7)	116(100.0)	
학력	무학	1(33.3)	0(0)	1(33.3)	1(33.3)	0(0)	0(0)	0(0)	3(100.0)	69.58**
	초졸	4(57.1)	0(0)	3(42.9)	0(0)	0(0)	0(0)	0(0)	7(100.0)	
	중졸	2(20.0)	2(20.0)	5(50.0)	1(10.0)	0(0)	0(0)	0(0)	10(100.0)	
	고졸	14(23.0)	15(24.6)	26(42.6)	3(4.9)	1(1.6)	0(0)	2(3.3)	61(100.0)	
	전문대졸	0(0)	0(0)	4(50.0)	4(50.0)	0(0)	0(0)	0(0)	8(100.0)	
	4년제졸	2(10.0)	4(20.0)	8(40.0)	2(10.0)	3(15.0)	1(5.0)	0(0)	20(100.0)	
	대학원졸	0(0)	0(0)	1(33.3)	0(0)	1(33.3)	1(33.3)	0(0)	3(100.0)	
	기타	1(25.0)	2(50.0)	1(25.0)	0(0)	0(0)	0(0)	0(0)	4(100.0)	

**p<.01

3) 장애유형과 등급별 월 가구 소득현황

- 전체 응답자(300명)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298명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도 100~149만원이 25.3%, 50~99만원 19.3%, 50만원 미만 15.7%임.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35.0%로 나타났음
- 장애유형별 월 가구소득을 살펴본 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우 월가구소득이 100-149만원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도 월가구소득이 100-149만원이 25.6%로 가장 많았음,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월가구소득이 50-99만원과 150-199만원이 21.1%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는 50만원미만이 35.3%로 가장 많았음. 내부기관장애인의 경우는 200-249만원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100-149만원이 26.5%로 가장 많았음.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이 50.0%가 가장 많았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50-99만원이 69.2%로 가장 많았음
- 장애등급별로 월 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본 결과 1급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22.1%로 가장 많았고, 2급은 100-149만원이 29.6%, 3급은 100-149만원이 34.2%로 가장 많았음

<표 4-32> 장애유형과 등급별 월 가구 소득현황

(단위: 명, %)

구분	50만원 미만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만원이상	계	χ ²
전체	47(15.8)	58(19.5)	76(25.5)	34(11.4)	34(11.4)	17(5.7)	32(10.7)	298(100.0)	
장애유형	지체	11(14.3)	15(19.5)	31(40.3)	5(6.5)	7(9.1)	3(3.9)	5(6.5)	77(100.0)
	뇌병변	3(7.7)	7(17.9)	10(25.6)	2(5.1)	8(20.5)	3(7.7)	6(15.4)	39(100.0)
	시각	6(15.8)	8(21.1)	3(7.9)	8(21.1)	2(5.3)	5(13.2)	6(15.8)	38(100.0)
	청각언어	12(35.3)	4(11.8)	7(20.6)	6(17.6)	2(5.9)	1(2.9)	2(5.9)	34(100.0)
	내부기관	2(20.0)	1(10.0)	1(10.0)	1(10.0)	3(30.0)	0(0)	2(20.0)	10(100.0)
	지적	12(14.5)	14(16.9)	22(26.5)	12(14.5)	10(12.0)	4(4.8)	9(10.8)	83(100.0)
	자폐성	0(0)	0(0)	0(0)	0(0)	1(25.0)	1(25.0)	2(50.0)	4(100.0)
	정신	1(7.7)	9(69.2)	2(15.4)	0(0)	1(7.7)	0(0)	0(0)	13(100.0)

84.20***

구분		50만원 미만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249 만원	250-299 만원	300 만원이상	계	χ^2
장애 등급	1급	32(22.1)	25(17.2)	29(20.0)	18(12.4)	16(11.0)	6(4.1)	19(13.1)	145(100.0)	21.12*
	2급	12(10.4)	29(25.2)	34(29.6)	10(8.7)	12(10.4)	7(6.1)	11(9.6)	115(100.0)	
	3급	3(7.9)	4(10.5)	13(34.2)	6(15.8)	6(15.8)	4(10.5)	2(5.3)	38(100.0)	

*p<.05, ***p<.001

4) 학력별 월 가구 소득현황

- 학력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본 결과 무학의 경우 가구소득이 50-99만원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초졸은 50만원미만이 46.2%로 가장 많았음. 중졸은 100-149만원이 30.3%로 가장 많으며, 고졸은 100-149만원이 26.2%로 가장 많았음. 전문대졸도 100-149만원이 42.1%로 가장 많으며, 4년제졸은 300만원 이상이 26.7%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은 100-149만원이 50.0%로 가장 많았음

〈표 4-33〉 학력별 월 가구 소득현황

(단위: 명, %)

구분		50만원 미만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249 만원	250-299 만원	300 만원이상	계	χ^2
전체		47(15.8)	58(19.5)	76(25.5)	34(11.4)	34(11.4)	17(5.7)	32(10.7)	298(100.0)	
학력	무학	3(15.0)	6(30.0)	4(20.0)	2(10.0)	4(20.0)	1(5.0)	0(0)	20(100.0)	72.53**
	초졸	18(46.2)	8(20.5)	5(12.8)	4(10.3)	1(2.6)	1(2.6)	2(5.1)	39(100.0)	
	중졸	5(15.2)	8(24.2)	10(30.3)	6(18.2)	3(9.1)	0(0)	1(3.0)	33(100.0)	
	고졸	17(11.7)	24(16.6)	38(26.2)	19(13.1)	18(12.4)	11(7.6)	18(12.4)	145(100.0)	
	전문대졸	1(5.3)	5(26.3)	8(42.1)	0(0)	3(15.8)	1(5.3)	1(5.3)	19(100.0)	
	4년제졸	2(6.7)	6(20.0)	5(16.7)	2(6.7)	5(16.7)	2(6.7)	8(26.7)	30(100.0)	
	대학원졸	0(0)	0(0)	2(50.0)	0(0)	0(0)	1(25.0)	1(25.0)	4(100.0)	
	기타	1(12.5)	1(12.5)	4(50.0)	1(12.5)	0(0)	0(0)	1(12.5)	8(100.0)	

**p<.01

라. 취업욕구 및 정책욕구

1) 장애유형과 등급별 일하면서느끼는 어려움

- 취업자(122명)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한 116명에게 이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27.6%로 나타나 72.4%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72.4%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활하기 부족한 임금' 14.7%,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13.8%, '장시간 근무, 잦은 야근 등 근무환경' 9.5%, '상사 및 동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대인관계' 8.6%, '업무수행의 어려움'과 '기타' 7.8%, '장애인 편의시설부족' 6.9%, '적성에 맞지않음' 3.4%순으로 응답함
- 장애유형별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생활하기 부족한 임금'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30.0%로 가장 많았음.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4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는 '상사 및 동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대인관계'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내부기관장애인의 경우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인은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14.7%로 가장 많았음.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장시간 근무, 잦은 야근 등 근무환경' 50.0%로 나타남
- 조사결과 장애유형별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애등급별로 살펴본 결과 1급의 경우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26.3%로 가장 많았으며, 2급과 3급은 '없음'이 각각 34.0%, 36.0%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있는' 경우는 '생활하기 부족한 임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4〉 장애유형과 등급별 일하면서느끼는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없음	적성에 맞지 않음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장시간 근무, 잦은 야근 등 근무환경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생활하기 부족한 임금	상사 및 동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대인관계	업무 수행의 어려움	기타	계	χ2값
전체	32(27.6)	4(3.4)	16(13.8)	11(9.5)	8(6.9)	17(14.7)	10(8.6)	9(7.8)	9(7.8)	116(100.0)	
장애 유형	지체	8(25.0)	1(3.1)	1(3.1)	4(12.5)	2(6.3)	11(34.4)	0(0)	1(3.1)	4(12.5)	32(100.0)
	뇌병변	2(20.0)	0(0)	3(30.0)	0(0)	1(10.0)	0(0)	2(20.0)	1(10.0)	10(100.0)	
	시각	0(0)	0(0)	7(41.2)	3(17.6)	2(11.8)	1(5.9)	1(5.9)	1(5.9)	2(11.8)	17(100.0)
	청각언어	5(29.4)	1(5.9)	1(5.9)	0(0)	1(5.9)	2(11.8)	6(35.3)	1(5.9)	0(0)	17(100.0)
	내부기관	1(50.0)	0(0)	1(50.0)	0(0)	0(0)	0(0)	0(0)	0(0)	0(0)	2(100.0)
	지적	14(41.2)	2(5.9)	3(8.8)	2(5.9)	2(5.9)	3(8.8)	1(2.9)	5(14.7)	2(5.9)	34(100.0)
	정신	2(50.0)	0(0)	0(0)	2(50.0)	0(0)	0(0)	0(0)	0(0)	0(0)	4(100.0)
장애 등급	1급	5(13.2)	0(0)	10(26.3)	6(15.8)	4(10.5)	3(7.9)	4(10.5)	3(7.9)	3(7.9)	38(100.0)
	2급	18(34.0)	3(5.7)	4(7.5)	2(3.8)	4(7.5)	8(15.1)	4(7.5)	5(9.4)	5(9.4)	53(100.0)
	3급	9(36.0)	1(4.0)	2(8.0)	3(12.0)	0(0)	6(24.0)	2(8.0)	1(4.0)	1(4.0)	25(100.0)

**p<.01

2) 취업 차별 일하면서느끼는 어려움

○ 직장별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 자영업은 '장시간 근무, 잦은 야근 등 근무환경'(22.2%)이 가장 많음
- 일반회사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14.8%)와 '상사 및 동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대인관계'(14.8%), '기타'(14.8%)가 가장 많음
-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은 '장시간 근무, 잦은 야근 등 근무환경'(66.7%)이 가장 많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19.0%)가 가장 많음
- 장애인 관련 단체는 '생활하기 부족한 임금'(30.3%)이 가장 많음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부족'(66.7%)이 가장 많음
- 공공근로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50.0%)가 가장 많음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표 4-35〉 취업 처별 일하면서느끼는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없음	적성에 맞지 않음	고용불안 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장시간 근무, 잦은 야근 등 근무 환경	장애인 편의 시설 부족	생활하기 부족한 임금	상사 및 동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대인관계	업무 수행의 어려움	기타	계	χ ²	
전체	32(27.6)	4(3.4)	16(13.8)	11(9.5)	8(6.9)	17(14.7)	10(8.6)	9(7.8)	9(7.8)	116(100.0)		
일하는곳 (취업시설)	자영업자 (본인이 자영업자)	7(38.9)	0(0.0)	2(11.1)	4(22.2)	0(0.0)	3(16.7)	0(0.0)	1(5.6)	18(100.0)	76.95***	
	일반회사	5(18.5)	2(7.4)	4(14.8)	2(7.4)	2(7.4)	1(3.7)	4(14.8)	3(11.1)	4(14.8)		
	정부 또는 정부관련기관	0(0.0)	0(0.0)	0(0.0)	2(66.7)	1(33.3)	0(0.0)	0(0.0)	0(0.0)	0(0.0)		3(100.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38.1)	0(0.0)	4(19.0)	1(4.8)	1(4.8)	3(14.3)	1(4.8)	2(9.5)	1(4.8)		21(100.0)
	장애인관련 단체	7(21.2)	2(6.1)	3(9.1)	2(6.1)	1(3.0)	10(30.3)	3(9.1)	2(6.1)	3(9.1)		33(100.0)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0(0.0)	0(0.0)	1(33.3)	0(0.0)	2(66.7)	0(0.0)	0(0.0)	0(0.0)	0(0.0)		3(100.0)
	공공근로	2(50.0)	0(0.0)	2(50.0)	0(0.0)	0(0.0)	0(0.0)	0(0.0)	0(0.0)	0(0.0)		4(100.0)
	기타	3(42.9)	0(0.0)	0(0.0)	0(0.0)	1(14.3)	0(0.0)	2(28.6)	1(14.3)	0(0.0)		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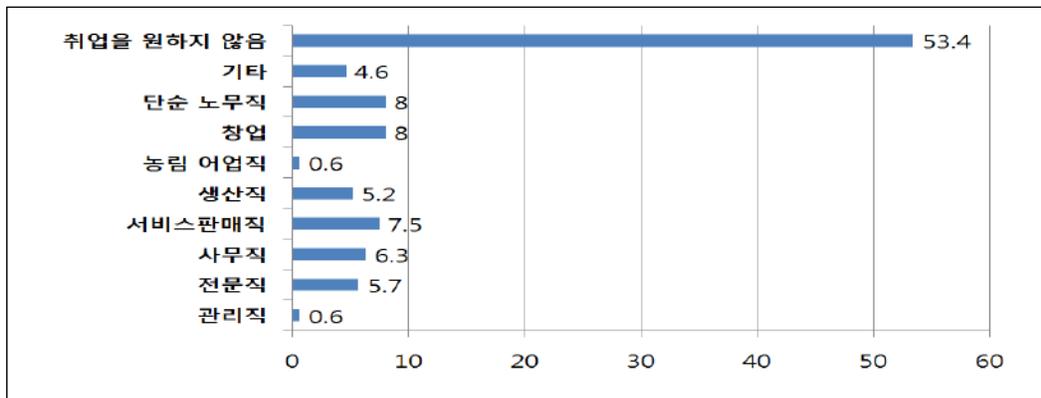
***p<.001

3) 미취업자의 장애유형과 등급별 미취업이유

○ 미취업자(178명)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한 174명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물어 본 결과, 53.4%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미취업자의 원하는 일자리

(단위: %)



-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가 72.0%로 가장 많음. 그 다음이 '기타' 8.6%,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7.5%,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각각 3.2%,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와 '그저 일하고 싶지 않아서'도 각각 2.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1% 순으로 나타남(<표 4-36참조>)
-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장애등급별로도 급수와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음. 단지 3급의 경우 '기타'에 40.0%가 응답하고 1급과 2급도 6.8%와 6.9%가 응답함으로써 이후 '기타'와 관련해 미취업이유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4-36> 미취업자의 장애유형과 등급별 미취업이유

(단위: 명, %)

구분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저 일하고 싶지 않아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기타	계	χ^2
전체	67(72.0)	2(2.2)	1(1.1)	2(2.2)	3(3.2)	3(3.2)	7(7.5)	8(8.6)	93(100.0)	
장애 유형	지체	9(64.3)	0(0)	1(7.1)	0(0)	0(0)	1(7.1)	2(14.3)	1(7.1)	14(100.0)
	뇌병변	22(95.7)	0(0)	0(0)	0(0)	0(0)	0(0)	1(4.3)	0(0)	23(100.0)
	시각	5(55.6)	0(0)	0(0)	1(11.1)	0(0)	0(0)	1(11.1)	2(22.2)	9(100.0)
	청각언어	3(33.3)	1(11.1)	0(0)	0(0)	1(11.1)	2(22.2)	1(11.1)	1(11.1)	9(100.0)
	내부기관	5(100.0)	0(0)	0(0)	0(0)	0(0)	0(0)	0(0)	0(0)	5(100.0)
	지적	16(64.0)	1(4.0)	0(0)	1(4.0)	2(8.0)	0(0)	2(8.0)	3(12.0)	25(100.0)
	자폐성	1(100.0)	0(0)	0(0)	0(0)	0(0)	0(0)	0(0)	0(0)	1(100.0)
정신	6(85.7)	0(0)	0(0)	0(0)	0(0)	0(0)	0(0)	1(14.3)	7(100.0)	
장애 등급	1급	46(78.0)	1(1.7)	1(1.7)	2(3.4)	1(1.7)	2(3.4)	2(3.4)	4(6.8)	59(100.0)
	2급	18(62.1)	1(3.4)	0(0)	0(0)	2(6.9)	1(3.4)	5(17.2)	2(6.9)	29(100.0)
	3급	3(60.0)	0(0)	0(0)	0(0)	0(0)	0(0)	0(0)	2(40.0)	5(100.0)

4) 미취업자의 장애유형별 원하는 일자리

- 응답한 미취업자(174명)중 취업을 원하는 81명에게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질문한 결과 '창업과 '단순노무직'이 각각 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서비스·판매직' 7.5%, '사무직' 6.3%, '전문직' 5.7%, '생산직'5.2%, '기타' 4.6%, '관리직'과 '농림·어업직' 각각 0.6%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창업'이 16.3%로 가장 많았고, 내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사무직'이 10.7%로 가장 많았음.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서비스·판매직'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는 '생산직'이 12.5%로 가장 많았음. 내부기관장애인의 경우는 '사무직'과 '농림·어업직'이 각각 12.5%로 가장 많았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단순노무직이 각각 10.4%, 50.0%, 12.5%로 가장 많았음. 조사결과 장애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7> 미취업자의 장애유형별 원하는 일자리

(단위: 명, %)

구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농림·어업직	창업	단순노무직	기타	취업을 원하지 않음	계	χ2
전체	1(6)	10(5.7)	11(6.3)	13(7.5)	9(5.2)	1(6)	14(8.0)	14(8.0)	8(4.6)	93(53.4)	174(100.0)	
장애유형	지체	0(0)	6(14.0)	5(11.6)	2(4.7)	2(4.7)	0(0)	7(16.3)	5(11.6)	2(4.7)	14(32.6)	97.90**
	뇌병변	0(0)	0(0)	3(10.7)	0(0)	1(3.6)	0(0)	1(3.6)	0(0)	0(0)	23(82.1)	
	시각	0(0)	2(10.5)	0(0)	5(26.3)	0(0)	0(0)	0(0)	1(5.3)	2(10.5)	9(47.4)	
	청각언어	0(0)	1(6.3)	0(0)	1(6.3)	2(12.5)	0(0)	2(12.5)	0(0)	1(6.3)	9(56.3)	
	내부기관	0(0)	0(0)	1(12.5)	1(12.5)	0(0)	1(12.5)	0(0)	0(0)	0(0)	5(62.5)	
	지적	1(2.1)	0(0)	2(4.2)	4(8.3)	4(8.3)	0(0)	4(8.3)	5(10.4)	3(6.3)	25(52.1)	
	자폐성	0(0)	1(25.0)	0(0)	0(0)	0(0)	0(0)	0(0)	2(50.0)	0(0)	1(25.0)	
	정신	0(0)	0(0)	0(0)	0(0)	0(0)	0(0)	0(0)	1(12.5)	0(0)	7(87.5)	

**p<.01

5) 장애유형과 등급별 직업훈련 의향

- 전체응답자들에게 앞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음. 응답자들의 50.7%는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표 4-38〉 직업훈련 의향

(단위: 명, %)

구분	의향이 있다	의향이 없다	계
전체	148(49.3)	152(50.7)	300(100.0)

- 의향이 있는 148명(49.3%)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한 147명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이들의 46.3%는 '직업능력교육'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 그 다음은 '직업적응관련 교육' 25.9%, '정보화 교육' 23.8%, '외국어교육'과 '기타'가 각각 2.0% 순으로 나타남
- 참가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필요한 교육에 있어서는 장애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지체장애인의 경우 '직업능력교육'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직업능력교육'과 '정보화 교육'이 각각 46.7%로 가장 많았음. 시각장애인은 '직업능력교육'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직업능력교육'과 '직업적응관련 교육'이 각각 44.4%로 가장 많았음. 내부기관장애인은 '정보화 교육' 50.0%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인은 '직업능력교육'이 42.9%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인은 '직업적응관련 교육'이 66.7%로 가장 많았음. 정신장애인은 '직업능력교육'과 '직업적응관련 교육'이 각각 50.0%로 가장 많았음

〈표 4-39〉 가장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직업능력 교육	직업적응 관련교육	외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기타	계	χ^2
전체		68(46.3)	38(25.9)	3(2.0)	35(23.8)	3(2.0)	147(100.0)	
장애 유형	지체	22(52.4)	6(14.3)	1(2.4)	13(31.0)	0(0)	42(100.0)	51.03**
	뇌병변	7(46.7)	1(6.7)	0(0)	7(46.7)	0(0)	15(100.0)	

구분		직업능력 교육	직업적응 관련교육	외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기타	계	χ ²
장애 유형	시각	10(52.6)	1(5.3)	1(5.3)	7(36.8)	0(0)	19(100.0)	51.03**
	청각언어	4(44.4)	4(44.4)	0(0)	1(11.1)	0(0)	9(100.0)	
	내부기관	0(0)	1(25.0)	1(25.0)	2(50.0)	0(0)	4(100.0)	
	지적	21(42.9)	20(40.8)	0(0)	5(10.2)	3(6.1)	49(100.0)	
	자폐성	1(33.3)	2(66.7)	0(0)	0(0)	0(0)	3(100.0)	
	정신	3(50.0)	3(50.0)	0(0)	0(0)	0(0)	6(100.0)	

**p<.01

- 조사결과 장애유형별로 원하는 교육내용을 반영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6)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지원 욕구

- 전체응답자(300명)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298명에게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함(<표 4-40>참조)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22.5%)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고용장려금지원, 근무환경개선, 작업보조기기 지원 등)(18.5%), '직업능력개발훈련'(16.8%),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14.8%),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10.7%) 순임
- 장애유형, 학력, 혼인유형별 별로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 지체장애인의 경우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26.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고용장려금지원, 근무환경개선, 작업보조기기 지원 등)(21.8%)순으로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은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고용장려금지원, 근무환경개선, 작업보조기기 지원 등)(25.6%)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과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각각 20.5%순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인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2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고용장려금지원, 근무환경개선, 작업보조기기 지원 등)이 21.1%임
-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 지원'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으로 21.2%임
- 내부기관장애인의 경우도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 지원'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가 20.0%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고용장려금지원, 근무환경개선, 작업 보조기기 지원 등)'이 17.9%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50.0%로 가장 많았음
-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 지원'이 25.0%임
- 요약하면,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았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았음. 여성중증장애인의 취업률과 고용유지를 위해 장애유형별로 취업지원정책이 만들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 학력별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 '무학'의 경우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과 '직업 능력 개발훈련'이 각각 21.1%로 가장 많았으며, '초졸'의 경우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이 28.9%로 가장 많았음. '중졸'의 경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이 21.2%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의 경우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과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고용장려금지원, 근무환경개선, 작업보조기기 지원 등)'이 각각 21.9%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전문대졸'의 경우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졸'의 경우는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고용장려금지원, 근무환경개선, 작업보조기기 지원 등)'이 26.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의 경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이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 요약해보면, 학력별로 고졸이하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을 정책지원으로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졸과 대학원졸의 경우는 노동시장 내 여성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으로 원했음. 여성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혼인유형별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 미혼의 경우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이 25.2%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의 경우는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고용장려금지원, 근무환경개선, 작업보조기기 지원 등)'이 23.1%로 가장 많았음. 이혼의 경우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사별의 경우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27.8%로 가장 많았음. 별거의 경우는 '자녀양육지원' 가장 많았음
-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유형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 4-40〉 경제활동 참여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단위: 명, %)

구분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장애인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창업 지원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자녀양육 지원	기타	계	χ^2	
전체	67(22.5)	50(16.8)	55(18.5)	32(10.7)	13(4.4)	44(14.8)	19(6.4)	18(6.0)	298(100.0)		
장애 유형	지체	21(26.9)	8(10.3)	17(21.8)	8(10.3)	7(9.0)	7(9.0)	6(7.7)	4(5.1)	78(100.0)	71.75*
	뇌병변	8(20.5)	8(20.5)	10(25.6)	3(7.7)	2(5.1)	1(2.6)	3(7.7)	4(10.3)	39(100.0)	
	시각	7(18.4)	9(23.7)	8(21.1)	5(13.2)	0(0)	5(13.2)	2(5.3)	2(5.3)	38(100.0)	
	청각언어	10(30.3)	7(21.2)	3(9.1)	6(18.2)	2(6.1)	0(0)	4(12.1)	1(3.0)	33(100.0)	
	내부기관	4(40.0)	1(10.0)	1(10.0)	1(10.0)	0(0)	2(20.0)	0(0)	1(10.0)	10(100.0)	71.75*
	지적	14(16.7)	13(15.5)	15(17.9)	9(10.7)	1(1.2)	24(28.6)	4(4.8)	4(4.8)	84(100.0)	
	자폐성	0(0)	2(50.0)	1(25.0)	0(0)	1(25.0)	0(0)	0(0)	0(0)	4(100.0)	
정신	3(25.0)	2(16.7)	0(0)	0(0)	0(0)	5(41.7)	0(0)	2(16.7)	12(100.0)		
학력	무학	4(21.1)	4(21.1)	0(0)	2(10.5)	0(0)	3(15.8)	2(10.5)	4(21.1)	19(100.0)	
	초졸	11(28.9)	8(21.1)	5(13.2)	5(13.2)	0(0)	3(7.9)	4(10.5)	2(5.3)	38(100.0)	
	중졸	5(15.2)	6(18.2)	5(15.2)	7(21.2)	2(6.1)	6(18.2)	2(6.1)	0(0)	33(100.0)	
	고졸	32(21.9)	26(17.8)	32(21.9)	10(6.8)	6(4.1)	26(17.8)	9(6.2)	5(3.4)	146(100.0)	69.88*
	전문대졸	6(31.6)	1(5.3)	2(10.5)	4(21.1)	3(15.8)	2(10.5)	0(0)	1(5.3)	19(100.0)	
	4년제졸	7(23.3)	5(16.7)	8(26.7)	1(3.3)	2(6.7)	2(6.7)	2(6.7)	3(10.0)	30(100.0)	
	대학원졸	1(25.0)	0(0)	1(25.0)	2(50.0)	0(0)	0(0)	0(0)	0(0)	4(100.0)	
기타	1(11.1)	0(0)	2(22.2)	1(11.1)	0(0)	2(22.2)	0(0)	3(33.3)	9(100.0)		
혼인 유형	미혼	31(25.2)	21(17.1)	21(17.1)	12(9.8)	5(4.1)	24(19.5)	3(2.4)	6(4.9)	123(100.0)	
	기혼	26(21.5)	20(16.5)	28(23.1)	12(9.9)	7(5.8)	9(7.4)	12(9.9)	7(5.8)	121(100.0)	
	이혼	6(23.1)	2(7.7)	2(7.7)	5(19.2)	0(0)	8(30.8)	2(7.7)	1(3.8)	26(100.0)	52.14*
	사별	4(22.2)	5(27.8)	3(16.7)	2(11.1)	0(0)	1(5.6)	1(5.6)	2(11.1)	18(100.0)	
	별거	0(0)	0(0)	0(0)	0(0)	0(0)	0(0)	1(100.0)	0(0)	1(100.0)	
	기타	0(0)	2(22.2)	1(11.1)	1(11.1)	1(11.1)	2(22.2)	0(0)	2(22.2)	9(100.0)	

*p<.05

5. 건강 및 의료 실태

가. 건강상태

- 여성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에 참여한 전체응답자(300명)에게 건강상태를 5점 기준으로 물어 본 결과 평균 2.79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 서귀포시 거주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건강상태(3.17)가 평균보다 높으며 제주시 거주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건강상태(2.70)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나이가 어릴수록 건강상태가 평균보다 높았으며 나이가 많아 질수록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건강상태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을 제외한 신체적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음. 정신적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신체적 장애인의 건강상태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1〉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좋지 않음	별로 좋지 않음	보통	대체로 좋음	매우 좋음	계	평균	F	
전체	42(14.0)	72(24.0)	111(37.0)	56(18.7)	19(6.3)	300(100.0)	2.79		
지역	제주시	34(14.0)	63(26.0)	97(40.1)	37(15.3)	11(4.5)	242(100.0)	2.70	8.82**
	서귀포시	8(13.8)	9(15.5)	14(24.1)	19(32.8)	8(13.8)	58(100.0)	3.17	
장애유형	지체	14(17.9)	24(30.8)	30(38.5)	10(12.8)	0(0)	78(100.0)	2.46	4.38***
	뇌병변	10(25.6)	10(25.6)	14(35.9)	3(7.7)	2(5.1)	39(100.0)	2.41	
	시각	6(15.8)	7(18.4)	17(44.7)	7(18.4)	1(2.6)	38(100.0)	2.74	
	청각언어	2(5.9)	6(17.6)	17(50.0)	9(26.5)	0(0)	34(100.0)	2.97	
	내부기관	2(20.0)	3(30.0)	4(40.0)	1(10.0)	0(0)	10(100.0)	2.40	
	지적	5(6.0)	19(22.6)	27(32.1)	18(21.4)	15(17.9)	84(100.0)	3.23	
	자폐성	0(0)	1(25.0)	1(25.0)	2(50.0)	0(0)	4(100.0)	3.25	
정신	3(23.1)	2(15.4)	1(7.7)	6(46.2)	1(7.7)	13(100.0)	3.00		

p<.01, *p<.001

나. 의료비지출현황

- 전체응답자(300명)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한 296명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의료비지출정도는 월 평균 9만4천원이며, 장애유형별로 내부기관장애인이 평균 2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인이 3만2천원으로 가장 낮았음
- 수급여부별 의료비 지출정도를 살펴보면, 비수급자의 의료비지출은 월 평균 10만 7천원이며 수급자의 월평균 의료비지출은 7만 4천원으로 나타났음

〈표 4-42〉 월평균 진료비

(단위: 만원)

구분		평균
전체		9.4
장애유형	지체	9.9
	뇌병변	8.8
	시각	7.1
	청각언어	13.0
	내부기관	24.0
	지적	8.0
	자폐성	6.5
	정신	3.2
수급자여부	비수급자	10.7
	수급자	7.4

- 조사대상자의 의료급여수급 형태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 아님이 5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의료급여 1종 31.4%, 의료급여 2종 8.8%,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자 6.4%로 나타남

〈표 4-43〉 의료급여 수급형태

(단위: 명, %)

구분	수급자가 아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계
전체	158(53.4)	93(31.4)	26(8.8)	19(6.4)	296(100.0)

다. 병원이용의 어려움

- 전체응답자(300명)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298명을 분석한 결과,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결과 41.6%가 '경제적어려움'이라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이 힘들' 18.8%, '어려움 없음' 18.1%, '병원에 장애를 배려한 의료기구가 없음' 8.4%, '의료진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음' 7.0%, '치료기관부족' 3.0%, '기타' 2.3%, '이동을 도와줄 사람이나 교통편이 없음' 0.7%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뇌병변·시각·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어려움'이 각각 55.8%, 43.6%, 65.8%, 70.0%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각각 '의사소통이 힘들'이 50.0%, 50.0%, 53.8%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어려움 없음'이 31.3%로 가장 많았음

〈표 4-43〉 병원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어려움이 없음	경제적 어려움	이동을 도와줄 사람이나 교통편이 없음	치료기관 부족	병원에 장애를 배려한 의료기구가 없음	의사소통이 힘들	의료진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음	기타	계	χ ²
전체	54(18.1)	124(41.6)	2(7)	9(3.0)	25(8.4)	56(18.8)	21(7.0)	7(2.3)	298(100.0)	
장애 유형	지체	4(5.2)	43(55.8)	1(1.3)	4(5.2)	17(22.1)	1(1.3)	5(6.5)	2(2.6)	77(100.0)
	뇌병변	9(23.1)	17(43.6)	0(0)	3(7.7)	1(2.6)	6(15.4)	1(2.6)	2(5.1)	39(100.0)
	시각	5(13.2)	25(65.8)	1(2.6)	0(0)	3(7.9)	1(2.6)	2(5.3)	1(2.6)	38(100.0)
	청각언어	6(17.6)	7(20.6)	0(0)	0(0)	1(2.9)	17(50.0)	3(8.8)	0(0)	34(100.0)
	내부기관	2(20.0)	7(70.0)	0(0)	0(0)	0(0)	1(10.0)	0(0)	0(0)	10(100.0)
	지적	26(31.3)	22(26.5)	0(0)	1(1.2)	2(2.4)	21(25.3)	9(10.8)	2(2.4)	83(100.0)
	자폐성	1(25.0)	1(25.0)	0(0)	0(0)	0(0)	2(50.0)	0(0)	0(0)	4(100.0)
정신	1(7.7)	2(15.4)	0(0)	1(7.7)	1(7.7)	7(53.8)	1(7.7)	0(0)	13(100.0)	

*p<.05, **p<.01, ***p<.001

- 병원이용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진료 과에 대한 조사결과 '어려움 없음'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모두'가 20.5%, '산부인과' 16.4%, '치과'

13.8%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은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인은 '어려움 없음'과 '산부인과'가 28.2%와 25.6%로 많이 응답했으며, 시각장애인은 모두가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은 어려움 없음과 모두가 26.5%와 23.5%로 많았음. 내부기관장애인은 치과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인은 어려움 없음과 모두가 36.9%와 20.2%로 많았음. 자폐성장애인은 '외과', '치과', '일반건강검진', '어려움 없음' 각각 25.0%로 나타났고,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어려움 없음'과 '모두'가 각각 38.5%로 많았음
- 혼인유형에서는 미혼은 어려움 없음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은 '산부인과'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도 '산부인과'가 36.0%로 가장 많았음

〈표 4-44〉 병원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진료과목

(단위: 명, %)

구분	병원 이용 안함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이비인 후과	일반 건강 검진	모두	어려움 없음	기타	계	χ ²	
전체	7(2.3)	21(7.0)	6(2.0)	49(16.4)	41(13.8)	11(3.7)	20(6.7)	61(20.5)	73(24.5)	9(3.0)	298(100.0)		
장애 유형	지체	1(1.3)	2(2.6)	1(1.3)	28(36.8)	8(10.5)	1(1.3)	13(17.1)	15(19.7)	4(5.3)	3(3.9)	76(100.0)	146.8** *
	뇌병변	0(0)	5(12.8)	0(0)	10(25.6)	6(15.4)	0(0)	1(2.6)	5(12.8)	11(28.2)	1(2.6)	39(100.0)	
	시각	0(0)	2(5.3)	0(0)	5(13.2)	3(7.9)	5(13.2)	3(7.9)	10(26.3)	9(23.7)	1(2.6)	38(100.0)	
	청각언어	2(5.9)	6(17.6)	3(8.8)	0(0)	4(11.8)	1(2.9)	1(2.9)	8(23.5)	9(26.5)	0(0)	34(100.0)	
	내부기관	0(0)	0(0)	0(0)	1(10.0)	5(50.0)	0(0)	0(0)	1(10.0)	3(30.0)	0(0)	10(100.0)	
	지적	4(4.8)	5(6.0)	1(1.2)	5(6.0)	13(15.5)	3(3.6)	1(1.2)	17(20.2)	31(36.9)	4(4.8)	84(100.0)	
	자폐성	0(0)	0(0)	1(25.0)	0(0)	1(25.0)	0(0)	1(25.0)	0(0)	1(25.0)	0(0)	4(100.0)	
혼 인 유 형	정신	0(0)	1(7.7)	0(0)	0(0)	1(7.7)	1(7.7)	0(0)	5(38.5)	5(38.5)	0(0)	13(100.0)	79.38** *
	미혼	5(4.0)	8(6.5)	1(0.8)	8(6.5)	19(15.3)	5(4.0)	9(7.3)	20(16.1)	45(36.3)	4(3.2)	124(100.0)	
	기혼	0(0)	11(9.2)	1(0.8)	30(25.0)	17(14.2)	5(4.2)	8(6.7)	24(20.0)	21(17.5)	3(2.5)	120(100.0)	
	이혼	0(0)	0(0)	1(4.0)	9(36.0)	1(4.0)	0(0)	2(8.0)	7(28.0)	4(16.0)	1(4.0)	25(100.0)	
	사별	1(5.3)	2(10.5)	2(10.5)	2(10.5)	2(10.5)	1(5.3)	1(5.3)	5(26.3)	3(15.8)	0(0)	19(100.0)	
	별거	0(0)	0(0)	0(0)	0(0)	1(100.0)	0(0)	0(0)	0(0)	0(0)	0(0)	1(100.0)	
기타	1(11.1)	0(0)	1(11.1)	0(0)	1(11.1)	0(0)	0(0)	5(55.6)	0(0)	1(11.1)	9(100.0)		

***p<.001

라. 건강 및 의료지원 욕구

- 전체응답자에게 여성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위해 가장 강화되어야 할 정책을 물어본 결과 ‘의료비 지원확대’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등 병원내 장애여성을 위한 시설 설치’가 18.7%, ‘방문 재활치료서비스제공’ 17.7%, ‘재활치료, 퇴원 후 지역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이 15.7%, ‘약국·보건소·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의 접근성 개선’ 9.7%, ‘보건소내 여성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8.3%, ‘기타’ 3.3%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등 병원내 장애여성을 위한 시설 설치’ 28.2%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재활치료, 퇴원 후 지역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41.0%로 가장 많았음. 시각·청각언어·내부기관·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원확대’가 각각 36.8%, 41.2%, 30.0%, 26.2%, 50.0%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방문재활 치료서비스제공’이 30.8%로 가장 많았음. 장애유형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45〉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위해 강화해야할 정책

(단위: 명, %)

구분	재활치료 퇴원 후 지역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서비스 제	방문 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등 병원 내 장애여성위한 시설 설치	보건소 내 여성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약국·보건소·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의 접근성 개선	의료비 지원확대	기타	계	χ ²	
전체	47(15.7)	53(17.7)	56(18.7)	25(8.3)	29(9.7)	80(26.7)	10(3.3)	300(100.0)		
장애유형	지체	12(15.4)	14(17.9)	22(28.2)	5(6.4)	9(11.5)	15(19.2)	1(1.3)	78(100.0)	58.38*
	뇌병변	16(41.0)	6(15.4)	2(5.1)	1(2.6)	4(10.3)	8(20.5)	2(5.1)	39(100.0)	
	시각	2(5.3)	9(23.7)	8(21.1)	3(7.9)	1(2.6)	14(36.8)	1(2.6)	38(100.0)	
	청각언어	5(14.7)	5(14.7)	4(11.8)	2(5.9)	4(11.8)	14(41.2)	0(0)	34(100.0)	
	내부기관	1(10.0)	2(20.0)	2(20.0)	1(10.0)	1(10.0)	3(30.0)	0(0)	10(100.0)	

구분	재활치료 퇴원 후 지역사회재 활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서 비스 제	방문 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등 병원 내 장애여성위 한 시설 설치	보건소 내 여성 장애인 건강증진프 로그램 실시	약국·보건 소·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의 접근성 개선	의료비 지원확대	기타	계	χ^2
지적	9(10.7)	12(14.3)	16(19.0)	10(11.9)	10(11.9)	22(26.2)	5(6.0)	84(100.0)	
자폐성	1(25.0)	1(25.0)	0(0)	0(0)	0(0)	2(50.0)	0(0)	4(100.0)	
정신	1(7.7)	4(30.8)	2(15.4)	3(23.1)	0(0)	2(15.4)	1(7.7)	13(100.0)	

*p<.05

6. 안전실태

가. 일상생활 수행 시 안전위협 분야

1)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분야

○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분야는 외출(대중교통 이용 불편이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불안)이 27.4%, '건강에 대한 우려' 22.7%, '불규칙한 수입 등 경제적 불안정' 16.7%,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한 부담' 10.0%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 지체장애인은 '불규칙한 수입 등 경제적 불안정'이 24.7%로 가장 많았음
- 뇌병변장애인은 '건강에 대한 우려'가 38.5%로 가장 많았음
- 시각·내부기관·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외출(대중교통 이용 불편이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불안)이 각각 55.3%, 30.0%, 27.4%, 50.0%, 30.8%로 가장 많았음
- 청각언어장애인은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32.4%로 가장 많았음
- 요약하면, 지체장애인은 노동권, 뇌병변·청각언어장애인은 건강권, 시각·내부기관·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이동권에 대한 위협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음

<표 4-46>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분야

(단위: 명, %)

구분	가사, 육아 등 가정 내 활동	외출	가정 폭력	성폭력	불규칙한 수입 경제적 불안정	건강에 대한 우려	간병인 또는 돌봐주는 사람이 일정하지 않음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한 부담	기타	계	χ ²
전체	25(8.4)	82(27.4)	6(2.0)	19(6.4)	50(16.7)	68(22.7)	8(2.7)	30(10.0)	11(3.7)	299(100.0)	
장애 유형	지체	10(13.0)	16(20.8)	1(1.3)	0(0)	19(24.7)	21(27.3)	0(0)	7(9.1)	3(3.9)	77(100.0)
	뇌병변	3(7.7)	10(25.6)	0(0)	0(0)	6(15.4)	15(38.5)	3(7.7)	1(2.6)	1(2.6)	39(100.0)
	시각	3(7.9)	21(55.3)	1(2.6)	1(2.6)	6(15.8)	2(5.3)	2(5.3)	2(5.3)	0(0)	38(100.0)
	청각언어	3(8.8)	3(8.8)	0(0)	2(5.9)	6(17.6)	8(23.5)	1(2.9)	11(32.4)	0(0)	34(100.0)
	내부기관	0(0)	3(30.0)	0(0)	0(0)	1(10.0)	3(30.0)	1(10.0)	2(20.0)	0(0)	10(100.0)
	지적	5(6.0)	23(27.4)	4(4.8)	13(15.5)	9(10.7)	16(19.0)	1(1.2)	6(7.1)	7(8.3)	84(100.0)
	자폐성	0(0)	2(50.0)	0(0)	2(50.0)	0(0)	0(0)	0(0)	0(0)	0(0)	4(100.0)
	정신	1(7.7)	4(30.8)	0(0)	1(7.7)	3(23.1)	3(23.1)	0(0)	1(7.7)	0(0)	13(100.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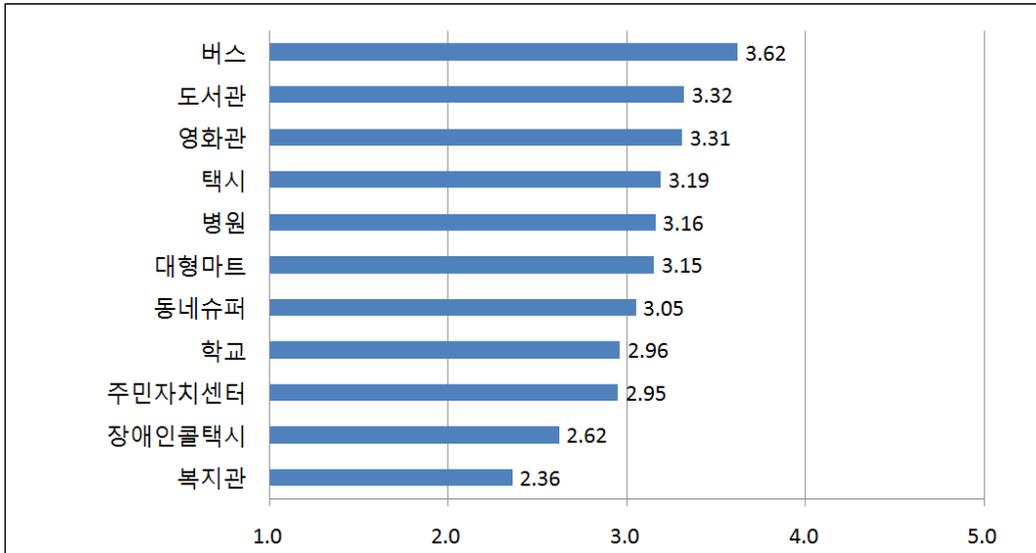
나. 시설이나 교통수단 이용경험

1) 시설이용경험

-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생활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문화시설로 나누어 시설이용의 불편정도를 조사함
- 조사척도는 5점 척도(1 전혀 불편하지 않음 ~ 5 매우 불편)를 사용함
- 조사결과, 모든 시설이용에 있어 가장 불편함을 경험하는 장애인은 시각여성 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시설 중 여성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시설은 도서관으로 나타남. 또한, 이용시설경험이 가장 없는 시설도 도서관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불편하지 않은 시설은 복지관이었음

<그림 4> 시설이나 교통수단 이용경험

(단위: 점)

**□ 생활시설 이용 시 불편 정도**

○ 동네슈퍼 이용 시 불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불편함’이 36.7%, ‘불편하지 않음’이 34.3%, 이용한적 없음 4.7%로 나타남

- 불편함이 ‘불편하지 않음보다’ 2.4%더 많이 나타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05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동네슈퍼 이용 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장애 유형, 연령별, 장애등급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장애유형별 동네슈퍼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시각장애인(3.89)이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인(2.36)이 가장 낮았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3.37)가 불편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반면, 70대 이상(2.67)이 가장 낮았음
 -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3.38로 불편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3급이 2.62로 가장

낮았음

-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3.13으로 불편정도가 서귀포시(2.73)보다 더 높았음

<표 4-47> 동네슈퍼 이용 시 불편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불편함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이용 한적 없음	평균	F	
												전체
지역	제주시	242(100.0)	72(29.7)	32(13.2)	40(16.5)	66(27.3)	92(38.1)	50(20.7)	42(17.4)	12(5.0)	3.13	4.16*
	서귀포시	58(100.0)	31(53.5)	11(19.0)	20(34.5)	7(12.1)	18(31.0)	9(15.5)	9(15.5)	2(3.4)	2.73	
연령	19~29세	65(100.0)	34(52.3)	13(20.0)	21(32.3)	13(20.0)	18(27.7)	10(15.4)	8(12.3)	0(0)	2.68	3.21**
	30~39세	46(100.0)	19(41.3)	10(21.7)	9(19.6)	11(23.9)	13(28.3)	8(17.4)	5(10.9)	3(6.5)	2.74	
	40~49세	86(100.0)	22(25.6)	9(10.5)	13(15.1)	22(25.6)	38(44.2)	20(23.3)	18(20.9)	4(4.7)	3.30	
	50~59세	71(100.0)	17(24.0)	7(9.9)	10(14.1)	17(23.9)	31(43.6)	14(19.7)	17(23.9)	6(8.5)	3.37	
	60~69세	19(100.0)	7(36.8)	2(10.5)	5(26.3)	4(21.1)	8(42.1)	5(26.3)	3(15.8)	0(0)	3.11	
	70세이상	13(100.0)	4(30.8)	2(15.4)	2(15.4)	6(46.2)	0(15.4)	1(15.4)	0(0)	1(7.7)	2.67	
장애 유형	지체	78(100.0)	9(11.6)	2(2.6)	7(9.0)	22(28.2)	44(56.4)	24(30.8)	20(25.6)	3(3.8)	3.71	10.74***
	뇌병변	39(100.0)	10(25.6)	5(12.8)	5(12.8)	13(33.3)	12(30.7)	7(17.9)	5(12.8)	4(10.3)	3.06	
	시각	38(100.0)	4(10.6)	2(5.3)	2(5.3)	9(23.7)	24(63.2)	9(23.7)	15(39.5)	1(2.6)	3.89	
	청각언어	34(100.0)	20(58.8)	6(17.6)	14(41.2)	9(26.5)	5(14.7)	4(11.8)	1(2.9)	0(0)	2.41	
	내부기관	10(100.0)	6(60.0)	1(10.0)	5(50.0)	2(20.0)	1(10.0)	0(0)	1(10.0)	1(10.0)	2.44	
	지적	84(100.0)	45(53.6)	23(27.4)	22(26.2)	16(19.0)	20(23.8)	12(14.3)	8(9.5)	3(3.6)	2.51	
	자폐성	4(100.0)	2(50.0)	0(0)	2(50.0)	1(25.0)	1(25.0)	1(25.0)	0(0)	0(0)	2.75	
	정신	13(100.0)	7(53.9)	4(30.8)	3(23.1)	1(7.7)	3(23.1)	2(15.4)	1(7.7)	2(15.4)	2.36	
장애 등급	1급	146(100.0)	34(23.3)	11(7.5)	23(15.8)	38(26.0)	62(42.5)	28(19.2)	34(23.3)	12(8.2)	3.38	8.59***
	2급	115(100.0)	51(44.3)	22(19.1)	29(25.2)	25(21.7)	37(32.1)	22(19.1)	15(13.0)	2(1.7)	2.81	
	3급	39(100.0)	18(46.1)	10(25.6)	8(20.5)	10(25.6)	11(28.2)	9(23.1)	2(5.1)	0(0)	2.62	

*p<.05, **p<.01, ***p<.001

- 대형마트 이용 시 불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불편함’이 37.4%, ‘불편하지 않음’이 29.4%, 이용한적 없음 9.7%로 나타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15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음은 수준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대형마트 이용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장애유형별 대형마트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시각장애인(4.11)이 가장 높았고, 청각언어장애인(2.42)이 가장 낮았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3.33로 불편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3급이 2.63으로 가장 낮았음

〈표 4-48〉 대형마트 이용 시 불편정도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불편함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이용한적 없음	평균	F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체	300(100.0)	88(29.4)	32(10.7)	56(18.7)	71(23.7)	112(37.4)	62(20.7)	50(16.7)	29(9.7)	3.15		
장애 유형	지체	78(100.0)	16(20.5)	5(6.4)	11(14.1)	22(28.2)	34(43.6)	22(28.2)	12(15.4)	6(7.7)	3.35	6.08***
	뇌병변	39(100.0)	11(28.2)	5(12.8)	6(15.4)	7(17.9)	15(38.4)	8(20.5)	7(17.9)	6(15.4)	3.18	
	시각	38(100.0)	2(5.2)	1(2.6)	1(2.6)	9(23.7)	25(65.8)	7(18.4)	18(47.4)	2(5.3)	4.11	
	청각언어	34(100.0)	17(50.0)	5(14.7)	12(35.3)	13(38.2)	3(8.8)	3(8.8)	0(0)	1(2.9)	2.42	
	내부기관	10(100.0)	3(30.0)	0(0)	3(30.0)	3(30.0)	3(30.0)	2(20.0)	1(10.0)	1(10.0)	3.11	
	지적	84(100.0)	32(38.1)	13(15.5)	19(22.6)	15(17.9)	28(33.3)	17(20.2)	11(13.1)	9(10.7)	2.92	
	자폐성	4(100.0)	2(50.0)	0(0)	2(50.0)	1(25.0)	1(25.0)	1(25.0)	0(0)	0(0)	2.75	
	정신	13(100.0)	5(38.5)	3(23.1)	2(15.4)	1(7.7)	3(23.1)	2(15.4)	1(7.7)	4(30.8)	2.56	
장애 등급	1급	146(100.0)	34(23.2)	10(6.8)	24(16.4)	38(26.0)	57(39.0)	27(18.5)	30(20.5)	17(11.6)	3.33	4.60**
	2급	115(100.0)	35(30.5)	11(9.6)	24(20.9)	27(23.5)	42(36.5)	25(21.7)	17(14.8)	11(9.6)	3.13	
	3급	39(100.0)	19(48.7)	11(28.2)	8(20.5)	6(15.4)	13(33.3)	10(25.6)	3(7.7)	1(2.6)	2.63	

p<.01, *p<.001

□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정도

○ 병원 이용 시 불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불편함’이 42.6%, ‘불편하지 않음’이 31.0%, 이용한적 없음 2.2%로 나타남

- 불편함이 '불편하지 않음보다' 11.6% 더 많이 나타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16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은 수준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병원 이용 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장애유형, 혼인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장애유형별 병원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시각장애인(3.84)이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인(2.50)이 가장 낮았게 나타남
 - 혼인유형별는 별거의 경우 불편정도가 5.0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20대는 2.79로 가장 낮았음

<표 4-49> 병원 이용 시 불편정도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불편함			보통이다	불편함	매우 불편함		이용한적 없음	평균	F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전체	300(100.0)	93(31.0)	31(10.3)	62(20.7)	71(23.7)	128(42.6)	85(28.3)	43(14.3)	8(2.7)	3.16		
장애유형	지체	78(100.0)	13(16.6)	3(3.8)	10(12.8)	24(30.8)	39(50.0)	28(35.9)	11(14.1)	2(2.6)	3.45	4.66***
	뇌병변	39(100.0)	16(41.0)	5(12.8)	11(28.2)	8(20.5)	12(30.7)	7(17.9)	5(12.8)	3(7.7)	2.89	
	시각	38(100.0)	7(18.5)	2(5.3)	5(13.2)	4(10.5)	27(71.0)	13(34.2)	14(36.8)	0(0)	3.84	
	청각언어	34(100.0)	7(20.6)	2(5.9)	5(14.7)	11(32.4)	16(47.0)	13(38.2)	3(8.8)	0(0)	3.29	
	내부기관	10(100.0)	4(40.0)	0(0)	4(40.0)	3(30.0)	3(30.0)	3(30.0)	0(0)	0(0)	2.90	
	지적	84(100.0)	37(44.1)	15(17.9)	22(26.2)	20(23.8)	26(30.9)	17(20.2)	9(10.7)	1(1.2)	2.80	
	자폐성	4(100.0)	2(50.0)	0(0)	2(50.0)	0(0)	1(25.0)	1(25.0)	0(0)	1(25.0)	2.67	
	정신	13(100.0)	7(53.9)	4(30.8)	3(23.1)	1(7.7)	4(30.8)	3(23.1)	1(7.7)	1(7.7)	2.50	
혼인상태	미혼	124(100.0)	54(43.5)	18(14.5)	36(29.0)	28(22.6)	38(30.7)	29(23.4)	9(7.3)	4(3.2)	2.79	5.66***
	기혼	121(100.0)	33(27.3)	12(9.9)	21(17.4)	30(24.8)	56(46.3)	36(29.8)	20(16.5)	2(1.7)	3.26	
	이혼	26(100.0)	3(11.5)	1(3.8)	2(7.7)	6(23.1)	16(61.5)	11(42.3)	5(19.2)	1(3.8)	3.68	
	사별	19(100.0)	2(10.5)	0(0)	2(10.5)	4(21.1)	12(63.1)	7(36.8)	5(26.3)	1(5.3)	3.83	
	별거	1(100.0)	0(0)	0(0)	0(0)	0(0)	1(100.0)	0(0)	1(100.0)	0(0)	5.00	
	기타	9(100.0)	1(11.1)	0(0)	1(11.1)	3(33.3)	5(55.5)	2(22.2)	3(33.3)	0(0)	3.78	

***p<.001

□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이용 시 불편 정도

○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 불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불편함’이 29.7%, ‘불편하지 않음’이 36.3%, 이용한적 없음 7.7%로 나타남

- ‘불편하지 않음’이 ‘불편함’보다 더 많음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2.95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장애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장애유형별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시각장애인(3.89)이 가장 높았고, 자폐아장애인(2.00)이 가장 낮았게 나타남

<표 4-50>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 불편정도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불편함		보통이다	불편함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이용한적 없음	평균	F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체	300(100.0)	109(36.3)	36(12.0)	73(24.3)	79(26.3)	89(29.7)	48(16.0)	41(13.7)	23(7.7)	2.95		
장애 유형	지체	78(100.0)	24(30.8)	7(9.0)	17(21.8)	27(34.6)	26(33.3)	15(19.2)	11(14.1)	1(1.3)	3.08	5.21***
	뇌병변	39(100.0)	16(41.0)	8(20.5)	8(20.5)	7(17.9)	10(25.6)	5(12.8)	5(12.8)	6(15.4)	2.73	
	시각	38(100.0)	3(7.9)	1(2.6)	2(5.3)	11(28.9)	22(57.9)	8(21.1)	14(36.8)	2(5.3)	3.89	
	청각언어	34(100.0)	17(50.0)	5(14.7)	12(35.3)	11(32.4)	6(17.6)	5(14.7)	1(2.9)	0(0)	2.56	
	내부기관	10(100.0)	4(40.0)	1(10.0)	3(30.0)	4(40.0)	1(10.0)	0(0)	1(10.0)	1(10.0)	2.67	
	지적	84(100.0)	34(40.5)	10(11.9)	24(28.6)	18(21.4)	22(26.2)	14(16.7)	8(9.5)	10(11.9)	2.81	
	자폐성	4(100.0)	3(75.0)	0(0)	3(75.0)	0(0)	0(0)	0(0)	0(0)	1(25.0)	2.00	
	정신	13(100.0)	8(61.6)	4(30.8)	4(30.8)	1(7.7)	2(15.4)	1(7.7)	1(7.7)	2(15.4)	2.18	

***p<.001

○ 학교 이용 시 불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불편함’이 28.0%, ‘불편하지 않음’이 30.0%, 이용한적 없음 18.7%로 나타남

- ‘불편하지 않음’이 ‘불편함’보다 더 많음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2.96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학교 이용 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혼인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별로 학교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50대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2.56으로 가장 낮았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 학교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시각장애인(4.03)이 가장 높았고, 자폐아장애인(1.75)이 가장 낮았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3.22로 불편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3급이 2.66으로 가장 낮았음
- 혼인유형별은 기타의 경우 불편정도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별거는 2.00로 가장 낮았음

〈표 4-51〉 학교 이용 시 불편정도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불편함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이용 한적 없음	평균	F
전체	300(100.0)	90(30.0)	39(13.0)	51(17.0)	70(23.3)	84(28.0)	49(16.3)	35(11.7)	56(18.7)	2.96	
연령	19~29세	65(100.0)	33(50.7)	14(21.5)	19(29.2)	13(20.0)	14(21.6)	7(10.8)	7(10.8)	5(7.7)	2.57
	30~39세	46(100.0)	21(45.6)	10(21.7)	11(23.9)	11(23.9)	9(19.6)	5(10.9)	4(8.7)	5(10.9)	2.56
	40~49세	86(100.0)	21(24.4)	8(9.3)	13(15.1)	22(25.6)	32(37.2)	22(25.6)	10(11.6)	11(12.8)	3.17
	50~59세	71(100.0)	10(14.1)	6(8.5)	4(5.6)	16(22.5)	23(32.4)	11(15.5)	12(16.9)	22(31.0)	3.39
	60~69세	19(100.0)	3(15.8)	1(5.3)	2(10.5)	6(31.6)	3(15.8)	1(5.3)	2(10.5)	7(36.8)	3.08
	70세이상	13(100.0)	2(15.4)	0(0)	2(15.4)	2(15.4)	3(23.1)	3(23.1)	0(0)	6(46.2)	3.14
장애 유형	지체	78(100.0)	9(11.5)	5(6.4)	4(5.1)	21(26.9)	31(39.7)	21(26.9)	10(12.8)	17(21.8)	3.44
	뇌병변	39(100.0)	12(30.7)	5(12.8)	7(17.9)	9(23.1)	8(20.5)	6(15.4)	2(5.1)	10(25.6)	2.76
	시각	38(100.0)	2(5.2)	1(2.6)	1(2.6)	7(18.4)	23(60.5)	10(26.3)	13(34.2)	6(15.8)	4.03
	청각언어	34(100.0)	9(26.5)	4(11.8)	5(14.7)	12(35.3)	4(11.7)	3(8.8)	1(2.9)	9(26.5)	2.68
	내부기관	10(100.0)	4(40.0)	0(0)	4(40.0)	3(30.0)	1(10.0)	0(0)	1(10.0)	2(20.0)	2.75
	지적	84(100.0)	44(52.4)	21(25.0)	23(27.4)	16(19.0)	15(17.8)	9(10.7)	6(7.1)	9(10.7)	2.41
	자폐성	4(100.0)	4(100.0)	1(25.0)	3(75.0)	0(0)	0(0)	0(0)	0(0)	0(0)	1.75
	정신	13(100.0)	6(46.2)	2(15.4)	4(30.8)	2(15.4)	2(15.4)	0(0)	2(15.4)	3(23.1)	2.60

3.71**

9.08***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불편함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이용 한적 없음	평균	F	
												장애 등급
2급	115(100.0)	42(36.5)	15(13.0)	27(23.5)	27(23.5)	26(22.7)	18(15.7)	8(7.0)	20(17.4)	2.76		
3급	39(100.0)	14(35.9)	11(28.2)	3(7.7)	11(28.2)	10(25.6)	7(17.9)	3(7.7)	4(10.3)	2.66		
혼인 상태	미혼	124(100.0)	62(50.0)	26(21.0)	36(29.0)	24(19.4)	24(19.4)	14(11.3)	10(8.1)	14(11.3)	2.51	5.91***
	기혼	121(100.0)	20(16.5)	11(9.1)	9(7.4)	31(25.6)	43(35.5)	27(22.3)	16(13.2)	27(22.3)	3.30	
	이혼	26(100.0)	3(11.5)	2(7.7)	1(3.8)	8(30.8)	9(34.6)	5(19.2)	4(15.4)	6(23.1)	3.40	
	사별	19(100.0)	4(21.1)	0(0)	4(21.1)	3(15.8)	4(21.1)	1(5.3)	3(15.8)	8(42.1)	3.27	
	별거	1(100.0)	1(100.0)	0(0)	1(100.0)	0(0)	0(0)	0(0)	0(0)	0(0)	2.00	
	기타	9(100.0)	0(0)	0(0)	0(0)	4(44.4)	4(44.4)	2(22.2)	2(22.2)	1(11.1)	3.75	

p<.01, *p<.001

○ 복지관 이용 시 불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불편함’이 15.7%, ‘불편하지 않음’이 53.7%, 이용한적 없음 5.7%로 나타남

- ‘불편하지 않음’이 ‘불편함’보다 약 3.5배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2.36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복지관 이용 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44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낮지만 서귀포시는 1.98로 제주시가 불편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4-52> 복지관 이용 시 불편정도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불편함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이용 한적 없음	평균	F	
												전체
지역	제주시	242(100.0)	120(49.6)	63(26.0)	57(23.6)	70(28.9)	41(17.0)	28(11.6)	13(5.4)	11(4.5)	2.44	6.73***
	서귀포시	58(100.0)	41(70.7)	20(34.5)	21(36.2)	5(8.6)	6(10.3)	4(6.9)	2(3.4)	6(10.3)	1.98	

***p<.001

□ 문화시설 이용 시 불편 정도

- 영화관 이용 시 불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불편함’이 38.7%, ‘불편하지 않음’이 24.0%, 이용한적 없음 20.3%로 나타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31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음은 수준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영화관 이용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 장애유형별 영화관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시각장애인(4.24)이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인(2.43)이 가장 낮게 나타남
 - .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3.62로 불편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2급과 3급이 각각 3.11과 2.83으로 평균점수보다 낮았음

〈표 4-53〉 영화관 이용 시 불편정도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불편함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이용한적 없음	평균	F	
												전체
장애유형	지체	78(100.0)	11(14.1)	4(5.1)	7(9.0)	17(21.8)	37(47.4)	21(26.9)	16(20.5)	13(16.7)	3.58	5.22***
	뇌병변	39(100.0)	9(23.1)	5(12.8)	4(10.3)	6(15.4)	16(41.0)	9(23.1)	7(17.9)	8(20.5)	3.29	
	시각	38(100.0)	3(7.9)	0(0)	3(7.9)	3(7.9)	23(60.5)	7(18.4)	16(42.1)	9(23.7)	4.24	
	청각언어	34(100.0)	4(11.7)	3(8.8)	1(2.9)	9(26.5)	12(35.2)	6(17.6)	6(17.6)	9(26.5)	3.44	
	내부기관	10(100.0)	5(50.0)	1(10.0)	4(40.0)	2(20.0)	2(20.0)	1(10.0)	1(10.0)	1(10.0)	2.67	
	지적	84(100.0)	33(39.3)	11(13.1)	22(26.2)	12(14.3)	24(28.6)	14(16.7)	10(11.9)	15(17.9)	2.86	
	자폐성	4(100.0)	2(50.0)	1(25.0)	1(25.0)	1(25.0)	1(25.0)	1(25.0)	0(0)	0(0)	2.50	
	정신	13(100.0)	5(38.5)	1(7.7)	4(30.8)	1(7.7)	1(7.7)	0(0)	1(7.7)	6(46.2)	2.43	
장애등급	1급	146(100.0)	25(17.1)	6(4.1)	19(13.0)	21(14.4)	66(45.2)	32(21.9)	34(23.3)	34(23.3)	3.62	.633**
	2급	115(100.0)	35(30.4)	13(11.3)	22(19.1)	23(20.0)	39(33.9)	19(16.5)	20(17.4)	18(15.7)	3.11	
	3급	39(100.0)	12(30.7)	7(17.9)	5(12.8)	7(17.9)	11(28.2)	8(20.5)	3(7.7)	9(23.1)	2.83	

p<.01, *p<.001

- 도서관 이용 시 불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불편함’이 29.4%, ‘불편하지 않음’이

18.3%, 이용한적 없음 36.0%로 나타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32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음은 수준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도서관 이용 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장애유형과 혼인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장애유형별 도서관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시각장애인(4.46)이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인(2.29)이 가장 낮았게 나타남
 - 혼인유형별는 기타의 경우 불편정도가 4.14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미혼이 2.92로 가장 낮았음

〈표 4-54〉 도서관 이용 시 불편정도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불편함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이용 한적 없음	평균	F	
전체	300(100.0)	55(18.3)	19(6.3)	36(12.0)	49(16.3)	88(29.4)	41(13.7)	47(15.7)	108(36.0)	3.32		
장애 유형	지체	78(100.0)	11(14.1)	5(6.4)	6(7.7)	20(25.6)	25(32.0)	15(19.2)	10(12.8)	22(28.2)	3.34	4.22***
	뇌병변	39(100.0)	10(25.6)	5(12.8)	5(12.8)	7(17.9)	11(28.2)	6(15.4)	5(12.8)	11(28.2)	3.04	
	시각	38(100.0)	1(2.6)	0(0)	1(2.6)	2(5.3)	21(55.3)	6(15.8)	15(39.5)	14(36.8)	4.46	
	청각언어	34(100.0)	5(14.7)	3(8.8)	2(5.9)	9(26.5)	11(32.4)	7(20.6)	4(11.8)	9(26.5)	3.28	
	내부기관	10(100.0)	2(20.0)	0(0)	2(20.0)	2(20.0)	1(10.0)	0(0)	1(10.0)	5(50.0)	3.00	
	지적	84(100.0)	18(21.5)	4(4.8)	14(16.7)	8(9.5)	17(20.2)	7(8.3)	10(11.9)	41(48.8)	3.12	
	자폐성	4(100.0)	2(50.0)	1(25.0)	1(25.0)	1(25.0)	1(25.0)	0(0)	1(25.0)	0(0)	2.75	
	정신	13(100.0)	6(46.2)	1(7.7)	5(38.5)	0(0)	1(7.7)	0(0)	1(7.7)	6(46.2)	2.29	
혼인 상태	미혼	124(100.0)	35(28.2)	12(9.7)	23(18.5)	15(12.1)	26(21.0)	11(8.9)	15(12.1)	48(38.7)	2.92	2.98*
	기혼	121(100.0)	18(14.9)	7(5.8)	11(9.1)	19(15.7)	44(36.3)	24(19.8)	20(16.5)	40(33.1)	3.48	
	이혼	26(100.0)	1(3.8)	0(0)	1(3.8)	8(30.8)	10(38.5)	4(15.4)	6(23.1)	7(26.9)	3.79	
	미혼	19(100.0)	1(5.3)	0(0)	1(5.3)	4(21.1)	3(15.8)	1(5.3)	2(10.5)	11(57.9)	3.50	
	기혼	1(100.0)	0(0)	0(0)	0(0)	0(0)	1(100.0)	1(100.0)	0(0)	0(0)	4.00	
	이혼	9(100.0)	0(0)	0(0)	0(0)	3(33.3)	4(44.4)	0(0)	4(44.4)	2(22.2)	4.14	

*p<.05, ***p<.001

2) 교통수단이용경험

-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단이용에 대한 경험을 버스, 택시, 장애인 콜택시로 나누어 이용의 불편정도를 조사함
- 조사척도는 5점 척도(1 전혀 불편하지 않음 ~ 5 매우 불편)를 사용함

□ 버스 이용 시 불편 정도

- 버스 이용 시 불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불편함’이 51.6%, ‘불편하지 않음’이 21.3%, 이용한적 없음 12.3%로 나타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62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음은 수준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버스 이용 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등급, 장애원인, 혼인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3.75로 서귀포시 3.06보다 불편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는 버스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50대가 4.13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2.78로 가장 낮았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 버스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지체장애인(4.61)이 가장 높았고, 지적장애인(2.71)이 가장 낮았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3.98로 불편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3급이 3.17로 가장 낮았음
 - 장애원인별로는 후천적 질환이 3.81로 불편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선천적 장애가 3.32로 가장 낮았음
 - 혼인유형별는 이혼이 불편정도가 4.38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별거가 3.00로 가장 낮았음

<표 4-55> 버스 이용 시 불편정도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불편함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이용 한적 없음	평균	F	
												전체
지역	제주시	242(100.0)	41(16.9)	18(7.4)	23(9.5)	42(17.4)	133(55.0)	46(19.0)	87(36.0)	26(10.7)	3.75	9.75**
	서귀포시	58(100.0)	23(39.6)	9(15.5)	14(24.1)	2(3.4)	22(37.9)	9(15.5)	13(22.4)	11(19.0)	3.06	
연령	19~29세	65(100.0)	28(43.1)	11(16.9)	17(26.2)	13(20.0)	17(26.1)	8(12.3)	9(13.8)	7(10.8)	2.78	9.45***
	30~39세	46(100.0)	14(30.4)	7(15.2)	7(15.2)	4(8.7)	21(45.7)	12(26.1)	9(19.6)	7(15.2)	3.23	
	40~49세	86(100.0)	11(12.8)	5(5.8)	6(7.0)	14(16.3)	52(60.5)	9(10.5)	43(50.0)	9(10.5)	4.03	
	50~59세	71(100.0)	6(8.4)	3(4.2)	3(4.2)	9(12.7)	46(64.8)	14(19.7)	32(45.1)	10(14.1)	4.13	
	60~69세	19(100.0)	3(15.8)	0(0)	3(15.8)	2(10.5)	12(63.2)	6(31.6)	6(31.6)	2(10.5)	3.88	
	70세이상	13(100.0)	2(15.4)	1(7.7)	1(7.7)	2(15.4)	7(53.9)	6(46.2)	1(7.7)	2(15.4)	3.45	
장애유형	지체	78(100.0)	2(2.6)	1(1.3)	1(1.3)	4(5.1)	63(80.8)	12(15.4)	51(65.4)	9(11.5)	4.61	21.52***
	뇌병변	39(100.0)	3(7.7)	2(5.1)	1(2.6)	6(15.4)	19(48.7)	6(15.4)	13(33.3)	11(28.2)	3.96	
	시각	38(100.0)	1(2.6)	1(2.6)	0(0)	3(7.9)	32(84.2)	11(28.9)	21(55.3)	2(5.3)	4.42	
	청각언어	34(100.0)	11(32.4)	4(11.8)	7(20.6)	13(38.2)	8(23.5)	7(20.6)	1(2.9)	2(5.9)	2.81	
	내부기관	10(100.0)	3(30.0)	1(10.0)	2(20.0)	2(20.0)	4(40.0)	1(10.0)	3(30.0)	1(10.0)	3.33	
	지적	84(100.0)	37(44.0)	17(20.2)	20(23.8)	15(17.9)	23(27.4)	14(16.7)	9(10.7)	9(10.7)	2.71	
	자폐성	4(100.0)	1(25.0)	0(0)	1(25.0)	0(0)	2(50.0)	1(25.0)	1(25.0)	1(25.0)	3.67	
	정신	13(100.0)	6(46.2)	1(7.7)	5(38.5)	1(7.7)	4(30.8)	3(23.1)	1(7.7)	2(15.4)	2.82	
장애등급	1급	146(100.0)	16(11.0)	7(4.8)	9(6.2)	20(13.7)	83(56.8)	26(17.8)	57(39.0)	27(18.5)	3.98	8.14***
	2급	115(100.0)	36(31.3)	13(11.3)	23(20.0)	18(15.7)	54(47.0)	18(15.7)	36(31.3)	7(6.1)	3.38	
	3급	39(100.0)	12(30.7)	7(17.9)	5(12.8)	6(15.4)	18(46.1)	11(28.2)	7(17.9)	3(7.7)	3.17	
장애원인	선천적	108(100.0)	32(29.6)	15(13.9)	17(15.7)	14(13.0)	49(45.3)	21(19.4)	28(25.9)	13(12.0)	3.32	3.82*
	질환	147(100.0)	23(15.7)	7(4.8)	16(10.9)	27(18.4)	79(53.7)	23(15.6)	56(38.1)	18(12.2)	3.81	
	사고	45(100.0)	9(20.0)	5(11.1)	4(8.9)	3(6.7)	27(60.0)	11(24.4)	16(35.6)	6(13.3)	3.74	
혼인상태	미혼	124(100.0)	42(33.9)	17(13.7)	25(20.2)	13(10.5)	51(41.1)	23(18.5)	28(22.6)	18(14.5)	3.19	4.50***
	기혼	121(100.0)	18(14.9)	10(8.3)	8(6.6)	19(15.7)	74(61.1)	23(19.0)	51(42.1)	10(8.3)	3.87	
	이혼	26(100.0)	1(3.8)	0(0)	1(3.8)	4(15.4)	16(61.5)	2(7.7)	14(53.8)	5(19.2)	4.38	
	사별	19(100.0)	2(10.5)	0(0)	2(10.5)	4(21.1)	9(47.4)	6(31.6)	3(15.8)	4(21.1)	3.67	
	별거	1(100.0)	0(0)	0(0)	0(0)	1(100.0)	0(0)	0(0)	0(0)	0(0)	3.00	
	기타	9(100.0)	1(11.1)	0(0)	1(11.1)	3(33.3)	5(55.5)	1(11.1)	4(44.4)	0(0)	3.89	

*p<.05, **p<.01, ***p<.001

□ 택시 이용 시 불편 정도

○ 택시 이용 시 불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불편함’이 38.0%, ‘불편하지 않음’이 27.3%, 이용한적 없음 13.3%로 나타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19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다소 높음은 수준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택시 이용 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혼인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별로는 택시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50대가 3.7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2.69로 가장 낮았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 택시 이용 시 불편한 정도에 있어 시각장애인(3.86)이 가장 높았고, 지적장애인(2.54)이 가장 낮았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3.53로 불편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3급이 2.83로 가장 낮았음
- 혼인유형별는 기타가 불편정도가 4.43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별거가 2.00로 가장 낮았음

〈표 4-56〉 택시 이용 시 불편정도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불편함			이용한적 없음	평균	F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불편함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전체	300(100.0)	82(27.3)	28(9.3)	54(18.0)	64(21.3)	114(38.0)	69(23.0)	45(15.0)	40(13.3)	3.19		
연령	19~29세	65(100.0)	27(41.5)	9(13.8)	18(27.7)	16(24.6)	14(21.5)	8(12.3)	6(9.2)	8(12.3)	2.72	6.28***
	30~39세	46(100.0)	21(45.6)	6(13.0)	15(32.6)	6(13.0)	12(26.1)	9(19.6)	3(6.5)	7(15.2)	2.69	
	40~49세	86(100.0)	18(21.0)	9(10.5)	9(10.5)	21(24.4)	43(50.0)	30(34.9)	13(15.1)	4(4.7)	3.35	
	50~59세	71(100.0)	8(11.3)	2(2.8)	6(8.5)	15(21.1)	35(49.3)	17(23.9)	18(25.4)	13(18.3)	3.74	
	60~69세	19(100.0)	6(31.6)	1(5.3)	5(26.3)	1(5.3)	9(47.4)	4(21.1)	5(26.3)	3(15.8)	3.44	
	70세이상	13(100.0)	2(15.4)	1(7.7)	1(7.7)	5(38.5)	1(7.7)	1(7.7)	0(0)	5(38.5)	2.75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전혀	별로	보통이다	불편함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이용 한적 없음	평균	F	
			불편하지 않음	불편하지 않음								
장애 유형	지체	78(100.0)	9(11.6)	2(2.6)	7(9.0)	13(16.7)	49(62.8)	29(37.2)	20(25.6)	7(9.0)	3.82	9.32***
	뇌병변	39(100.0)	11(28.2)	4(10.3)	7(17.9)	11(28.2)	10(25.6)	7(17.9)	3(7.7)	7(17.9)	2.94	
	시각	38(100.0)	4(10.6)	2(5.3)	2(5.3)	7(18.4)	25(65.8)	13(34.2)	12(31.6)	2(5.3)	3.86	
	청각언어	34(100.0)	9(26.4)	1(2.9)	8(23.5)	11(32.4)	9(26.5)	7(20.6)	2(5.9)	5(14.7)	3.03	
	내부기관	10(100.0)	5(50.0)	1(10.0)	4(40.0)	2(20.0)	2(20.0)	1(10.0)	1(10.0)	1(10.0)	2.67	
	지적	84(100.0)	36(42.9)	15(17.9)	21(25.0)	20(23.8)	13(15.4)	7(8.3)	6(7.1)	15(17.9)	2.54	
	자폐성	4(100.0)	1(25.0)	0(0)	1(25.0)	0(0)	2(50.0)	2(50.0)	0(0)	1(25.0)	3.33	
정신	13(100.0)	7(53.9)	3(23.1)	4(30.8)	0(0)	4(30.8)	3(23.1)	1(7.7)	2(15.4)	2.55		
장애 등급	1급	146(100.0)	26(17.8)	6(4.1)	20(13.7)	30(20.5)	65(44.5)	34(23.3)	31(21.2)	25(17.1)	3.53	8.94***
	2급	115(100.0)	43(37.4)	12(10.4)	31(27.0)	25(21.7)	35(30.5)	24(20.9)	11(9.6)	12(10.4)	2.91	
	3급	39(100.0)	13(33.3)	10(25.6)	3(7.7)	9(23.1)	14(35.9)	11(28.2)	3(7.7)	3(7.7)	2.83	
혼인 상태	미혼	124(100.0)	46(37.1)	17(13.7)	29(23.4)	25(20.2)	33(26.6)	23(18.5)	10(8.1)	20(16.1)	2.81	4.97***
	기혼	121(100.0)	28(23.2)	10(8.3)	18(14.9)	27(22.3)	54(44.7)	33(27.3)	21(17.4)	12(9.9)	3.34	
	이혼	26(100.0)	5(19.2)	1(3.8)	4(15.4)	5(19.2)	15(57.7)	8(30.8)	7(26.9)	1(3.8)	3.64	
	사별	19(100.0)	2(10.5)	0(0)	2(10.5)	6(31.6)	6(31.6)	3(15.8)	3(15.8)	5(26.3)	3.50	
	별거	1(100.0)	1(100.0)	0(0)	1(100.0)	0(0)	0(0)	0(0)	0(0)	0(0)	2.00	
	기타	9(100.0)	0(0)	0(0)	0(0)	1(11.1)	6(66.6)	2(22.2)	4(44.4)	2(22.2)	4.43	

***p<.001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불편 정도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불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불편함'이 16.0%, '불편하지 않음'이 31.3%, 이용한적 없음 36.3%로 나타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2.62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택시 이용 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혼인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혼인유형별는 별거가 불편정도가 5.00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기혼이 2.40으로 가장 낮았음

<표 4-57>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불편정도

구분	계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불편함			이용 한적 없음	평균	F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전체	300(100.0)	94(31.3)	48(16.0)	46(15.3)	49(16.3)	48(16.0)	26(8.7)	22(7.3)	109(36.3)	2.62		
혼인 상태	미혼	124(100.0)	38(30.6)	15(12.1)	23(18.5)	15(12.1)	16(12.9)	9(7.3)	7(5.6)	55(44.4)	2.57	3.50**
	기혼	121(100.0)	44(36.3)	27(22.3)	17(14.0)	22(18.2)	16(13.3)	10(8.3)	6(5.0)	39(32.2)	2.40	
	이혼	26(100.0)	9(34.6)	5(19.2)	4(15.4)	8(30.8)	5(19.2)	2(7.7)	3(11.5)	4(15.4)	2.73	
	사별	19(100.0)	1(5.3)	1(5.3)	0(0)	3(15.8)	7(36.9)	4(21.1)	3(15.8)	8(42.1)	3.73	
	별거	1(100.0)	0(0)	0(0)	0(0)	0(0)	1(100.0)	0(0)	1(100.0)	0(0)	5.00	
	기타	9(100.0)	2(22.2)	0(0)	2(22.2)	1(11.1)	3(33.3)	1(11.1)	2(22.2)	3(33.3)	3.50	

**p<.01

○ 요약하면, 여성 중증장애인이 가장 불편해하는 교통수단은 버스로 나타났으며, 가장 편한 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로 나타남.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다. 여성폭력피해 경험

1) 가정 내 폭력피해

□ 가정폭력 피해경험

○ 가정 내 폭력 경험(평생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300명중 16.7%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유형별로 가정폭력 경험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폐성장애인이 25.0%로 가장 많았음.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 그 다음으로는 시각장애인 23.7%, 정신장애인 23.1%, 지체장애인 19.2%, 지적 장애인 14.3%, 뇌병변장애인 7.7%순으로 나타남

〈표 4-58〉 가정 내 폭력 경험

(단위 : 명, %)

구분		폭력당한 경험 있다	폭력당한 경험 없다	계	χ^2
전체		50(16.7)	250(83.3)	300(100.0)	
장애 유형	지체	15(19.2)	63(80.8)	78(100.0)	7.28
	뇌병변	3(7.7)	36(92.3)	39(100.0)	
	시각	9(23.7)	29(76.3)	38(100.0)	
	청각언어	7(20.6)	27(79.4)	34(100.0)	
	내부기관	0(0)	10(100.0)	10(100.0)	
	지적	12(14.3)	72(85.7)	84(100.0)	
	자폐성	1(25.0)	3(75.0)	4(100.0)	
	정신	3(23.1)	10(76.9)	13(100.0)	

□ 가정 내 폭력 피해유형

- 이들의 가정 내 폭력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 40.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신체적 폭력 32.9%, 경제적 폭력 18.6%, 방임 5.7%, 성폭력 2.9%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가정 내 폭력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체·뇌병변·시각·정신 장애인의 경우는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았음

〈표 4-59〉 가정 내 폭력 유형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방임	성폭력	계
전체		23(32.9)	28(40.0)	13(18.6)	4(5.7)	2(2.9)	70(100.0)
장애 유형	지체	6(22.2)	12(44.4)	6(22.2)	3(11.1)	0(0.0)	27(100.0)
	뇌병변	1(25.0)	2(50.0)	1(25.0)	0(0.0)	0(0.0)	4(100.0)
	시각	1(8.3)	8(66.7)	3(25.0)	0(0.0)	0(0.0)	12(100.0)
	청각언어	3(42.9)	2(28.6)	2(28.6)	0(0.0)	0(0.0)	7(100.0)
	지적	10(71.4)	1(7.1)	1(7.1)	0(0.0)	2(14.3)	14(100.0)
	자폐성	1(50.0)	1(50.0)	0(0.0)	0(0.0)	0(0.0)	2(100.0)
	정신	1(25.0)	2(50.0)	0(0.0)	1(25.0)	0(0.0)	4(100.0)

2) 가정 외 폭력피해

□ 가정 외 폭력 피해경험

-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가정 외 폭력 피해경험(평생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300명중 14.7%가 가정 외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유형별로 가정 외 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본 결과 정신장애인이 38.5%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36.8%, 청각장애인 11.8%, 지적장애인 10.7%, 지체장애인 9.0%, 뇌병변장애인 7.7%순으로 나타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나타남

<표 4-60> 가정 외 폭력 경험

(단위 : 명, %)

구분		폭력당한 경험 있다	폭력당한 경험 없다	계	χ ²
전체		42(14.0)	258(86.0)	300(100.0)	29.02***
장애 유형	지체	7(9.0)	71(91.0)	78(100.0)	
	뇌병변	3(7.7)	36(92.3)	39(100.0)	
	시각	14(36.8)	24(63.2)	38(100.0)	
	청각언어	4(11.8)	30(88.2)	34(100.0)	
	내부기관	0(0)	10(100.0)	10(100.0)	
	지적	9(10.7)	75(89.3)	84(100.0)	
	자폐성	0(0)	4(100.0)	4(100.0)	
	정신	5(38.5)	8(61.5)	13(100.0)	

***p<.001

□ 가정 외 폭력 피해유형

- 가정 외 폭력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폭력이 59.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경제적 폭력 19.1%, 신체적 폭력 17.0%, 방임 2.1%, 성폭력 2.1%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 장애인의 경우는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았음

〈표 4-61〉 가정 외 폭력 유형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방임	성폭력	계
전체		8(17.0)	28(59.6)	9(19.1)	1(2.1)	1(2.1)	47(100.0)
장애 유형	지체	3(25.0)	5(41.7)	3(25.0)	1(8.3)	0(0.0)	12(100.0)
	뇌병변	1(25.0)	2(50.0)	1(25.0)	0(0.0)	0(0.0)	4(100.0)
	시각	1(6.3)	13(81.3)	2(12.5)	0(0.0)	0(0.0)	16(100.0)
	청각언어	0(0.0)	2(66.7)	1(33.3)	0(0.0)	0(0.0)	3(100.0)
	지적	3(37.5)	2(25.0)	2(25.0)	0(0.0)	1(12.5)	8(100.0)
	정신	0(0.0)	4(100.0)	0(0.0)	0(0.0)	0(0.0)	4(100.0)

3) 가정 내·외 폭력 피해빈도

- 전체 응답자 중 가정 내 폭력 피해경험(평생경험)이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빈도를 조사한 결과 '1년에 한두번'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한 달에 한두번' 22.0%, '거의 매일' 18.0%, '한주에 한두번' 12.0%, '3개월에 한두번' 10.0%, '6개월에 한두번' 4.0% 순으로 나타남

〈표 4-62〉 가정 내 폭력 빈도

(단위 : 명, %)

구분	거의 매일	한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3개월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1년에 한두번	계
전체	9(18.0)	6(12.0)	11(22.0)	5(10.0)	2(4.0)	17(34.0)	50(100.0)

- 가정 외 폭력 피해경험(평생경험)이 있는 42명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한 41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빈도를 조사한 결과 '1년에 한두번'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한 달에 한두번' 17.1%, '6개월에 한두번' 14.6%, '한주에 한두번' 12.2%, '3개월에 한두번' 9.8%, '거의 매일' 7.3% 순으로 나타남

<표 4-63> 가정 외 폭력 빈도

(단위 : 명, %)

구분	거의매일	한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3개월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1년에 한두번	계
전체	3(7.3)	5(12.2)	7(17.1)	4(9.8)	6(14.6)	16(39.0)	41(100.0)

4) 폭력가해자

- 가정 내·외 폭력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에게 폭력가해자가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배우자'가 2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17.0%, '이웃' 13.0%, '아버지' 11.0%, '형제·자매' 10.0%, '어머니' 8.0%, '배우자가족' 7.0%, '직장상사 및 동료' 6.0%, '조부모' 2.0%, '자녀'와 '손자녀' 각각 1.0%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청각언어·지적장애인의 경우 배우자가 각각 37.0%, 27.3%, 21.7%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기타'가 40.0%로 가장 많았음. 시각·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이웃'이 각각 30.8%, 28.6%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인의 경우는 '어머니'가 가장 많았음

<표 4-64> 폭력 가해자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가족	이웃	직장상사 및 동료	기타	계	
전체	24(24.0)	11(11.0)	8(8.0)	1(1.0)	10(10.0)	2(2.0)	1(1.0)	7(7.0)	13(13.0)	6(6.0)	17(17.0)	100(100.0)	
장애유형	지체	10(37.0)	3(11.1)	2(7.4)	1(3.7)	3(11.1)	1(3.7)	1(3.7)	2(7.4)	1(3.7)	0(0.0)	3(11.1)	27(100.0)
	뇌병변	1(20.0)	0(0.0)	0(0.0)	0(0.0)	1(20.0)	0(0.0)	0(0.0)	1(20.0)	0(0.0)	0(0.0)	2(40.0)	5(100.0)
	시각	5(19.2)	2(7.7)	2(7.7)	0(0.0)	1(3.8)	0(0.0)	0(0.0)	2(7.7)	8(30.8)	1(3.8)	5(19.2)	26(100.0)
	청각언어	3(27.3)	1(9.1)	0(0.0)	0(0.0)	1(9.1)	0(0.0)	0(0.0)	2(18.2)	1(9.1)	2(18.2)	1(9.1)	11(100.0)
	지적	5(21.7)	4(17.4)	2(8.7)	0(0.0)	3(13.0)	1(4.3)	0(0.0)	0(0.0)	1(4.3)	2(8.7)	5(21.7)	23(100.0)
	자폐성	0(0.0)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정신	0(0.0)	1(14.3)	1(14.3)	0(0.0)	1(14.3)	0(0.0)	0(0.0)	0(0.0)	2(28.6)	1(14.3)	1(14.3)	7(100.0)

- 요약하면, 제주지역 가정 내·외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가정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가정 외에서는 이웃에게서 폭력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음을 알 수 있음.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여성장애인 가정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대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5) 가정 내·외 폭력피해 대응

- ‘그냥 맞으면서 참는다’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27.9%, ‘가족 및 이웃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11.8%, ‘전문기관, 경찰, 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 10.3% 순으로 나타남

〈표 4-65〉 폭력상황 대응방식

(단위 : 명, %)

구분	그냥 맞으면서 참는다	가족 및 이웃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전문기관, 경찰, 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	기타	계
전체	34(50.0)	8(11.8)	7(10.3)	19(27.9)	68(100.0)

6)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인지도

- 전체 응답자 300명에게 제주지역 가정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인식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다’가 50.3%, ‘모른다’가 49.7%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우 ‘안다’ 71.8%로 다른 장애인들보다 많았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안다’ 7.7%로 가장 적었음. 자폐성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도 ‘안다’가 각각 25.0%, 26.5%로 나타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6>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인지도

(단위 : 명, %)

구분		안다	모른다	계	χ^2
전체		151(50.3)	149(49.7)	300(100.0)	
장애 유형	지체	56(71.8)	22(28.2)	78(100.0)	36.44 ***
	뇌병변	22(56.4)	17(43.6)	39(100.0)	
	시각	21(55.3)	17(44.7)	38(100.0)	
	청각언어	9(26.5)	25(73.5)	34(100.0)	
	내부기관	6(60.0)	4(40.0)	10(100.0)	
	지적	35(41.7)	49(58.3)	84(100.0)	
	자폐성	1(25.0)	3(75.0)	4(100.0)	
	정신	1(7.7)	12(92.3)	13(100.0)	

***p<.001

- 특별히,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라. 안전관련 정책지원 욕구

1) 시설이용을 위한 지원정책

- 전체응답자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298명에게 각종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함에 있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및 지원완비(저상버스확충, 수화통역, 점자안내 등)가 응답자의 36.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이 '장애인 활동보조원 지원 강화' 30.9%, '각종 시설관련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교육 강화' 21.5%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에 따라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장애인은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및 지원완비(저상버스확충, 수화통역, 점자안내 등)'을 각각 42.3%, 33.3%, 34.2%로 가장 많이 원했으며, 내부기관·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활동보조원 지원 강화'를 각각 40.0%, 30.5%, 50.0%, 38.5%로 가장 많이 원했음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표 4-67> 각종 시설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할 점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및 지원 완비	각종 시설 관련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교육 강화	장애인 활동보조원 지원 강화	배달 및 방문 서비스 활성화	기타	계	χ ²	
전체	110(36.9)	64(21.5)	92(30.9)	22(7.4)	10(3.4)	298(100.0)		
장애 유형	지체	33(42.3)	15(19.2)	26(33.3)	4(5.1)	0(0)	78(100.0)	54.88**
	뇌병변	13(33.3)	9(23.1)	13(33.3)	2(5.1)	2(5.1)	39(100.0)	
	시각	13(34.2)	10(26.3)	12(31.6)	3(7.9)	0(0)	38(100.0)	
	청각언어	26(76.5)	1(2.9)	5(14.7)	2(5.9)	0(0)	34(100.0)	
	내부기관	2(20.0)	4(40.0)	4(40.0)	0(0)	0(0)	10(100.0)	
	지적	19(23.2)	21(25.6)	25(30.5)	10(12.2)	7(8.5)	82(100.0)	
	자폐성	1(25.0)	0(0)	2(50.0)	1(25.0)	0(0)	4(100.0)	
	정신	3(23.1)	4(30.8)	5(38.5)	0(0)	1(7.7)	13(100.0)	

**p<.001

2) 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 상담소 필요성

○ 전체 응답자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한 294명에게 제주지역에 장애인 대상 폭력 관련 상담소가 필요한지 의향을 물어 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60.9%로 가장 많았음

- 조사척도는 5점 척도(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 매우 필요하다)를 사용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4.39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표 4-68> 장애인 대상 폭력관련 상담소 필요성

(단위 : 명, %,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평균
전체	5(1.7)	9(3.1)	32(10.9)	69(23.5)	179(60.9)	294(100.0)	4.39

7. 일상생활/여가·문화/교육 실태

가. 일상생활

1) 일상생활 중 남의 도움을 받는 정도

□ 남의 도움을 받는 정도

- 전체 응답자(300)들은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3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20.0%,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다’ 18.7%,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5.3%, ‘모두 혼자 할 수 있다’ 13.0% 순으로 응답함
- 장애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지체장애인의 경우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42.6%로 가장 많았음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와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각각 33.3%로 가장 많았음
 - 시각·지적장애인도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각각 36.8%, 28.6%로 가장 많았음
 - 청각언어·내부기관·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다’가 각각 44.1%, 50.0%, 30.8%로 나타남
 -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는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와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각각 50.0%로 나타남

〈표 4-69〉 일상생활시 타인 도움 필요정도

(단위 : 명, %)

구분	모두 혼자 할 수 있다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다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계	χ^2
전체	39(13.0)	56(18.7)	99(33.0)	60(20.0)	46(15.3)	300(100.0)	

구분	모두 혼자 할 수 있다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다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계	χ^2	
장애 유형	지체	2(2.6)	10(12.8)	34(43.6)	22(28.2)	10(12.8)	78(100.0)	86.07***
	뇌병변	5(12.8)	1(2.6)	13(33.3)	7(17.9)	13(33.3)	39(100.0)	
	시각	1(2.6)	2(5.3)	14(36.8)	11(28.9)	10(26.3)	38(100.0)	
	청각언어	7(20.6)	15(44.1)	8(23.5)	4(11.8)	0(0)	34(100.0)	
	내부기관	1(10.0)	5(50.0)	2(20.0)	0(0)	2(20.0)	10(100.0)	
	지적	20(23.8)	19(22.6)	24(28.6)	12(14.3)	9(10.7)	84(100.0)	
	자폐성	0(0)	0(0)	2(50.0)	2(50.0)	0(0)	4(100.0)	
정신	3(23.1)	4(30.8)	2(15.4)	2(15.4)	2(15.4)	13(100.0)		

***p<.001

2) 일상생활 중 도와주는 사람

□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 일상생활 중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 '활동보조인'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22.0%, '배우자' 18.3%, '자녀' 10.0%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각각 39.7%, 35.9%, 44.7%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도와주는 사람 없다'가 각각 20.6%로 가장 많았음. 내부기관장애인은 '배우자'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부모'가 각각 45.2%, 100.0%, 38.5%로 가장 많았음

〈표 4-70〉 일상생활시 조력자

(단위 : 명, %)

구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활동보조인	친척	이웃	기타	없다	계	χ^2
전체	55(18.3)	30(10.0)	26(8.7)	66(22.0)	86(28.7)	3(1.0)	7(2.3)	5(1.7)	22(7.3)	300(100.0)	

구분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부모	활동 보조인	친척	이웃	기타	없다	계	χ ²	
장애 유형	지체	24(30.8)	9(11.5)	4(5.1)	4(5.1)	31(39.7)	0(0)	1(1.3)	1(1.3)	4(5.1)	78(100.0)	142.5***
	뇌병변	7(17.9)	3(7.7)	3(7.7)	10(25.6)	14(35.9)	0(0)	0(0)	0(0)	2(5.1)	39(100.0)	
	시각	6(15.8)	7(18.4)	2(5.3)	2(5.3)	17(44.7)	1(2.6)	0(0)	1(2.6)	2(5.3)	38(100.0)	
	청각언어	7(20.6)	7(20.6)	2(5.9)	2(5.9)	5(14.7)	1(2.9)	1(2.9)	2(5.9)	7(20.6)	34(100.0)	
	내부기관	3(30.0)	1(10.0)	1(10.0)	1(10.0)	2(20.0)	0(0)	2(20.0)	0(0)	0(0)	10(100.0)	
	지적	7(8.3)	1(1.2)	14(16.7)	38(45.2)	14(16.7)	1(1.2)	2(2.4)	1(1.2)	6(7.1)	84(100.0)	
	자폐성	0(0)	0(0)	0(0)	4(100.0)	0(0)	0(0)	0(0)	0(0)	0(0)	4(100.0)	
	정신	1(7.7)	2(15.4)	0(0)	5(38.5)	3(23.1)	0(0)	1(7.7)	0(0)	1(7.7)	13(100.0)	

***p<.001

□ 일상생활을 도와줄 외부인 이용의향

○ 일상생활을 도와줄 외부인 이용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가 57.0%로 가장 많았으며, ‘비용이 들더라도 이용하겠다’ 23.3%, ‘이용할 의향이 없다’가 19.7%로 나타남

<표 4-71> 일상생활시 외부조력자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용하겠다	이용할 의향이 없다	계
전체	171(57.0)	70(23.3)	59(19.7)	300(100.0)

3) 외출 횟수

○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횟수를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주 3~4회’ 31.7%, ‘주1회’ 10.3%, ‘월1~2회’ 8.3%, ‘전혀 나간적 없음’도 2.7%로 나타남

- ‘전혀 나간 적 없음’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내부기관장애인이 1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내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순으로 나타남

- 요약하면, 응답자의 47.0%는 거의 매일 외출을 하고 있지만, 월 1~2회 또는 전혀 나간 적이 없는 경우도 11.0%로 나타났음. 이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필요함

〈표 4-72〉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단위 : 명, %)

구분	거의 매일	주 3~4회	주 1회	월 1~2회	전혀 나간 적이 없음	계	χ^2	
전체	141(47.0)	95(31.7)	31(10.3)	25(8.3)	8(2.7)	300(100.0)		
장애 유형	지체	29(37.2)	29(37.2)	9(11.5)	10(12.8)	1(1.3)	78(100.0)	40.16
	뇌병변	11(28.2)	15(38.5)	8(20.5)	4(10.3)	1(2.6)	39(100.0)	
	시각	20(52.6)	15(39.5)	3(7.9)	0(0)	0(0)	38(100.0)	
	청각언어	16(47.1)	13(38.2)	2(5.9)	3(8.8)	0(0)	34(100.0)	
	내부기관	4(40.0)	3(30.0)	0(0)	2(20.0)	1(10.0)	10(100.0)	
	지적	52(61.9)	16(19.0)	7(8.3)	5(6.0)	4(4.8)	84(100.0)	
	자폐성	2(50.0)	1(25.0)	0(0)	1(25.0)	0(0)	4(100.0)	
	정신	7(53.8)	3(23.1)	2(15.4)	0(0)	1(7.7)	13(100.0)	

나. 여가·문화생활

1) 활동빈도

- 전체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여가·문화 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연극, 영화, 공연 관람,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도내 여행, 타 지역 또는 해외 여행, 친구나 친척모임 참여,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컴퓨터, 외국어, 미술치료, 인문학 강좌 등)로 나누어 조사함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극, 영화, 공연 관람의 경우 '없음'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 ‘6개월에 한번정도’가 19.7%, ‘1년에 한번정도’ 18.0%, ‘3개월에 한번정도’ 15.0%, ‘1개월에 한번 또는 그 이상’ 13.0% 순임
-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의 경우 ‘1개월에 한번 또는 그 이상’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없음’이 42.7%, ‘3개월에 한번정도’ 4.0%, ‘1년에 한번정도’ 3.3%, ‘6개월에 한번정도’가 1.7% 순임
- 도내 여행의 경우 ‘없음’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에 한번정도’ 27.3%, ‘6개월에 한번정도’가 14.7%, ‘1개월에 한번 또는 그 이상’ 9.3%, ‘3개월에 한번정도’ 8.7% 순임
- 타 지역 또는 해외여행의 경우 ‘없음’이 7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에 한번정도’ 17.7%, ‘6개월에 한번정도’가 5.7%, ‘3개월에 한번정도’ 3.7%, 1개월에 한번 또는 그 이상 1.3% 순임
- 친구나 친척모임 참여의 경우 ‘없음’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개월에 한번 또는 그 이상 26.7%, ‘3개월에 한번정도’ 16.0%, ‘1년에 한번정도’ 13.3%, ‘6개월에 한번정도’가 10.3% 순임
-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컴퓨터, 외국어, 미술치료, 인문학 강좌 등)의 경우 ‘없음’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개월에 한번 또는 그 이상’ 25.3%, ‘1년에 한번정도’ 13.3%, ‘3개월에 한번정도’ 6.3%, ‘6개월에 한번정도’가 6.0% 순임

〈표 4-73〉 여가 문화생활 빈도

(단위 : 명, %)

구분		1개월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3개월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전혀 없다	계
항 목	연극, 영화, 공연 관람	39(13.0)	45(15.0)	59(19.7)	54(18.0)	103(34.3)	300(100.0)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145(48.3)	12(4.0)	5(1.7)	10(3.3)	128(42.7)	300(100.0)
	도내 여행	28(9.3)	26(8.7)	44(14.7)	82(27.3)	120(40.0)	300(100.0)
	타 지역 또는 해외여행	4(1.3)	11(3.7)	17(5.7)	53(17.7)	215(71.7)	300(100.0)
	친구나 친척모임 참여	80(26.7)	48(16.0)	31(10.3)	40(13.3)	101(33.7)	300(100.0)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76(25.3)	19(6.3)	18(6.0)	40(13.3)	147(49.0)	300(100.0)

2) 만족도

- 전체 응답자 300명에게 여가 및 문화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보통'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이 36.0%, '만족'이 23.7%로 나타남
- 조사척도는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를 사용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2.86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임

〈표 4-74〉 여가 문화생활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300(100.0)	108(36.0)	40(13.3)	68(22.7)	121(40.3)	71(23.7)	36(12.0)	35(11.7)	2.86

다. 교육실태

1) 최종학교의 종류

- 전체 응답자의 최종학교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교가 6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특수학교 25.8%,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4.6%, 기타 4.2% 순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장애유형과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뇌병변·시각·내부기관·정신장애인은 '일반학교'졸업이 각각 86.1%, 80.6%, 77.8%, 72.7%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지적장애인의 경우 '특수학교'졸업이 각각 53.1%, 43.4%로 가장 많았음. 자폐성장애인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졸업이 각각 50.0%로 나타났음
 - 학력별로 무학의 66.7%는 '일반학교'를 다닌 적이 있으며, 초졸은 64.1%가 '일반학교' 그리고 25.6%는 '특수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남. 중졸은 69.7%가 '일반학교' 그리고 21.2%는 '특수학교'를, 고졸은 59.6%가 '일반학교'를 그리고

31.5%는 '특수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졸과 4년제졸은 각각 78.9%와 93.3%가 '일반학교'를 졸업했으며, 대학원졸도 75.0%가 '일반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수학교의 경우 고졸 이전까지는 졸업이 높지만 대학이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5〉 최종학교종류

(단위: 명, %)

구분		일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기타	계	χ ²
전체		185(65.4)	13(4.6)	73(25.8)	12(4.2)	283(100.0)	
장애 유형	지체	62(86.1)	0(0)	3(4.2)	7(9.7)	72(100.0)	103.3***
	뇌병변	29(80.6)	0(0)	7(19.4)	0(0)	36(100.0)	
	시각	28(77.8)	1(2.8)	5(13.9)	2(5.6)	36(100.0)	
	청각언어	15(46.9)	0(0)	17(53.1)	0(0)	32(100.0)	
	내부기관	9(100.0)	0(0)	0(0)	0(0)	9(100.0)	
	지적	34(41.0)	10(12.0)	36(43.4)	3(3.6)	83(100.0)	
	자폐성	0(0)	2(50.0)	2(50.0)	0(0)	4(100.0)	
	정신	8(72.7)	0(0)	3(27.3)	0(0)	11(100.0)	
학력	무학	2(66.7)	0(0)	1(33.3)	0(0)	3(100.0)	52.27***
	초졸	25(64.1)	1(2.6)	10(25.6)	3(7.7)	39(100.0)	
	중졸	23(69.7)	0(0)	7(21.2)	3(9.1)	33(100.0)	
	고졸	87(59.6)	12(8.2)	46(31.5)	1(.7)	146(100.0)	
	전문대졸	15(78.9)	0(0)	3(15.8)	1(5.3)	19(100.0)	
	4년제졸	28(93.3)	0(0)	1(3.3)	1(3.3)	30(100.0)	
	대학원졸	3(75.0)	0(0)	1(25.0)	0(0)	4(100.0)	
	기타	2(22.2)	0(0)	4(44.4)	3(33.3)	9(100.0)	

***p<.001

2)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 전체응답자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298명에게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이 1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취업지원교육’ 18.5%,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교육’ 12.8%,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12.1%, ‘한글교육’ 10.7%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이 21.8%로 가장 많았음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컴퓨터 및 인터넷교육’와 ‘문화예술교육’이 각각 17.9%로 가장 많았음
- 시각·지적장애인은 ‘취업지원교육’ 18.5%로 가장 많았음
- 청각언어장애인은 ‘한글교육’ 26.5%로 가장 많았음
- 내부기관장애인은 ‘인문교양교육’ 30.0%로 가장 많았음
- 자폐성장애인의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이 22.6%로 가장 많았음
-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교육’이 33.3%로 가장 많았음

〈표 4-76〉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

구분	한글 교육	학력 보완 교육	인문 교양 교육	컴퓨터, 인터넷 교육	외국어 교육	자녀 양육 및 부부 관계	문화 예술 교육	상담가 및 활동가 교육	취업지원 교육	대학 과정 등의 고등 교육	기타	계	χ ²	
전체	32(10.7)	9(3.0)	22(7.4)	36(12.1)	3(1.0)	38(12.8)	58(19.5)	21(7.0)	55(18.5)	8(2.7)	16(5.4)	298(100.0)		
장애 유형	지체	3(3.8)	3(3.8)	4(5.1)	10(12.8)	1(1.3)	8(10.3)	17(21.8)	9(11.5)	18(23.1)	4(5.1)	1(1.3)	78(100.0)	98.86*
	뇌병변	4(10.3)	3(7.7)	2(5.1)	7(17.9)	1(2.6)	6(15.4)	7(17.9)	3(7.7)	2(5.1)	1(2.6)	3(7.7)	39(100.0)	
	시각	1(2.7)	3(8.1)	4(10.8)	3(8.1)	0(0)	6(16.2)	6(16.2)	4(10.8)	8(21.6)	0(0)	2(5.4)	37(100.0)	
	청각언어	9(26.5)	0(0)	3(8.8)	4(11.8)	0(0)	5(14.7)	6(17.6)	0(0)	4(11.8)	1(2.9)	2(5.9)	34(100.0)	
	내부기관	0(0)	0(0)	3(30.0)	1(10.0)	1(10.0)	1(10.0)	1(10.0)	2(20.0)	1(10.0)	0(0)	0(0)	10(100.0)	
	지적	13(15.5)	0(0)	4(4.8)	9(10.7)	0(0)	8(9.5)	19(22.6)	3(3.6)	20(23.8)	1(1.2)	7(8.3)	84(100.0)	
	자폐성	0(0)	0(0)	0(0)	0(0)	0(0)	0(0)	2(50.0)	0(0)	1(25.0)	1(25.0)	0(0)	4(100.0)	
	정신	2(16.7)	0(0)	2(16.7)	2(16.7)	0(0)	4(33.3)	0(0)	0(0)	1(8.3)	0(0)	1(8.3)	12(100.0)	

*p<.05

라. 여가·문화·평생교육 관련 정책욕구

- 전체 응답자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한 299명에게 여가·문화·평생교육을 더 누리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하는지 조사한 결과 ‘여가 활동과 문화활동 지원 바우처 제도의 현실화와 활성화’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 26.1%, ‘이동 및 활동보조지원제도 개선(활동도우미시간 연장, 통역/자막지원 등)’ 24.1%, ‘여가, 문화 관련 교육정보제공’ 12.4%, ‘기타’ 2.3%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뇌병변·내부기관·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여가 활동과 문화활동 지원바우처 제도의 현실화와 활성화’가 각각 35.9%, 41.0%, 40.0%, 50.0%, 50.0% 순으로 가장 많았음.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는 ‘이동 및 활동보조지원제도 개선(활동도우미시간 연장, 통역/자막지원 등)’이 각각 42.1%, 35.3% 순으로 가장 많았음.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41.7%로 가장 많았음

<표 4-77>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

구분	여가 활동과 문화활동 지원 바우처 제도의 현실화 및 활성화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센터 설립	이동 및 활동보조지원 제도 개선	여가, 문화 관련 교육 정보제공	기타	계	χ^2	
전체	105(35.1)	78(26.1)	72(24.1)	37(12.4)	7(2.3)	299(100.0)		
장애 유형	지체	28(35.9)	15(19.2)	25(32.1)	9(11.5)	1(1.3)	78(100.0)	46.62*
	뇌병변	16(41.0)	9(23.1)	8(20.5)	6(15.4)	0(.0)	39(100.0)	
	시각	13(34.2)	5(13.2)	16(42.1)	3(7.9)	1(2.6)	38(100.0)	
	청각언어	10(29.4)	10(29.4)	12(35.3)	1(2.9)	1(2.9)	34(100.0)	
	내부기관	4(40.0)	1(10.0)	2(20.0)	3(30.0)	0(.0)	10(100.0)	
	지적	26(31.0)	35(41.7)	8(9.5)	12(14.3)	3(3.6)	84(100.0)	
	자폐성	2(50.0)	0(.0)	1(25.0)	1(25.0)	0(.0)	4(100.0)	
	정신	6(50.0)	3(25.0)	0(.0)	2(16.7)	1(8.3)	12(100.0)	

*p<.05

마. 복지서비스

1) 복지서비스 수요

○ 여성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서비스(연금, 수당, 할인 등)'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생활 지원서비스(활동보조인, 주거지원 등)' 25.7%, '직업재활서비스' 13.3%, '여가 문화서비스' 10.7%, '장애발생예방 및 의료재활서비스' 9.7%, '가족지원서비스' 5.0%, '교육서비스' 3.3%, '상담서비스' 2.7%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 지체·청각언어·지적장애인의 경우는 '경제적 지원서비스(연금, 수당, 할인 등)'가 가장 많았음
- 뇌병변·내부기관장애인의 경우는 '경제적 지원서비스(연금, 수당, 할인 등)'와 '생활지원서비스(활동보조인, 주거지원 등)'가 가장 많았음
- 시각장애인은 '생활지원서비스(활동보조인, 주거지원 등)'가 가장 많았음
- 자폐성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발생예방 및 의료재활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활동보조인, 주거지원 등)'으로 나타남
-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직업재활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활동보조인, 주거지원 등)'으로 가장 많았음

〈표 4-78〉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장애발생예 방 및 의료재활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교육 서비스	여가·문화 서비스	경제지원 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생활지원서 비스	상담 서비스	계	χ^2	
전체	29(9.7)	40(13.3)	10(3.3)	32(10.7)	89(29.7)	15(5.0)	77(25.7)	8(2.7)	300(100.0)		
장 애 유 형	지체	4(5.1)	6(7.7)	0(0)	5(6.4)	33(42.3)	2(2.6)	26(33.3)	2(2.6)	78(100.0)	76.74**
	뇌병변	7(17.9)	6(15.4)	1(2.6)	5(12.8)	9(23.1)	2(5.1)	9(23.1)	0(0)	39(100.0)	
	시각	1(2.6)	4(10.5)	1(2.6)	0(0)	9(23.7)	3(7.9)	19(50.0)	1(2.6)	38(100.0)	
	청각언어	3(8.8)	5(14.7)	4(11.8)	4(11.8)	13(38.2)	1(2.9)	4(11.8)	0(0)	34(100.0)	

구분	장애발생예 방 및 의료재활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교육 서비스	여가·문화 서비스	경제지원 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생활지원서 비스	상담 서비스	계	χ^2
내부기관	2(20.0)	0(0)	0(0)	1(10.0)	3(30.0)	0(0)	3(30.0)	1(10.0)	10(100.0)	
지적	10(11.9)	16(19.0)	4(4.8)	13(15.5)	20(23.8)	6(7.1)	12(14.3)	3(3.6)	84(100.0)	
자폐성	1(25.0)	0(0)	0(0)	1(25.0)	0(0)	1(25.0)	1(25.0)	0(0)	4(100.0)	
정신	1(7.7)	3(23.1)	0(0)	3(23.1)	2(15.4)	0(0)	3(23.1)	1(7.7)	1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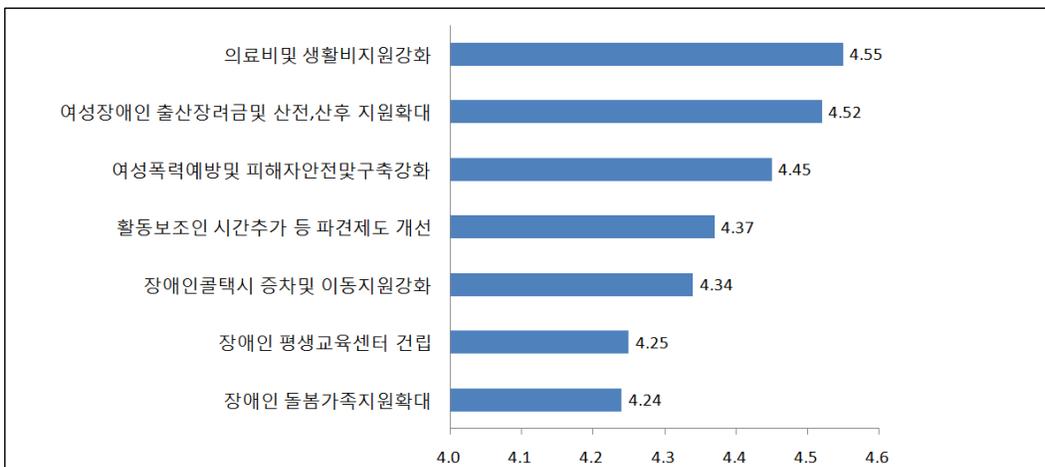
**p<.01

2) 복지증진 사업수요

- 전체 응답자 300명에게 앞으로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지 평생교육센터건립,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장애인 콜택시 증차, 의료 및 생활비지원,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망구축, 활동보조인시간개선, 출산장려정책강화로 나누어 조사함
- 조사척도는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매우 동의)를 사용함(<그림 4-3> 참조)
- 조사결과, 의료 및 생활비지원사업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출산장려정책강화,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망구축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복지증진 사업수요

(단위: 점)



바. 생활만족도

- 전체 응답자 300명에게 생활만족도를 조사함. ‘만족’이 29.0%, ‘불만족’이 28.7%로 나타남
- 조사척도는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를 사용함
-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01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과 유사함

〈표 4-79〉 현재 생활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전체	26(8.7)	60(20.0)	127(42.3)	58(19.3)	29(9.7)	300(100.0)	3.01

□ 직업, 건강상태, 폭력경험 여부별 생활만족도

- 직업유무별로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업이 있는(3.22) 경우가 없는(2.87) 경우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음
-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좋음이 3.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3.05, 좋지 않음이 2.62로 나타남
- 가정 내·외 폭력피해유무와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폭력경험이 없는 경우가 3.06으로 있는 경우 2.86보다 높았음

〈표 4-80〉 직업유무, 건강상태, 폭력피해경험유무별 생활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F	
전체	26(8.7)	60(20.0)	127(42.3)	58(19.3)	29(9.7)	300(100.0)	3.01		
직업	있음	6(4.9)	20(16.4)	52(42.6)	29(23.8)	15(12.3)	122(100.0)	3.22	8.05**
	없음	20(11.2)	40(22.5)	75(42.1)	29(16.3)	14(7.9)	178(100.0)	2.87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F
건강 상태	좋다	2(2.7)	10(13.3)	26(34.7)	18(24.0)	19(25.3)	75(100.0)	3.56	19.8***
	보통	4(3.6)	25(22.5)	51(45.9)	24(21.6)	7(6.3)	111(100.0)	3.05	
	좋지 않다	20(17.5)	25(21.9)	50(43.9)	16(14.0)	3(2.6)	114(100.0)	2.62	
폭력 경험	있음	9(13.0)	18(26.1)	22(31.9)	14(20.3)	6(8.7)	69(100.0)	2.86	1.92
	없음	17(7.4)	42(18.2)	105(45.5)	44(19.0)	23(10.0)	231(100.0)	3.06	

p<.01, *p<.001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2. 정책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가. 가족생활 분야

□ 혼인·임신·출산경험

-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59.7%는 결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40.3%)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여성 중증장애인들 중 기혼의 경우 94.2%가 자녀 임신·출산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임신기간 중 경험했던 가장 힘든 점은 '병원비 등 경제적 비용부담'(23.8%), '병원 다니기 어려움'(19.4%),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18.1%)순으로 나타났음
- 출산 후 산후조력자도 46.3%가 친정식구이며 그 다음으로는 혼자 17.3%, 남편 16.0% 등 가족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원(4.3%)과 산모·신생아 산후 도우미(3.7%) 이용경험이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 후 산후조리기간에 대한 만족도도 2.65점으로 낮게 나타났음

□ 미성년 자녀양육의 어려움

- 응답자의 53.0%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으며, 1명, 3명 순으로 나타났음
- 이들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으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의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 '학습지도', '교사와 상담이나 의사소통', '자녀와의 의사소통'순으로 나타남
-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경우 청각언어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 장애인들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의 부담'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욕구

- 응답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의료기관내 장애인 편의 시설확충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산후조리 관련 비용지원확대'를 가장 많이 원했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전문 의료기관지정',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 및 지원 정보제공', '산후도우미지원확대'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양육 및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육아지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 여성 중증장애인의 임신·출산 관련 비용지원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은 임신기간 중 '병원비 등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장 어려워했으며, 출산 후 산후조력자도 가족이 많았으며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산후 도우미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임신·출산 관련 비용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전문 의료기관지정필요
 - 조사결과 여성 중증장애인 중 기혼의 경우 임신·출산 경험이 94.2%로 나타남. 여성 중증장애인의 출산장려를 위해 이들이 편안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전문 의료기관지정확대가 필요함
- 장애유형을 고려한 양육지원정책 필요
 - 자폐성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육아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각언어장애인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자녀가 아플 때 병원가기'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장애유형을 고려한 양육지원정책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제기됨

나. 경제생활 분야

□ 취업현황

- 여성 중증장애인의 40.7%가 현재 일을 하고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원 졸의 경우 75.0%가 4년대 졸은 66.7%, 고졸은 44.5%, 전문대 졸은 42.1%, 중졸은 36.4%, 초졸은 17.9%, 무학은 15.0%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력자본이 취업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 근무현황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도내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의 근무(27.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일반회사(2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18.0%), 자영업(15.6%)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고용이 낮은 일자리는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2.5%)과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2.5%)이었음
- 응답자의 직장 내 근무기간을 살펴 본 결과 평균 6년 4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신장애인이 평균 9년 7개월로 가장 오래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현황

- 조사결과 여성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00~149만원이 42.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만원 미만인 20.7%, 50~99만원 19.8%로 월 평균 근로 소득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40.5%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도 100~149만원이 25.3%, 50~99만원 19.3%, 50만원 미만 15.7%로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35.0%로 나타났음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중증장애인의 72.4%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하기 부족한 임금'으로 나타났음

□ 취업욕구 및 정책욕구

- 미취업자(174명) 중 53.4%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가 72.0%로 가장 많았음
- 그러나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자들(81명)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창업과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전문직', '생산직', '관리직', '농림·어업직'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은 '창업'을, 내병변장애인은 '사무직'을,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서비스·판매직'을, 청각언어장애인은 '생산직'을, 내부기관장애인의 경우는 '사무직'과 '농림·어업직'을 가장 많이 원했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응답자들은 여성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해서는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장애 유형별로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았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았음

- 여성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장애유형별 취업지원정책이 만들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참여에 학력자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력자본이 취업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인 이후에도 학력자본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지원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여성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필요
 - 도내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가장 고용이 낮은 일자리는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으로 나타남. 공공기관의 여성장애인고용 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장애유형을 고려한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해서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특히,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제공, 장애인특별채용 등 취업지원',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이,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특히,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는 '창업'과 '사무직', '서비스와 판매직'에 필요한 취업알선과 직업능력 훈련을, 정신적 장애인을 위해 '단순노무직'관련 일자리를 개발해 취업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다. 건강 및 의료 분야

□ 건강상태

- 생활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는 평균 2.79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제주시 거주 여성중증장애인들의 건강상태(2.70)가 평균보다 낮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건강상태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을 제외한 신체적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음. 정신적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신체적 장애인의 건강상태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병원이용의 어려움

-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이 힘들'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뇌병변·시각·내부기관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각각 '의사소통이 힘들'이 가장 많았음
- 병원이용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진료 과는 '산부인과'와 '치과' 13.8%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은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 장애인은 '어려움 없음'과 '산부인과'가 가장 많음. 시각 장애인은 '모두 힘들다'가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 장애인은 '어려움 없음'과 '모두'가 많았음. 내부기관 장애인은 '치과'가 가장 많았음
 - 혼인유형에서는 기혼이 '산부인과'로 가장 많았음

□ 건강 및 의료지원 욕구

- 여성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위해 가장 강화되어야할 정책으로 '의료비 지원확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등 병원 내 장애여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방문재활치료서비스제공', '재활치료, 퇴원 후 지역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순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 여성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제도 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은 자신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함. 여성 중증장애인의 건강은 생활만족도와 미취업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에 영향을 미침으로 여성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위해 이들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지원제도가 필요함
- 여성 중증장애인을 위한 병원 내 서비스 강화 필요
 - 청각언어·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병원이용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산부인과'와 '치과' 진료 과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병원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확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등 여성장애인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라. 안전 분야

□ 일상생활 수행 시 안전위험 분야

-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분야는 외출(대중교통 이용

불편이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에 대한 우려’, ‘불규칙한 수입 등 경제적 불안정’,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한 부담’순으로 나타남

-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이동권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시설이나 교통수단 이용경험

- 모든 시설이용에 있어 가장 불편함을 경험하는 여성 중증장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시설 중 여성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시설은 도서관으로 나타남. 또한, 이용시설경험이 가장 없는 시설도 도서관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불편하지 않은 시설은 복지관이었음
- 교통수단의 경우는 버스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폭력피해 경험

- 조사결과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가정 내 폭력피해 경험(평생 경험)(16.7%)이 가정 외 폭력 피해경험(평생경험)(14.7%)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가해자는 주로 배우자가 많았으며, 이들의 50.3%가 상담소를 알고 있지만, 이들의 대응방법은 맞으면서 참는다가 가장 많았음
- 제주지역에 장애인 대상 폭력관련 상담소가 필요한지 의향을 물어 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60.9%로 가장 많았음

□ 정책적 시사점

-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외출시

교통사고 등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이 안전하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필요

- 제주지역 가정 내·외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중증장애인들은 가정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가정 외에서는 이웃에게서 폭력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음을 알 수 있음.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여성장애인가정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대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정신·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에게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마. 일상생활/여가·문화/교육 분야

□ 일상생활

- 조사결과,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33.0%로 가장 많았지만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와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각각 50.0%로 나타났음
- 일상생활 중 도와주는 사람은 ‘활동보조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순으로 나타났음
-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횟수를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이 가장 많았지만 ‘월 1~2회’ 8.3%, ‘전혀 나간적 없음’도 2.7%로 나타남
- 응답자의 47.0%는 거의 매일 외출을 하고 있지만, 월 1~2회 또는 전혀 나간적이 없는 경우도 11.0%로 나타났음. 이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필요함

□ 여가·문화활동

- 지난 1년간 여가·문화 활동을 연극, 영화, 공연 관람,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도내 여행, 타 지역 또는 해외여행, 친구나 친척모임 참여,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컴퓨터, 외국어, 미술치료, 인문학 강좌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없다'라는 응답에 '타 지역 또는 해외여행' 경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음
- 여가 및 문화활동 만족도는 2.86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가·문화·평생교육을 더 누리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하는지 조사한 결과 '여가 활동과 문화활동 지원바우처 제도의 현실화와 활성화'가 가장 많았으며,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 '이동 및 활동보조지원제도 개선(활동도우미시간 연장, 통역/자막지원 등)', '여가, 문화 관련 교육정보제공' 순으로 나타남

□ 교육활동

-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 그 다음이 '취업지원교육',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교육',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한글교육'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은 '문화예술교육'을, 뇌병변장애인은 '컴퓨터 및 인터넷교육'을, 시각·지적장애인은 '취업지원교육'을, 청각언어장애인은 '한글교육'을, 내부기관장애인은 '인문교양교육'을, 자폐성장애인은 '문화예술교육'을, 정신장애인은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서비스 욕구

-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서비스(연금, 수당, 할인 등)'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생활지원서비스(활동보조인, 주거 지원 등)', '직업재활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 여성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평생교육센터건립,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장애인 콜택시 증차, 의료 및 생활비지원,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망구축, 활동보조인시간개선, 출산장려정책강화사업으로 나누어 '동의'를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중 '의료비와 생활비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음

□ 정책적 시사점

-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개발 제공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원했으며 장애 유형별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특히,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의료비와 생활비지원 사업 확대 추진 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들은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경제적 지원서비스(연금, 수당, 할인 등)'를 원했으며 여성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의료비와 생활비지원 사업'을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저소득이 많으며 이들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과 연결됨. 따라서 의료비와 생활비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위한 도내 여행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타 지역 또는 해외여행 경험이 많이 없지만 여가·문화 생활을 더 누리기 위해한 개선점으로 '여가 활동과 문화활동 지원바우처 제도의 현실화와 활성화'가 가장 많았음
 - 타 지역여행 대신 도내 여행을 통해 여성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생활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도내 여행지원사업이 필요함

2.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가. 가족생활 분야

1)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녀양육지원제도 실시

- 지체장애인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었고, 청각언어 장애인은 자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음. 뇌병변장애인은 자녀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적장애인은 '학습지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장애유형에 따른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멘토링 서비스 지원, 청각언어장애 부모의 자녀교육과 언어발달을 위한 '책읽어 주기 사업', 자녀가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벨 설치' 등을 지원해야함

2) 산후 조리원 비용지원실시

- 조사대상자 중 기혼여성의 94.2%가 임신·출산 경험이 있으며, 산후조리의 경우 주로 친정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후조리 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혼자' 산후조리를 한 여성 중증장애인도 17.3%로 나타남
- 도내 '출산장여'를 확대하고 가족에게 산후조리의 부담을 지우는 출산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 중증장애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지원해야함

나. 경제생활 분야

1) 장애유형을 고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 여성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조사결과 지체·뇌병변·청각언어·지적·정신장애인은 고용유지를 위해 '직업능력교육'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 내부기관장애인은 '정보화 교육'을, 자폐성 장애인은 '직업적응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유형별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여성 중증장애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강화해야함

2) '여성장애인 고용친화사업장 인증제도'신설

- 도내 여성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관련 기관으로 나타남. 도내 여성 중증장애인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상이 66.3%임. 이들이 도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을 강화하고 동시에 '여성장애인 고용친화사업장인증제도'를 신설해 관련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함
- 도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성 중증장애인 채용, 승진, 교육훈련 등 차별없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장애인 고용친화사업장 인증'를 부여하고 도 사업 참여 시 가산점과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임. 가족친화인증제도처럼 투자·융자·대출시에도 금리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여성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해야 함

3) 여성 중증장애인을 위한 창업지원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취업지원

- 조사결과 미취업자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창업'으로 나타남.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관련 정보제공, 컨설팅 및 사업지원' 등 여성 중증장애인의 창업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인은 ‘일자리정보제공’과 ‘장애인특별채용’ 등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았으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정책욕구가 높았음. 따라서 여성 중증장애인의 취업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취업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함

다. 건강 및 의료 분야

1) ‘찾아가는 가정주치’의 제도 실시

- 조사결과 여성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가 평균 2.79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미취업자의 72.0%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과도 연결됨. 따라서 여성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가정주치의’제도를 보건소와 지역 병·의원과 연계해 여성 중증장애인 건강증진을 지원해야함

2) 장애인 지정병원 확대 및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내 여성장애인도우미 상시배치

- 조사결과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위해 가장 강화되어야할 정책으로 ‘의료비 지원 확대’를 제외하고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등 병원 내 장애여성을 위한 시설 설치’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혼여성 중증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진료 과는 산부인과임. 내부기관장애인은 치과로 나타남. 따라서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 지정병원 확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산부인과·치과·소아과의 경우 여성장애인 진료도우미 상시 배치 등을 지원해야함

3) 종합병원 내 수화통역사 의무고용실시

- 청각언어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야간진료 및 응급진료시 통역의 어려움을 경험.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종합병원 내 수화통역사 고용을 의무화해야함. 또한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수화통역 교육을 지원해 의료기관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해야 함

라. 안전 분야

1) 장애인 콜택시 1차 2인제 실시

- 여성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분야는 외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불안)이었음.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는 여성 중증장애인의 이동안전을 위해 필요함. 현재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를 1차 1인제에서 1차 2인제로 전환해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 효과를 높이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함
- 장애유형을 고려해 보행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 택시와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 콜택시의 효과를 유도해 장애인 콜택시의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함

2) 버스, 영화관, 도서관, 택시, 대형마트 내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모니터링실시

- 여성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시설은 버스, 영화관, 도서관, 택시, 병원, 대형마트 순이었음. 관련 교통수단과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사업체에게 패널티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을 강화해야함

3) 여성장애인 폭력관련 통합대응시스템 마련

- 조사결과 여성 중증장애인의 16.7%가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해자로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대응방법은 그냥 맞는다가 많았음. 여성당사자 및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대처교육 실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통합 상담 및 보호시설지원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이 강화되어야함

마. 일상생활/여가·문화/교육 분야

1) 문화바우처 사업대상·참여기관 확대 및 수화 통역서비스 실시

- 조사결과 여성 중증장애인의 40.0%는 도내 여행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장애인의 외출, 여가문화생활은 사회참여의 통로임. 따라서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이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문화바우처 사업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확대실시하고, 거주지 주변에서 가족 동반 여가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영화·도서·공연·관람·여행 등 사업 참여기관의 다양한 확대를 도모해야함
- 여성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컴퓨터, 외국어, 미술치료, 인문학 강좌 등)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및 수화통역지원을 통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참여활성화도 도모해야함. 또한 도내 관광지에도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을 실시해야함. 수화통역서비스는 제주도를 찾는 국내 청각언어장애인에게도 필요함

2)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거점'기관 지정

- 지체·자폐성장애인의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을,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컴퓨터 및 인터넷교육'을, 시각·지적장애인은 '취업지원교육'을, 청각언어장애인은 '한글교육'을, 내부기관장애인은 '인문교양교육'을, 정신장애인은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내 성인 여성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전문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함. 또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총괄할 수 있는 '거점'기관 지정을 통해 여성 중증장애인의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강화와 문화예술에 대한 질적인 만족도를 높여야함

3) 의료비와 생활비지원 사업 확대 및 강화

-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은 '의료비 및 생활비지원 사업'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 중증장애인의 장기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 및 낮은 임금 때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 의료비지원을 급수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될 수 있는 대책마련과 생활비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장애수당도 저소득층까지 확대 강화해야 함

참고문헌

- 강경희. 2007. 『제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
본부.
- 고승한·고보선. 2008. 『제주지역 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권재숙·김성진. 2012. “여성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연구』
16(2): 23-45.
- 김남숙·김민주. 2009. “장애부모의 다차원적 양육지원에 대한 욕구 분석” 『재활복지』. 13(2):
199-223.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김성미·심인선. 2007.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성
연구』 1: 73-1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성미. 2007.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탐라대학교 경영·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자. 2009. 『충남 여성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직종확대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성희. 2010.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37.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_____. 2008.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세연·구인순·박자경. 2012. “여성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8): 318-329.
- 김승환·강동욱·고아라·김지혜. 2015. “중증과 경증 여성장애인의 시간제 일자리 참여”. 『장애와
고용』 25(1): 104-134.
- 김정득·배지연·이리나. 2013.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방안
연구』. 대전복지재단.
- 김정현. 1996. “제주사회복지의 현재와 미래”. 『제주리뷰』 1: 106-112. 제주대학교 지역사회
발전연구소.
- 김정희·박주영·이진숙·박지혜. 2012. 『제주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장애인복지과.
- 김정희·유경민·이진숙·이정현. 2010.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박주영. 2012. “한국여성장애인분야 연구동향 분석 - 1981~2011년의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
『재활복지』 16(3): 27-48.

- 박주희. 2012. 『광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장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 변용찬. 2002.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3.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2010-2014. 각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 오혜경. 2002. “한국 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사회복지정책』 14(6):141-169.
- 이민정. 2010. “여성장애인 취업에 관한 고용주 인식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혜. 2006.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희. 2006. “사회적 관계망이 중증 여성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혜·윤덕경·이인선. 2013.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V): 여아 및 여성안전관련 정책점검 및 향후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기택·황정임·김고은. 2010.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10(13): 1-5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민경. 2014. 『경기도 여성장애인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영태. 2013.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정책과 제주과제” 『포커스 브리프』 164. 제주발전연구원.
- 주경미 외. 2013. 『부산지역 여성장애인 폭력의 장애유형별 지원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 개발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4. 『2014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2007. 『제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실태조사』.
- 제주DPI장애여성특별위원회. 2001. 『제주도 장애여성실태 및 차별에 관한 연구보고서』.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00. 『21C 제주도 장애인복지발전 방향 제시 : 지역사회중심재활 (CBR)사업 전개를 중심으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00. 『제주도 장애인 실태 및 욕구 조사 보고서』.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 주정. 2010.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적인 과제”. 『코칭 연구』 3(1): 85-112.
- 최은희. 2014. 『충청남도 장애여성생활 및 안전실태조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인백서』.
- 한국정책기획평가원. 2008.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 한애경. 2014. “비경제활동 여성장애인의 근로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복지』 18(1): 159-180.
- 최길선. 2012. “중증여성 시각장애인의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아·이영미. 2009.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아동기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8(1): 119-157.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황보옥·박영준. 2011. “중증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5(3): 289-315.
- Carter, E. A. and M. McGoldrick. 1999. The expanded family life cycle: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perspectives. Massachusetts: Allyn & Bacon.
- Eric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New York.
- Goode, William 1982. The Family. Englewood Cliffs.
- Murdock, George Peter (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O’Rand, Angela M. & John C. Henretta. 1982. "Women at Middle Age: Developmental Transition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64: 57-64.
- Talcott Parsons and Robert F. Bales (1956).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Routledge.
- 제주의 소리(2015.01.03). “여성장애인 정책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제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성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귀하가 주시는 의견은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쪼록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 6.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연구 및 조사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이연화 ☎ 064-710-4973
 조사책임자:

SQ1) 거주지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_____동/읍/면
SQ2) 연령	만 _____세	
SQ3) 응답자 유형	① 본인 응답 ② 대리 응답(☞ SQ4)로 이동)	
SQ4) 대리응답의 경우	응답자와 의 관계	① 배우자 ② 부모 또는 자녀 ③ 형제자매 ④ 친척 ⑤ 도우미 ⑥ 복지관(시설)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⑦ 기타 ()

※ 응답자 연락처는 응답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설문종료 후 기입할 것

면접원		면접일시	월 일 /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응답자		연락처	() - () - ()		
대리응답자		연락처	() - () - ()		

문27-1. 현재 정기적·지속적인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적 어려움
- 2) 치료에 대한 의지부족
- 2) 치료기관 부족
- 4) 치료기관 접근성
- 5) 의료진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어서
- 6) 병원에 장애를 배려한 시설이 없어서
- 7) 치료할 시간 부족
- 8) 기타()

문28. 귀하는 진료를 받을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진료 과는 어디입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

- 1) 없다
- 2) 내과
- 3) 외과
- 4) 산부인과
- 5) 치과
- 6) 안과·이비인후과
- 7) 일반 건강검진
- 8) 모두
- 9) 기타()

문29. 귀하는 위의 질문에 대답한 진료 과에서 진료를 받을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 2) 의료진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어서
- 3) 너무 멀어서
- 4) 이동을 도와줄 사람이나 교통편이 없거나 찾기가 힘들어서
- 5) 병원에 장애를 배려한 의료기구가 없어서
- 6)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 7) 기타()

문30. 귀하의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수급자가 아님
- 2) 의료급여 1종
- 3) 의료급여 2종
- 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문31. 귀하의 월평균 의료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월 _____ 만원

문32. 여성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위해 강화되어야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

- 1) 재활치료, 퇴원 후 지역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2) 방문 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
- 3)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등 병원 내 장애여성을 위한 시설 설치
- 4) 보건소 내 여성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 5) 약국·보건소·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의 접근성 개선
- 6) 의료비 지원확대
- 7) 기타()

문35. 각종 시설 이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및 지원 완비(저상버스 확충, 수화통역, 점자 안내 등)
- 2) 각종 시설 관련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교육 강화
- 3) 장애인 활동보조원 지원 강화
- 4) 배달 및 방문 서비스 활성화
- 5) 기타()

문36. 귀하는 가족과 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 '없다' 응답자는 ☞ 문38로)

구분	폭력당한 경험		있다면, 폭력유형(모두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방임	성폭력
1) 가정 내 폭력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가정 외 폭력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 신체적 폭력이란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고통을 당함(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력이라고 생각되는 행위)을 말합니다.
- ※ 정서적 폭력이란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대회기피, 의견무시, 못들은 척, 짜증, 불평 등)을 말합니다.
- ※ 경제적 폭력이란 타인으로부터 급진적으로 피해를 당함(수입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 돈을 빼앗는 등)을 말합니다.
- ※ 방임이란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건강하지 않을 때)를 돌봐주지 않음(간병, 청결 유지 등)을 말합니다.

문37.(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귀하께서는 얼마나 자주 폭력을 경험하셨습니다?

구분	폭력 빈도					
	거의매일	한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3개월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1년에 한두번
1) 가정 내 폭력	①	②	③	④	⑤	⑥
2) 가정 외 폭력	①	②	③	④	⑤	⑥

문37-1. 귀하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 1) 배우자(혹은 애인)
- 2) 아버지
- 3) 어머니
- 4)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5) 형제·자매
- 6) 조부모
- 7) 손자녀
- 8) 배우자의 가족
- 9) 이웃
- 10) 직장 상사 및 동료
- 11) 기타()

문37-2. 귀하는 폭력을 당할 때 주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 1) 그냥 맞으면서 참는다
- 2) 가족 및 이웃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 3) 전문기관, 경찰, 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
- 4) 기타()

문38.(모두 응답) 귀하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여성폭력피해지원상담소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1)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인지도		2)장애인 대상 폭력관련 상담소 필요성				
안다	모른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39.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본인의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 1) 전혀 느끼지 않는다 2) 별로 느끼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가끔 느낀다 5) 항상 느낀다

문40. 귀하가 장애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학교교육 2) 결혼과정 3) 취업 및 직장생활
 4) 의료기관이용시 5) 정보통신이용시
 6)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7) 기타()

G. 일상생활, 여가, 문화, 교육 실태

문41. 귀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

- 1) 모두 혼자 할 수 있다 2)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다 3)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4)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5)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42.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 배우자 2)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3) 형제·자매 4) 부모
 5) 활동보조인 6) 친척 7) 이웃(친구) 8) 기타() 9) 없다

문43. 가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줄 외부사람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2) 비용이 들더라도 이용하겠다 3) 이용할 의향이 없다

문44. 귀하는 지난 1개월 동안 외출을 하셨다면 월 평균 몇 회 외출을 하셨습니까?

(외출이란 집이나 근무지에서 벗어나 잠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 평균 _____ 회

문45.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여가·문화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항 목	1개월에 한번 또는 그이상	3개월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전혀 없다
1)	연극, 영화, 공연 관람	①	②	③	④	⑤
2)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①	②	③	④	⑤
3)	체육활동	①	②	③	④	⑤
4)	도내 여행	①	②	③	④	⑤
5)	타 지역 및 해외여행	①	②	③	④	⑤
6)	친구나 친척 모임 참여	①	②	③	④	⑤

항 목	1개월에 한번 또는 그이상	3개월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전혀 없다
7)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컴퓨터, 외국어, 미술치료, 인문학 강좌 등)	①	②	③	④	⑤

문46. 평소 여가 및 문화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 문 46-1로 2) 약간 불만족 ☞ 문46-1로 3) 보통 4) 약간 만족 5)매우 만족

문46-1. 문화 및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경제적 부담때문에 2) 시간이 부족해서 3)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4) 교통이 불편해서 5) 여가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6)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7)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해서 8) 기타()

문47. 귀하는 대학이상(사이버대학 포함)의 전문교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 1) 예 ☞문47-1로 2) 아니오 ☞문48로

문47-1. 전문교육을 받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취업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2) 친구, 선배 등 인간관계를 쌓고 싶어서
3)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 독립(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5) 우리 사회가 학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6) 기타()

문48. 귀하는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한글교육 2) 외국어 교육 3) 인문교양교육 4) 정보화 교육
5) 양성평등교육 6)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 7) 리더십 교육 8) 취업지원교육
9) 상담가 및 활동가 교육 11) 장애인 인권교육 12) 기타()

문49. 여성중증 장애인이 여가·문화·평생교육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합니까?

- 1) 여가 활동과 문화활동 지원 바우처 제도의 현실화 및 활성화 2)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센터 설립
3) 이동 및 활동보조지원제도 개선 (활동도우미시간 연장, 통역/자막지원 등) 4) 여가, 문화 관련 교육 정보제공
5) 기타()

문50. 귀하가 여성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 | |
|--------------------|----------------------------|
| 1)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 2) 장애발생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
| 3)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 4) 여성장애인 문화·체육활동 확대 |
| 5) 장애인 연금 지급 금액 인상 | 6)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
| 7) 여성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 8)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활성화 강화 |

문51. 귀하는 다음 사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표시하여 주세요.

항 목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별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장애인 콜택시 증차 등 활동 및 이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활동보조인의 시간 추가지원 등 파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및 산전, 산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발행일 2015년 8월 31일

발행인 현 혜 순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Tel. 064)710-3482, Fax. 064)710-3489
www.jewfri.kr

인쇄처 참디자인

ISBN 979-11-954366-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